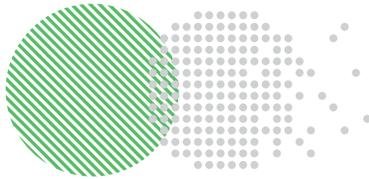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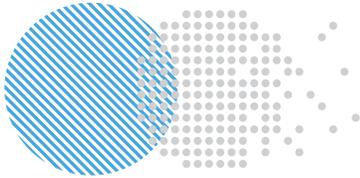


연구보고25-연적금 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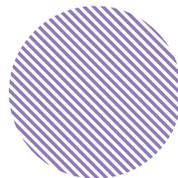
김기현 · 유민상 · 신동훈 · 한지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저 자 김기현, 유민상, 신동훈, 한지형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동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지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_문지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요약

1. 서론

- 이 연구는 세계 청년정책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 연구는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과 더불어 국내·외 기관과 교류 협력을 비롯해 국제 청년정책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해 국내외 기관 간에 심층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집된 청년정책에 대한 자료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청년정책 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https://www.nypi.re.kr/yap/>)를 통해 제공하였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 민간기구 (youthpolicy.org에서 수집한 44개 국가 외에 세계 각 국가의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정책 추진 여부와 추진체계(법률 여부, 중앙부처 및 위원회 등), 정책 대상인 청년 연령 규정 및 정책 영역 등을 분석하였음.
- 세계 청년정책 현황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나 정부 행정조직에 관한 것으로 내용 분석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함.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독일과 프랑스, 핀란드 등 5개 국가의 청년정책 추진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현황 분석
-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과 더불어 연구 결과를 매년 현행화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음. 동시에 연 2회에 걸쳐 청년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는 뉴스레터인 청년 포커스를 발간하였고 이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뉴스레터 신청자에게 보내 청년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청년 이슈에 대한 국제청년포럼을 비롯하여 국내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정책포럼을 개최하였음. 먼저 국제청년포럼은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7월 28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진행되었음. 다음으로 중국청소년연구센터 방문을 계기로 이 연구에서는 한·중 청소년 및 청년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음.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공동정책포럼으로 “불확실성의 시대, 청년의 길을 묻다”는 주제로 2025년 11월 25일 오후 2시에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대강당에서 공동정책포럼을 개최하였음.

3. 연구 결과

- 이 연구에서는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이 국제연합(UN)의 행사에 전 세계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발표했던 국제 민간기구(youthpolicy.org)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했던 방식을 활용하여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을 살펴보았음.
- 2025년 기준으로 청년 하한 연령은 68.7%(195개 국가 중 134개 국가)가 15-19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7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면, 15-19세는 7%p 증가한 반면, 10-14세는 2017년 26.7%에서 2025년 21.5%로 감소하였음. 생애주기 접근으로 0세부터 정책 대상으로 정해 추진하는 곳은 14개 국가였음. OECD 국가에서는 10-14세로 청년을 규정하는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음.
- 상한 연령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35-39세로 청년을 규정하는 국가가 34.4%로 가장 많았음. 이어서 25-29세(28.2%), 30-34세(27.7%) 순이었음. 2017년에는 25-29세로 청년을 규정하는 곳이 34.4%로 가장 많았으나 2025년 들어서 28.2%까지 낮아졌음. 반면, 35세에서 39세 비율은 같은 기간 23.9%에서 34.4%로 늘어났음. OECD 국가에서는 50.0%가 25-29세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령 구간인 35-39세는 5.3%에 불과한 상황이었음.
- 행정부서 명칭에 청년이나 생애전반기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곳은 114개로 전 세계 195개 국가 중 5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107개 국가였으며 이번 조사에서 7개 국가가 늘어났음. 이어서 부처형과 부서형, 기타를 포함한 위원회형을 살펴보면, 전 세계 국가 중 58.5%는 위원회가 아닌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직 명칭에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어서 부서형이 26.2%였고 기타 및 위원회형인 경우는 15.4%에 그쳤음.

- 전 세계에서 청년 법률을 제정해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곳은 33.3%로 65개 국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OECD 국가들 중에는 47.4%가 청년 법률을 제정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국가의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 지원의 법적 근거는 각국의 여건과 정책 기조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독일과 핀란드, 일본의 경우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포괄적인 기본법이나 법적 권리 조항을 두고 있음.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단일한 청년 기본법보다는 분야별 개별 법률이나 예산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추진함.
- 행정 조직 측면에서는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전담 부처를 두거나 범정부적 협의체를 운영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일본은 2023년 어린이가정청을 두어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통합하여 정책을 추진 중임. 프랑스는 체육·청년·단체활동부가, 핀란드는 교육문화부가, 독일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가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미국은 연방 차원의 단일 전담 부처는 없으나, 백악관 주도의 청년프로그램 실무단(IWGYP)을 통해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연계하고 있음.
-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와 지역 사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남. 핀란드의 오희야모(Ohjaamo)는 대표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미션로칼(Mission Locale)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 주거, 건강 상담을 아우르는 동행(Accompaniment) 서비스를 제공 중임. 독일은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청소년청(Jugendamt)이 청년 지원의 총책임을 맡아 서비스를 제공 중임. 일본은 지역청년서포터스레이션과 신졸응원헬로워크 등 대상별 특화된 고용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는 한편, 어린이·청년지원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미국은 노동부 산하의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통해 고용과 훈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 중임.

4. 연구 제언

- 이 연구는 해외 청년정책 사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을 제시함.

1) 청년 정책 대상자의 연령 규정과 대상자 선정의 유연성 확보

- (1) 생애주기 연속성을 고려한 통합적 연령 규정으로의 전환
- (2) 대상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유연한 대상 설정

2) 법적 권리 구체화: 시혜가 아닌 권리로의 전환

- (1) 청년 지원의 법적 권리와 책무성 구체화
- (2) 대상자 발굴에서의 협력 법제화

3) 거버넌스 강화 및 컨트롤타워 설정

- (1)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2)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조직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4) 전달체계 강화

- (1) 청년 지원 원스톱 복합센터의 표준화 및 확산
- (2) 밀착형 '동행' 지원체계 도입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연구보고 25-연적금-02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3. 보고서의 구성	5
II.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7
1. 분석 개요	9
2. 분석 결과	11
3. 정책적 시사점	16
III.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19
1. 미국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21
2. 일본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42
3. 독일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83
4. 프랑스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111
5. 핀란드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136
6. 청년정책 해외사례 시사점	151

IV. 연구 제언	153
1. 연구 요약	155
2. 정책적 시사점	158
참고문헌	163
부 록	181
국문초록	188
Abstract	190

표 목차

표 Ⅲ-1. 미국의 연방 청년지원 실무단 참여 기관	30
표 Ⅲ-2. 미국 청년정책 전달체계 주요 주체 및 역할	35
표 Ⅲ-3. Youth Homelessness Demonstration Program의 특징	38
표 Ⅲ-4. 기타 미국 청년정책 주요 사업 요약	41
표 Ⅲ-5. 어린이가정청의 소관사무	61
표 Ⅲ-6. 일본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전담부서 현황 (2025년 9월 1일 기준)	66
표 Ⅲ-7. 일본의 청년정책 전달기관 수	68
표 Ⅲ-8. 후생노동성 히키코모리 정의의 변천	75
표 Ⅲ-9. 독일 청년 법률용어	84
표 Ⅲ-10.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 상 청년정책 서비스현황	91
표 Ⅲ-11. 독일 청년정책 전략과 세부정책	99
표 Ⅲ-12. 독일 청년정책 현황	109
표 Ⅲ-13. 프랑스 총괄 청년지원정책 분류(2025년 예산안 기준)	112
표 Ⅲ-14.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119
표 Ⅲ-15. 청년정보, 미션로깅, 고용센터 비교	125
표 Ⅲ-16. 1청년-1해결책(1 jeune 1 solution)	126
표 Ⅲ-17. 청년보장과 청년참여계약의 주요 내용	130
표 Ⅲ-18. 프랑스 현행 지원계약의 종류와 특징	133

그림 목차

그림 Ⅱ-1. 전 세계 청년 하한 연령 현황(2017/2025년)	12
그림 Ⅱ-2. 전 세계 및 OECD 청년 하한 연령 비교(2025년)	12
그림 Ⅱ-3. 전 세계 청년 상한 연령 현황(2017/2025년)	13
그림 Ⅱ-4. 전 세계 및 OECD 청년 하한 연령 비교(2025년)	14
그림 Ⅱ-5. 전 세계 생애전반기 명칭 포함 청년정책 행정조직 현황 (2017년/2025년)	15
그림 Ⅱ-6. 전 세계 청년정책 행정조직 유형 현황(2025년)	15
그림 Ⅱ-7. 전 세계 청년 법률 제정 여부(2025년)	16
그림 Ⅲ-1. 일본의 청년실업률 및 청년실업자 수	43
그림 Ⅲ-2. 프리터의 추이	46
그림 Ⅲ-3. 일본의 청년무업자(니트) 추이	48
그림 Ⅲ-4. 어린이기본법 이후 제도의 변화	59
그림 Ⅲ-5. 일본의 청년정책 추진 중앙조직	62
그림 Ⅲ-6. 어린이가정청의 조직도	63
그림 Ⅲ-7. 2025년도 어린이가정청 예산	64
그림 Ⅲ-8.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 개요	69
그림 Ⅲ-9. 일본의 취직내정을 추이	71
그림 Ⅲ-10. 히키코모리 VOICE STATION 홈페이지	76
그림 Ⅲ-11. 히키코모리 지원 체계	77
그림 Ⅲ-12. 청년지원코디네이터사업 개요	81
그림 Ⅲ-13. 어린이·청년★의견플러스(어린이·청년의견반영추진사업)	82
그림 Ⅲ-14. 어린이·청년 의견마당 홈페이지	83
그림 Ⅲ-15. 독일 청년정책 전달체계	95
그림 Ⅲ-16. 프랑스의 청년정책자문위의 조직구조	118
그림 Ⅲ-17. 청년 취업 정책의 세 분야와 정책	127
그림 Ⅲ-18. 헬싱키 감씨의 오후야모 원스톱 안내센터	144
그림 Ⅲ-19. 까이꾸꼬르띠 공식 홈페이지	149
그림 부록-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	183
그림 부록-2.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뉴스레터	184

그림 부록-3. 청년국제포럼(2025.07.28.) 장면	185
그림 부록-4. 한·중 청소년 및 청년정책 국제세미나(2025.11.18.) 장면	186
그림 부록-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2025.11.25.) 장면	187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보고서의 구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급격하게 정책추진체계가 갖추어져 왔으며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에 이어서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시점에 와 있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기 동안 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꾸러졌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에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정책조정실이 만들어졌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정부서를 두어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정책 담당관을 지정하여 비정기 회의를 통해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다. 청년정책은 대상 정책으로 당사자의 참여와 권한 부여가 중요한데 중앙정부에 2030자문단이 구성되었고 지자체에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참여기구가 운영 중이다.

이처럼 청년정책은 정책 추진의 근간을 이루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300개가 넘는 과제를 28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과제와 예산만 놓고 보면, 2017년 전체 부처 과제가 76개였으나 2025년 339개로 늘어났다. 예산도 같은 기간 9.7조원에서 28조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정책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해 왔음을 보여준다. 향후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제 질적 도약의 문제가 중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정책이 해외에서 어떻게 추진 중이고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본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과 한지형 전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세계 청년정책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우리나라 상황에 서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과 더불어 국내외 기관과 교류 협력을 비롯해 국제청년정책포럼 개최 등을 통해 연구 성과에 대한 확산도 고려해 추진되었다.²⁾ 이를 통해 국내외 기관 간에 심층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수집된 청년정책에 대한 자료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 결과를 제공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202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청년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청년에 대한 국제 민간기구(youthpolicy.org)에서 수집한 44개 국가 외에 세계 각 국가의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정책 추진여부와 추진체계(법률 여부, 중앙부처 및 위원회 등), 정책 대상인 청년 연령 및 정책 영역 등을 분석하였다.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나 정부 행정조직에 관한 것으로 내용 분석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독일과 프랑스, 핀란드 등 5개 국가의 청년정책 추진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5개 국가에 대한 선정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다루어져 왔고 유사 연구에서 5개 국가에 대한 분석(김기현, 2022)을 한 바 있어 최근 정책 변화 해석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5개 국가 선정 이유는 국가별로 다른데 미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여러 제도를 도입해 성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김기현, 2022). 각 나라에 대한 선정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선형 학제라는 교육제도와 유사한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독일은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에 주목해 복선형 학제와 직무노동시장이 아닌 임금노동시장의 특성을 통해 비교 목적에서 선정되었다.

2) 이 연구 차원에서 추진한 홈페이지 및 DB 구축 등의 내용은 부록1에 정리하였음.

프랑스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가장 많이 참조한 국가로 특히 통합형 전달체계의 모델로 주목을 받은 곳으로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는 유럽 전역에서 시행 중인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먼저 추진했던 곳으로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고 오래전부터 청년정책을 추진한 대표 사례라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 연구로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에 관한 각 국가의 공식 정부 홈페이지를 분석하였고 주요국을 중심으로 청년 관련 법률, 정책추진체계, 정책사업 파악하기 위한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국제연합(UN)의 국제청년포럼에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을 지시한 바 있는 민간 청년단체(youthpolicy.org)에서 제공하고 있는 44개 국가에 대한 자료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차 분석으로 청년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각 국가별 분석에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3.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정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내용과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2장은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으로 각 국가의 청년 연령 규정, 행정체계 및 조직, 청년 관련 법령 제정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3장은 주요국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핀란드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4장은 결론 파트로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을 하였다.

다음 장부터는 전 세계 청년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청년정책현황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2장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 분석 개요
- 2. 분석 결과
- 3. 정책적 시사점

1. 분석 개요

1)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이 전 세계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했던 국제 민간기구(youthpolicy.org)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했던 방식을 활용하여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의 연구에서는 청년의 연령 정의에 대해서 법률이나 통계, 혹은 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5세 단위로 상한연령과 하한연령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청년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부처 명칭에 아동이나 청소년, 청년과 같은 생애전반기 대상 연령을 담고 있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동시에 청년정책 담당 행정부서가 부처형태인지, 위원회형태인지를 다루었다. 이후 유사하게 해당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정은지, 김기현(2018), 이용해, 김기현, 신동훈(2023), 이영란(2024), 김기현, 김윤희(2025)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을 연령 정의, 정책추진체계 유형, 법률 제정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연령 정의는 5세 단위로 나누었는데 이는 법적 정의가 없는 국가가 많아 국제 민간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연령 정의 방식을 포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대체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률에 연령정의를 1세 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관되게 모든 법률에서 청년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법전(法典) 체계를 갖춘 곳이 아닌 개별법 체계인 경우 청년 연령 정의를 달리 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역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5세에서 29세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만이 아니

3)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라 청년통계를 작성할 때의 기준과 기본계획이나 대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도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5세 단위로 각 국가별 연령정의를 제시하였다. 하한 연령은 0세부터 정의하는 경우와 1-9세, 10-14세, 15-19세로 구분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0세부터 정의하는 곳은 흔히 생애주기 접근을 하는 국가들로 0세부터 특정 연령까지를 동일한 정책 대상으로 보고 하한 연령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곳이다. 생애주기 접근을 하는 국가들은 통계나 기본계획 등에서 별도로 청년 연령을 정의하더라도 이 연구에서는 0세부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연령 정의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 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하한 연령 규정이 없다. 이는 0세에서 18세 미만의 이르는 기간을 아우르는 것이며 이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 중에서 대표 용어인 아동을 사용한 것이다.

청년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부분은 어떤 행정부서가 청년정책을 주관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은 행정부서의 유형에 주목해 부처형태와 위원회형태로 나누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부처형태를 부처명에 생애 전반기 대상 정책의 용어를 담고 있는 곳을 분리해서 제시하였다. 부처 명칭에 생애 전반기 대상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정책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체육청소년부 시기에 처음 생애 전반기 대상을 포함하는 부처 명칭이 있었으나 이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사라진 이후 현재까지 부처 명칭에서 이를 다루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기현, 김윤희(2025)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 활용한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다. 청년정책 행정조직 중에서 청년(youth, joven, pemuda, 若者, jugend, 青年)이나 생애 전반기 명칭(child, young people, children)이 사용된 곳은 부처형으로 분류하였다. 부처 명칭에 생애 전반기 명칭이 없고 부처의 하위 행정부서(실, 국, 본부, 과, 팀 등)에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곳(directorate, office, division, department)이 있는 경우에 부서형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나 기타 형태의 행정 부서를 두고 있는 경우 등은 위원회형으로 분류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활용하여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서 분석한 핵심 자료는 청년을 다루는 국제 민간기구(youthpolicy.org)에서 제공하는 전 세계 현황 자료(fact sheet)이다. 이 자료는 2014년 국제연합이 개최한 행사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제1회 청년정책에 대한 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Youth Policies)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이 공개(Youthpolicy.org, 2014)되었는데 해당 자료는 온라인 사이트에 국가별 현황 자료로 제시되었다. 국제 민간기구는 2023년부터 공개되어 있던 각 국가별 현황자료를 업데이트 중이며 2025년 현재 40여 개 국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OECD 국가를 비롯하여 국제 민간기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제시한 이용해, 김기현, 신동훈(2023)과 이영란(2024), 김기현, 김윤희(2025)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였다. 동시에 기존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국가별 실태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 공식 정부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각 국가별 언어에 대한 번역 등은 챗지피티(ChatGPT)의 도움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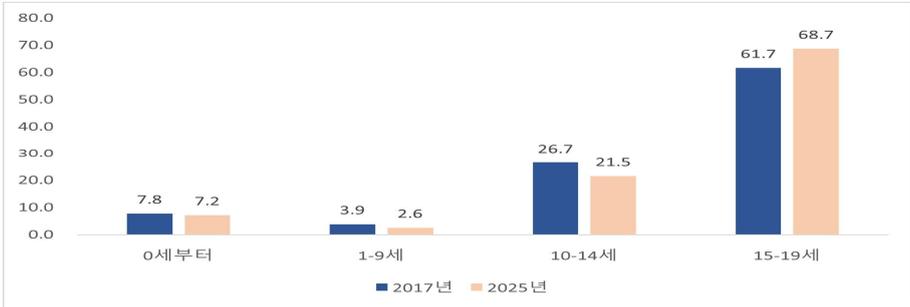
2. 분석 결과

1) 청년 연령

이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분석에 있어서 정책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법률이 있는 국가는 법률의 정의를 따랐고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나 대책,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대상 연령이나 통계 등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연령을 고려하였다. 2017년 결과는 청년 관련 국제 민간기구가 수집했던 180개 국가의 결과이며, 2025년에는 최근 업데이트한 해당 민간기구의 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 수집한 195개 국가의 결과이다.

2015년 기준으로 청년 하한연령은 15-19세가 6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개 국가 중 134개 국가에서 청년 하한 연령을 15-19세로 규정하였다. 대체로 15세로 정의하는 곳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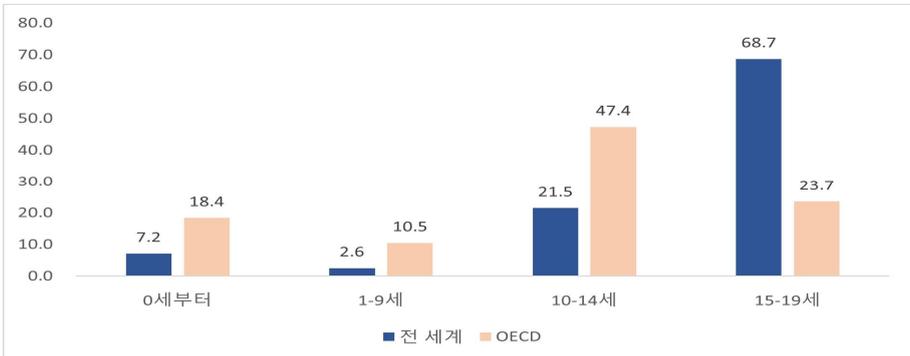
2017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면, 15-19세는 7%p 증가한 반면, 10-14세는 2017년 26.7%에서 2025년 21.5%로 감소하였다. 생애주기 접근으로 정책 대상을 0세부터 추진하는 곳은 14개 국가로 2017년과 2025년 동일했다. 다만, 분석대상 국가가 늘어나면서 비중이 소폭 낮아졌다.



* 출처: 자체 작성. 2017년은 180개 국가의 결과이며 2025년은 195개 국가의 결과임.

그림 II-1. 전 세계 청년 하한 연령 현황(2017/2025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OECD 국가와 전 세계 현황을 비교해 보면,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OECD 국가에서는 10-14세로 청년을 규정하는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낮은 곳이 많고 학제 상 14세부터 중등교육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애주기 접근으로 0세부터 청년정책을 접근하는 국가의 비중은 18.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애주기 접근은 하한연령을 두지 않고 유아, 아동부터 청소년, 청년까지를 아울러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단일 법률 체계를 갖추고 하나의 부처에서 생애 전반기 정책대상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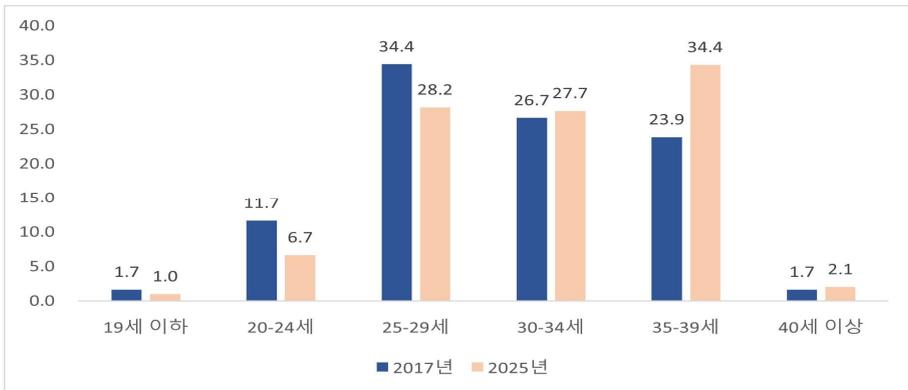


* 출처: 자체 작성. 전 세계는 195개 국가, OECD는 38개 국가의 결과임.

그림 II-2. 전 세계 및 OECD 청년 하한 연령 비교(2025년)

이어서 상한 연령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35-39세로 청년을 규정하는 국가가 34.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25-29세(28.2%), 30-34세(27.7%) 순이었다. 국제적으로 청년 통계를 낼 때 청년 연령을 15세에서 24세나 29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 국가에서 30대를 포괄하여 청년을 규정하는 곳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연령 상향 현상이 확인된다. 2017년에는 25-29세로 청년을 규정하는 곳이 34.4%로 가장 많았다. 이 비율은 2025년 들어서 28.2%까지 낮아졌다. 반면, 35세에서 39세 비율은 같은 기간 23.9%에서 34.4%로 늘어났다. 35-39세 구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령 규정은 35세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연령 상향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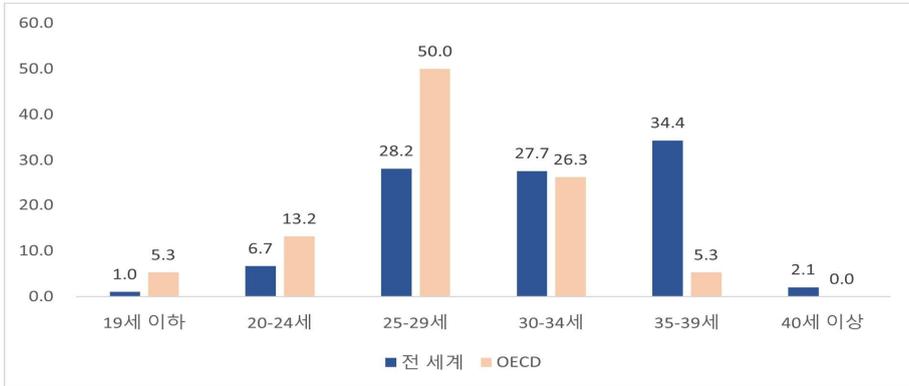
* 출처: 자체 작성. 2017년은 180개 국가의 결과이며 2025년은 195개 국가의 결과임.

그림 II-3. 전 세계 청년 상한 연령 현황(2017/2025년)

이 결과를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에서는 50.0%가 25-29세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청년 (Youth) 통계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처럼 30-34세인 곳은 26.3%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령 구간인 35-39세는 5.3%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내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 45세나 49세로 청년 상한 연령을 높이고 있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데 40세

이상인 국가는 전 세계의 경우 2.1%로 4개 국가에 그치고 있다. OECD 국가 중 40대를 포함한 곳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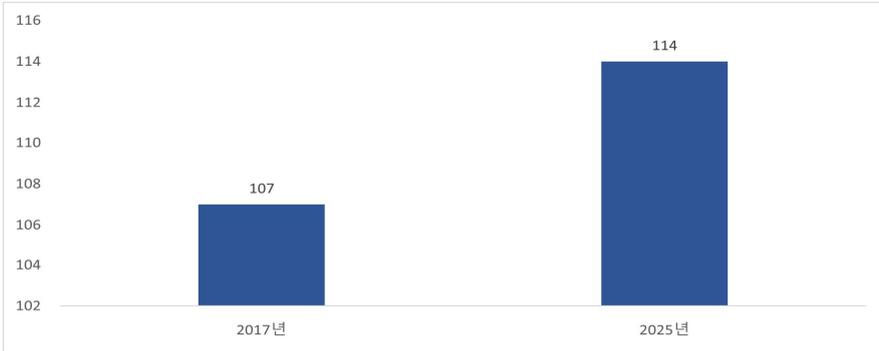
* 출처: 자체 작성. 전 세계는 195개 국가, OECD는 38개 국가의 결과임.

그림 II-4. 전 세계 및 OECD 청년 하한 연령 비교(2025년)

2) 청년정책 행정조직

여기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청년정책 행정조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행정부서 명칭에 청년이나 생애 전반기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곳은 114개로 전 세계 195개 국가 중 5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저출생 국가로 생애 전반기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큰 우리나라의 경우에 안타깝게도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우선 순위로 생애 전반기 정책을 추진하는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어느 행정조직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지 알 수 있도록 조직 명칭에 청년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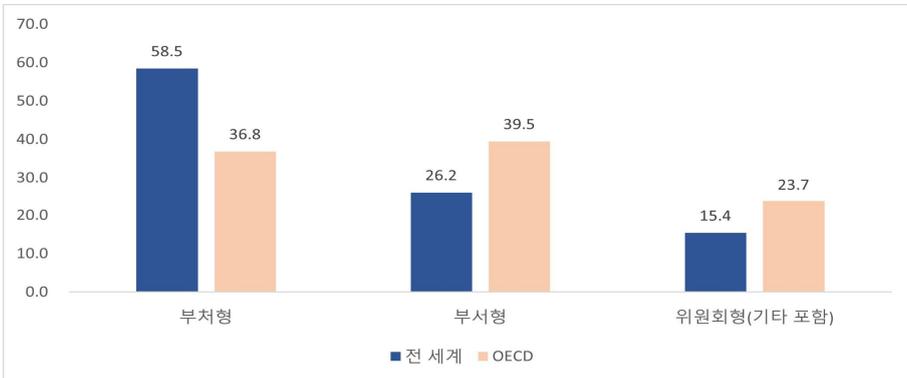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107개 국가였으며 이번 조사에서 7개 국가가 늘어났다. 다만 조사 대상 국가가 180개에서 195개로 늘어 행정부서 명칭에 생애 전반기를 명시하는 곳이 늘어났다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 출처: 자체 작성. 2017년은 180개 국가의 결과이며 2025년은 195개 국가의 결과임.

그림 II-5. 전 세계 생애전반기 명칭 포함 청년정책 행정조직 현황(2017년/2025년)

이어서 부처형과 부서형, 기타를 포함한 위원회형을 살펴보면, 전 세계 국가 중 58.5%는 위원회가 아닌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직 명칭에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부서형이 26.2%였고 기타 및 위원회형인 경우는 15.4%에 그쳤다.



* 출처: 자체 작성. 전 세계는 195개 국가, OECD는 38개 국가의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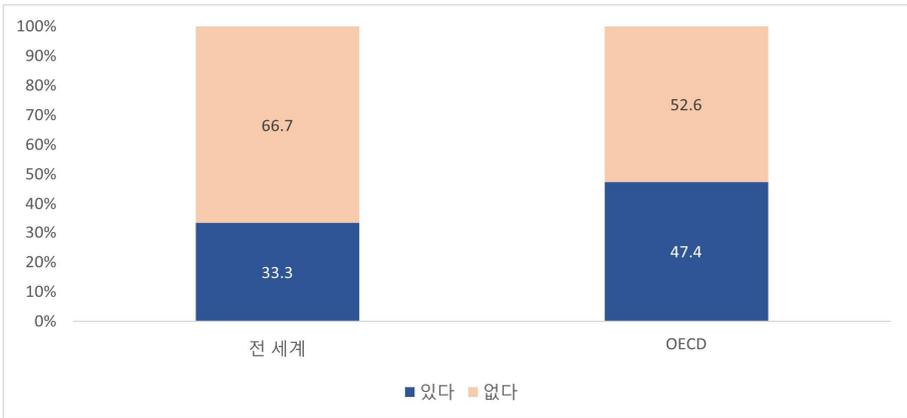
그림 II-6. 전 세계 청년정책 행정조직 유형 현황(2025년)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OECD 국가들은 부서형이 부처형보다 많았다. 위원회 형태를 취하는 국가 역시 OECD 국가들이 많았다.

3) 청년 법률 제정 현황

전 세계에서 청년 법률을 제정해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곳은 33.3%로 65개 국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 중 법률을 두고 있는 곳은 47.4%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법률을 갖추고 청년정책을 다루는 국가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유사한 연령을 다루는 「청소년기본법」이 1991년에 제정되었고 「청년기본법」이 2020년에 제정되어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분야는 모법(母法)체제로 하위 법률을 갖추고 있다.



* 출처: 자체 작성. 전 세계는 195개 국가, OECD는 38개 국가의 결과임.

그림 II-7. 전 세계 청년 법률 제정 여부(2025년)

3.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 연령 규정에 대한 부분이다. 전 세계 현황을 보면, 30대 후반이 가장 많았으나 OECD 국가들로 좁혀 보면, 여전히 20대 후반으로 청년 연령을 정하는 곳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45세 혹은 49세까지 확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청년정책은 성인기 이행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연령을 상향할수록 이러한 정책적 목표와 멀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청년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졌다. 청년기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참정권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8세로 낮아졌다면 청년 하한 연령도 19세가 아닌 18세로 낮아질 필요가 있다. 이는 「민법」상 성인 연령에 대한 개정을 동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조직 명칭과 관련하여 대다수 국가에서 청년을 비롯한 생애 전반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중앙부처 명칭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역시 가장 낮은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생애 전반기의 명칭이 부처 명칭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제3장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 미국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2. 일본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3. 독일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4. 프랑스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5. 핀란드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6. 청년정책 해외사례 시사점

1. 미국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⁴⁾

1) 청년정책 법률 현황

미국은 별도로 청년정책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이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배를 토대로 다양한 법률 체계에서 일부 또는 독립적으로 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청년층이 사회에 원활하게 진입하고, 교육·고용·복지·사법 등 여러 분야에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미국 청년정책의 핵심 목표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청년 또는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성인 이행 이전 대상을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다루는 대표적인 7개 법률을 중심으로 각각의 제정 배경과 주요 조항, 최근 개정 내용 및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현행 법률 체계가 청년층의 실질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 교육 분야: Every Student Succeeds Act(ESSA, 2015)

2015년에 제정된 Every Student Succeeds Act(ESSA)는 2001년부터 시행된 No Child Left Behind Act(NCLB)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기존 NCLB가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시험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연방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면서, 해당 법률이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창의적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ESSA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주요한 개선의 방향은 연방정부의 감독을 완화하고, 주정부에 교육과정과 평가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U.S. Congress, 2015).

4) 이 절은 황영식 조교수(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작성하였음.

ESSA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20 U.S.C. § 6311(b)(2)은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고품질 평가 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고품질 평가'란 단순히 표준 시험 점수에 국한하지 않고,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주정부가 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 U.S.C. § 6311(d)는 주정부가 학업성취도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연방정부가 정한 최소 기준을 넘는 수준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농촌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언어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확대하였다. 매사추세츠주 또한 대학 진학에 초점을 둔 엄격한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유지하는 등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예산 편차와 표준화 시험 중심의 평가 관행은 여전히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완전한 개선을 이루지 못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20).

최근에는 ESSA의 학생 정신건강 지원 확대와 다문화 교육 강화를 위한 연방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주별로 관련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수업과 디지털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2) 고용 분야: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WIOA, 2014)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WIOA)는 2014년에 제정된 법률로, 청년층의 고용 촉진과 직업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 실업률 증가와 학교 밖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정된 WIOA는 학교 밖 청(소)년(Out-of-school youth)에게 직업 경험 및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상담과 구직 지원을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U.S. Congress, 2014). 여기서 학교 밖 청(소)년은 16세부터 24세까지 연령대를 포함한다. 또한, 미국 연방법 Title 29(노동법) U.S.C. §3164(c)(2)에 따르면, WIOA 자금 중 최소 20% 이상이 청년(youth) 근로 경험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유급 또는 무급 인턴십, 멘토링, 직무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각 주에서는 One-Stop Career Centers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직업 상담, 훈련, 구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 기업과 협력한

인턴십과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확대되어 IT, 의료,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One-Stop Career Centers와 민간 기업 협력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단기 고용 성과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기술 교육, 재취업 지원 등 디지털 경제 대응 프로그램과 청년 창업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단기 취업률 중심의 성과평가 방식과 주별 운영 역량의 차이로 인해 장기적 고용 안정성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하며(U.S. Department of Labor, 2022). 프로그램 접근성 격차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3) 사법 분야: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JJDPA, 1974)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JJDPA)는 1974년에 제정된 법률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재활 중심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 제정 당시인 1970년대 청소년 구금 시설 내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과 성인을 동일한 구금 시설에 수용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률이 제정되었다(U.S. Congress, 1974).

이와 관련하여 미 연방법 Title 34(범죄 통제 및 법 집행) U.S.C. § 11133(a)(11)은 청소년이 성인 범죄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구금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아울러 청소년 구금과 관련하여 인종적 불균형 문제인 Disproportionate Minority Contact(DMC)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가 감시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전담 법원의 설립, 보호관찰 프로그램 강화, 재범 방지 교육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법률 시행 이후 많은 주에서는 청소년 전담 법원과 재활 중심의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일부 대도시권에서는 재범률 감소 효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주별 법률 집행의 편차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재활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21).

최근에는 인종·성별 불균형 문제에 대한 감시 강화와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가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사법 체계에서 비행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과 교육·취업 연계 강화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 노동 분야: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1938)

Fair Labor Standards Act(FLSA)는 1938년 대공황 시기에 제정되어 아동과 청소년

노동을 규제하는 미국 최초의 연방 노동법 중 하나이다. 이 법은 근로 시간 제한, 최저 임금, 아동 노동 금지 등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다(U.S. Congress, 1938).

미국 연방법 Title 29(노동법) U.S.C. § 212(a) 조항은 14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14~15세 청소년은 근로 시간과 근무 가능한 업종에 제한을 둔다.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위험한 기계 및 유해 환경에서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는 예외 조항이 존재해 일부 미성년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청소년 근로의 불안정성과 임금 체불, 노동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률적 보호와 단속이 어려운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Labor, 2020).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과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청소년 근로 조건 문제, 디지털 경제 내 노동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노동권 침해 예방을 위한 감독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5) 디지털 안전 분야: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COPPA, 2000)

2000년 제정된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COPPA)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COPPA는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U.S. Congress, 2000).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U.S.C. § 6502(b)(1)(A)(i)~(ii)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개인정보 수집 전에 '검증 가능한' 부모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저장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상세히 고지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부모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최근 온라인 괴롭힘과 유해 콘텐츠, 정신건강 문제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심각해짐에 따라, '5) Kids Online Safety Act (KOSA)' 등의 법률 제정 움직임이 연방 의회에서

5) 2022년 미국 연방 상원에 발의된 법안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최소화할 의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웰빙 증진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 △보호자와 청소년에게 온라인 이용에 관한 도구와 정보를 제공할 의무 등을 포함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 위축과 과잉 검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활발히 진행 중이다. KOSA는 COPPA가 다루지 못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유해 콘텐츠 차단, 정신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U.S. Congress, 2021).

(6) 복지 분야: 보호종료 청년 지원과 Family First Prevention Services Act (FFPSA, 2018/2021)

보호 아동 제도에서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청년들이 사회적 지원 없이 독립하는 전통적 관행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 실업, 정신 건강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된 Fostering Connections to Success and Increasing Adoptions Act는 보호 종료 연령을 21세까지 연장하고 친족 위탁을 우선시 하도록 하였다(U.S. Congress, 2008).

특히 입양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 연계되는 § 673(a)(5)는 각 주정부가 보호 종료 후 청년 지원 계획을 마련해 교육, 직업훈련,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후 2018년 Family First Prevention Services Act(FFPSA)는 예방 중심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치료 지원도 강화하였다(U.S. Congress, 2018).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보호 종료 청년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주별 재정 여건과 서비스 접근성 격차, 인력 부족 등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

(7)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 지원: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RHYA, 1974) 및 최근 개정

1974년에 제정된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RHYA)는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에게 긴급 쉼터, 상담, 가족 재결합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미국 연방법 Title 42(공중보건 및 복지) § 5711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U.S. Congress, 1974).

최근(2022년)에는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rafficking Prevention Act」 개정으로 청소년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 법은 전문 상담 인력 양성, 연방 및 주정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등을 규정하였는데, 연방정부는 2023년 예산에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약 15% 증액하였다(U.S. Congress, 2022). 다만, 전국적으로 청소년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서비스 접근성에 지역적 격차가 크며, 지방정부와 민간 단체 간 협력의 어려움이 남아 있다. 특히 정신건강과 교육, 고용 지원 연계 부족이 청소년 홈리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23).

이상 7개의 대표적 미국 청년정책 법률은 교육, 고용, 사법, 노동, 디지털 안전, 복지, 그리고 홈리스 청소년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들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법률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속해서 개정되며, 청년층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간 역할 분담과 주정부별 자율성 확대가 때로는 정책 집행의 지역별 편차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 ESSA와 고용 분야 WIOA는 주정부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동시에 주마다 청년 지원 서비스의 질과 범위에 차이를 만들고 있다. 또한, 보호 종료 청년 지원과 홈리스 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은 연방 차원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나, 재원 배분과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 주별 격차가 존재한다. 법률 자체가 청년의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개별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률은 COPPA 이후 큰 틀에서 변화가 더디며, 급변하는 온라인 위협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노동 분야에서 FLSA와 같은 전통적 법률은 여전히 청소년 근로 보호의 바탕을 이루고 있지만, 비공식 노동시장 확대와 새로운 고용형태 등장에 대한 법적 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은 법률의 현대화와 유연한 개정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청년정책 행정 부서

미국 청년정책의 집행과 운영은 연방 행정부 내 여러 부처가 담당하며, 각 부처는 청년의 교육, 고용, 복지, 사법, 디지털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한다. 이러한

부처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법적 권한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복잡한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 청년정책과 관련한 주요 행정 부서들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최근 정책 동향을 법률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1)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부는 미국 청년정책의 중심 기관으로, 청년들의 학습 기회 확대와 교육 평등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5년에 제정된 Every Student Succeeds Act(ESSA)는 미국 교육법상 중요한 전환점으로, 연방정부의 교육 개입 범위를 줄이는 대신 주정부 및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ESSA는 청년 교육 성과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소수계 학생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연방정부는 주와 지방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지원국(Office of Postsecondary Education)은 ‘TRIO Programs⁶⁾’와 ‘GEAR UP⁷⁾’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방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 진학과 성공적인 학업 이수를 지원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멘토링, 학업 상담, 장학금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국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TRIO 프로그램 참여 청년의 70% 이상이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성과를 보였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원격교육이 확산함에 따라 교육부는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2021년 ‘American Rescue Plan Act’(Pub.L. 117-2)에 포함된 교육 예산을 통해 디지털 기기 보급과 인터넷 접속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American Rescue Plan Act, 2021). 이러한 정책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와 원격수업 품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손실을 완화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6)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운영하는 연방 지원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학업 성취도가 낮음, 또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과 학업 성공을 지원함. 주요 프로그램에는 Upward Bound, Talent Search, Student Support Services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멘토링, 학업 상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7) GEAR UP(Gaining Early Awareness and Readiness for Undergraduate Programs):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준비와 학업 성취를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임. GEAR UP은 학업 준비, 장학금 안내, 멘토링, 캠프 및 특별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움.

(2)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노동부는 청년의 고용 촉진과 직업능력 개발을 전담하는 연방기관으로, 산하의 고용훈련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은 2014년 제정된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WIOA)를 중심으로 청년 직업교육과 고용지원 정책을 집행한다. WIOA는 특히 학교 밖 청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 직장 경험, 구직 상담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Labor, 2023).

또한 노동부는 전국적으로 'One-Stop Career Centers'를 설치하여, 청년들이 교육, 직업훈련, 구직 지원, 복지 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23년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센터를 통한 청년 고용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참여자 고용률을 평균 62%까지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U.S. Department of Labor, 2023).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IT, 디지털 기술, 녹색 산업 분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 협력해 청년 인턴십과 창업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과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3)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보건복지부는 청년의 복지, 정신건강, 가정 보호, 홈리스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분야를 담당한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은 Fostering Connections to Success and Increasing Adoptions Act(성공으로 연결되는 돌봄과 입양 증가법, 2008년 제정) 및 Family First Prevention Services Act(가족 우선 예방 서비스 법, 2018년 제정)를 바탕으로 보호 종료 청년에게 교육, 직업훈련, 주거,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특히 보호 종료 청년 지원 사업은 청년 자립에 필수적인 주거 안정과 생활 기술 교육을 강조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보호 종료 청년의 약 30%가 주거 불안정을 경험하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 주거 지원과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문제 악화에 대응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 확대와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또한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긴급 쉼터와 장기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 중이며,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 사업도 강화되고 있다.

(4)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 산하 청소년 사법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은 1974년 제정된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JJDP, 청소년 사법 및 비행 예방법)를 근간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과 사법 체계 내 인권 보호에 주력한다. 이 법은 청소년과 성인의 분리 수용, 인종적·사회경제적 불균형 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 프로그램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JJDP 개정과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청소년 사법 체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021년 ‘Juvenile Justice Reform Act’ 개정안은 청소년 비행 예방과 재활에 대한 투자 확대를 명문화하여, 법무부가 다양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21). 또한 법무부는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과 교육, 지역사회 참여 촉진에 힘쓰며,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복합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5) 디지털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기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청소년 디지털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집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1998년 제정된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COPPA,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규제하며, FCC와 FTC가 이를 집행한다.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FCC와 FTC는 온라인 괴롭힘, 유해 콘텐츠 규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지원과 집행을 확대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Kids Online Safety Act 등 추가 법안이 논의 중이며, 이들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책임 강화, 청소년 보호 정책을 포함한다(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23; Federal Trade Commission, 2023). 이와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안전한

인터넷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는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와 협력하며, 청년들이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CNCS)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IWGYP, 연방 청년프로그램 실무단)은 연방정부 내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청년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핵심 행정 조직이다. IWGYP는 청년 프로그램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각 부처의 자원과 전문성을 통합하여, 청년들이 교육, 직업 훈련, 건강, 복지,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청년 당사자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과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실제 필요와 경험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I-1. 미국의 연방 청년지원 실무단 참여 기관

상위 행정기관	내부 부서 및 사무국 명칭	주요 역할 및 기능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Office of Postsecondary Education TRIO Programs 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 진학·학업 지원, 멘토링, 상담 프로그램 운영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ETA) Office of Apprentice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인턴십, 직장 경험 제공, One-Stop Career Centers 운영
보건복지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ACF)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SAMH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 종료 청년 자립지원, 정신건강·중독 치료, 홀리스 청소년 지원
법무부 (U.S. Department of Jus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Youth Mentoring Initia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범죄 예방, 사법체계 내 권리 보호, 피해 청소년 지원, 재활 프로그램 운영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Youth Exchange Programs 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청년 교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연방통신위원회 (F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Enforcement Burea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디지털 안전 정책 집행,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미디어 규제

상위 행정기관	내부 부서 및 사무국 명칭	주요 역할 및 기능
연방거래위원회 (F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of Privacy and Identity Prot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감독 및 법 집행
청소년사무국 (Office of Young Americ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 청년정책 조정, 부처 간 협력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청년 참여 및 정책 개발 촉진
환경보호청 (E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Office of Environmental Education Green Jobs Program 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대상 환경교육, 녹색산업 직업훈련 지원, 친환경 일자리 창출
내무부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Youth Conservation Corps Office of Youth Progr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보호 활동 참여, 공공사업 및 야외 활동 지원

* 출처: U.S Department of Education 외 개별 미 정부 부처 웹사이트 참조.

(6) 최근 동향과 시사점

미국 청년정책 행정 부서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교육 불평등, 고용 위기, 정신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부처 간 협력과 통합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청소년사무국 신설 추진과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정책 조정 기능을 확대하며, 부처 간 칸막이 해소에 힘쓰고 있다(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22).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 집행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각 부처는 원격교육 인프라 확충, 온라인 고용지원, 정신건강 비대면 서비스 등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 부서 구조와 정책 중복, 지역별 서비스 격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미래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부 내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민관 협력 확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평가 체계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청년정책 전달체계

(1) 미국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기본구조

미국의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단일 중앙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라기보다, 여러 연방 부처와 기관이 협력·연계하여 청년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형 협력 체계

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청년정책은 연방정부에서 시작해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및 민간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전달체계 속에서 운영된다. 이 구조는 중앙에서 일괄 집행하는 명령형 모델과 달리, 각 계층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권화된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법률에 따른 정책 방향과 예산을 제공하며, 주정부는 이를 구체적 지역 실정에 맞게 변형하고 지방정부는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비영리기관과 민간 부문은 이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보완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다층적 전달체계는 전국 청년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며, 동시에 연방과 주·지방정부 간, 공공과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22).

(2) 연방정부의 정책 조정 및 지원 역할

연방정부는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주요 행정 부서들이 각자의 권한과 역할을 분담한다. 노동부는 WIOA 법률에 근거해 주정부와 협력, 전국적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ESSA 등을 바탕으로 공교육과 고등교육 연계를 지원하며, 보건복지부는 보호 종료 청년과 취약 청년 지원에 집중한다. 이들 부처는 개별 사업을 넘어서 정책 간 연계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Office of Young Americans(연방 청년사무국) 설립 제안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협력체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구상이 있다. 다만, 아직 공식 조직으로서 확립된 것은 아니며 제안 수준에 머물러 있다(U.S. Congress, 2023). 또한, 연방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인프라 구축과 기술지원,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제공하여 전달체계 내 자원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3) 주정부의 중간 관리자 및 조정자 역할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중간 관리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주 노동국(State Workforce Agencies)은 연방으로부터 전달받은 WIOA 예산과 지침을 지역 고용센터에 분배·관리하며, 주 교육 부서는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방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주기관은 보호 종료 청년, 정신건강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현장 운영을 총괄한다. 주정부는 지역 특성, 경제 상황, 청년 인구 구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사업을 기획하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 집행을 도모한다. 또한, 민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 활용도를 높인다(U.S. Department of Labor, 2023).

(4)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기관의 현장 실행력

지방정부는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교육청과 노동 부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 부서는 청년 주거, 정신건강,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방정부는 청년과 직접 접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정책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핵심 축이다. 또한,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와 청소년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멘토링, 상담, 취업 알선, 생활 지원 등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특히 소외계층 청년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필요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단체와 민간기관은 정부 예산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하며, 자체 기금을 활용해 청년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2).

(5)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민관 협력은 미국 청년정책 전달체계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연방과 주 정부가 자원을 투입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민간 및 비영리기관은 현장 실행과 전문성을 담당한다. 특히, 노동부 WIOA 프로그램의 다수 협력 기관은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기관이며, 이들은 학교 밖 청년,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도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정신건강 서비스,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현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의 강점을 결합한 ‘공동 거버넌스’ 모델은 전달체계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이며, 지역사회 특화형 맞춤형 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Coordinating Council o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25).

(6) 다부처 협업과 데이터 기반 전달체계

미국 연방정부는 청년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HUD),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가 청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이를 조정·연계하기 위해 백악관이 중심이 되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운영한다(예시: White House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등).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민간기관,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와 정책 중복·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정책 중복 및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22).

(7)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전달체계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미국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디지털 플랫폼과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도입했다. 노동부의 'One-Stop Career Centers'는 온라인 직업훈련, 구인 정보 제공, 상담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지역 센터와 실시간 연동된다(U.S. Department of Labor, 2023). 교육부도 원격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 청년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상담 및 자립 지원 서비스도 모바일 앱과 온라인 포털을 통해 운영되어 청년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23).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특히 농촌, 소외 지역 청년들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완화하며, 전달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8) 전달체계의 한계와 발전 과제

미국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높은 복잡성과 협력 구조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자원 배분 불균형, 중복 지원, 서비스 누락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소규모 지역에서는 청년 지원의 품질 격차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23).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표준화된 전달 모델 개발, 지역 간 정보 공유 확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표 III-2. 미국 청년정책 전달체계 주요 주체 및 역할

전달 단계	주체(기관 및 부서)	역할 및 기능
연방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ETA, Apprenticeship Office) • 교육부(Postsecondary Education) • 보건복지부(ACF, SAMHSA) • 법무부(OJJDP) 청소년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설계 및 예산 배분 • 전국적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청년 보호 및 복지 정책 수립 •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지원청년정책 조정과 통합
주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서(State Dept. of Education) • 노동국(State Workforce Agencies) • 보건복지부(State HHS) • 법무부(State Juvenile Jus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정책 현장 적용 및 사업 조정 • 지역 특성 반영한 정책 설계 •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 관리 감독
지방 정부 및 지역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교육청 및 학교 • 지방 노동 및 복지 부서 • 지역청소년센터, 비영리기관 커뮤니티 단체 및 민간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복지·고용 서비스 제공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민관 협력 통한 현장지원 강화
청년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수혜, 참여지역사회 및 경제 활동 주체

* 출처: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 website(www.hud.gov)

4) 청년정책 대표 사업

미국 연방정부는 청년층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도전을 해결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 고용 촉진, 정신건강 지원, 자립과 사회참여, 주거 안정 등 청년 문제의 다각적 측면을 포괄한다. 여기서는 미국 내 주요 청년정책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사업의 목적과 내용, 운영 현황 및 성과, 그리고 최근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1) 일자리: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2014년에 제정된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WIOA)는 미국 고용 정책의 핵심 법률로, 청년들에게 직업교육과 취업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만 16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 멘토링, 취업 알선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전국에 분포된 'One-Stop Career Centers'를 통해 교육과 취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U.S Department of Labor, 2023).

2022년 기준 약 50만 명의 청년이 WIOA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들 중 6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여 STEM 분야 및 디지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 고용환경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이 설계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여 비대면 상황에서도 청년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처럼 WIOA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과 재원 투입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 주거: 청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Youth Homelessness Demonstration Program(YHDP)은 노숙 및 주거 불안정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와 복합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10여 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약 5,000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받고 있다(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2).

YHDP는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취업, 정신건강,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 노숙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한다.

YHDP의 핵심 특징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계획 수립과 청년 참여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다양한 주택 모델과 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평가 및 지속적인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선정된 지역사회는 HUD의 지침에 따라 통합 지역사회 계획(Coordinated Community Plan, CCP)을 수립하고, 청년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구체적

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HUD 승인을 거쳐 자금 지원과 프로그램 실행의 기반이 된다. 또한, 청년들의 경험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Youth Action Board(YAB)를 구성하여 CCP(Continuum of Care Program⁸) 승인과 프로젝트 선정, 서비스 개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YHDP는 주택 지원 모델에서도 청년 중심 접근을 강조하며, Rapid Rehousing(RRH), Transitional Housing(TH), Permanent Supportive Housing(PSH)등 다양한 모델)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주거 지원과 함께 교육, 취업, 정신건강, 법률 등 다각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HMIS)¹⁰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YHDP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YHDP Round 8에서 약 975만 달러를 지원받아 청년 중심의 주택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YAB 참여를 통해 정책 설계와 프로그램 운영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청년 자문기구를 통해 프로젝트 제안과 서비스 개선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였으며,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주택과 정신건강, 교육 및 취업 지원, 재정 관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YHDP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임을 알 수 있다.

8)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운영하는 연방 지원 프로그램으로, 노숙인 및 취약 계층 청년을 포함한 대상자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함. CCP는 지역별 협력체계를 통해 주택 지원, 직업·교육 훈련,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청년 참여 기구인 Youth Action Board(YAB)를 통해 정책 결정과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9) Rapid Rehousing (RRH): 단기 주거 지원과 사례 관리 중심으로, 청년이 가능한 한 빨리 독립 주거로 이동하도록 지원. 주거 비용 일부를 보조하며, 3~24개월 정도 단기 지원. Transitional Housing (TH): 중간 단계 주거로, 일정 기간(보통 6개월~2년) 숙소와 서비스 제공. 교육, 직업훈련, 상담 등 포괄적 지원 포함.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PSH): 장기적·영구적 주거 제공과 지속적 지원을 결합한 모델. 장애나 장기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안정적 주거와 사례 관리,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제공.

10) HMIS(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미국 HUD가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노숙인 및 취약 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한다. HMIS는 주거 제공, 사례 관리, 서비스 이용 현황 등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결정, 프로그램 평가, 자원 배분,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됨.

표 III-3. Youth Homelessness Demonstration Program의 특징

구성 요소	기능 및 특징	사례
통합 지역사회 계획(CCP)	• 지역 특성과 청년 요구 반영, HUD 승인 필수	• 샌디에이고 CCP 승인 후 975만 달러 지원
청년 참여 자문기구(YAB)	• 정책 설계, 프로젝트 선정, 서비스 개선 참여	• 디트로이트 청년 참여 프로그램 설계
주택 모델	• RRH, TH, PSH 등 다양한 모델 제공, 청년 맞춤형 주거	• 리버사이드 카운티 주택+서비스 통합 제공
통합 서비스 제공	• 교육, 취업, 정신건강, 법률 지원 포함	• 모든 선정 지역에서 서비스 패키지 제공

* 출처: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 website(www.hud.gov)

(3) 교육: Pell Grant 및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미국 교육부가 운영하는 Pell Grant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연방 장학금 제도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약 700만 명의 대학생이 Pell Grant를 수혜받았으며, 이는 미국 고등교육의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Pell Grant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최대 수천 달러에 이르는 학비 보조를 제공하는데,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이나 근로장학금과 병행하여 학업을 이어간다.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온라인 원격교육 비용 지원 확대, 대출 상환 유예 등 학자금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속에서도 청년들의 학업 지속을 돕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Pell Grant 프로그램은 미국 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있어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4) 복지문화: John H.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체이피 양육보호청소년 자립 프로그램)

미국 아동가족서비스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은 보호 종료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성인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 종료 청년이란 양육보호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 법적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다다른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 시점의 청년들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자원이 부족해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ACF가 주관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은 존 H. 체이피 양육보호청소년 자립 프로그램(John H.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 이하 체이피 프로그램)과 그 일환인 교육 및 훈련 바우처 프로그램(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s, ETV)이다.

체이피 프로그램은 1999년 제정된 Foster Care Independence Act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미국 전역의 주(State), 자치구, 부족(Tribe)에 자금을 지원하여 보호 종료 청년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주요 대상은 14세에서 21세 사이의 청소년이며, 프로그램은 이들이 성인기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직업훈련, 생활 기술, 주거 지원,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한다. 각 주는 연방 지침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청소년의 필요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실제 정책과 서비스 설계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체이피 프로그램의 핵심 지원 영역은 첫째, 교육 지원이다. 보호 종료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학이나 직업훈련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취업 및 직업 기술 훈련을 통해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직업 배치와 취업 유지 지원을 병행한다. 셋째, 생활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금융 관리, 의사결정, 자기 관리 등 성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주거 지원을 통해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며, 다섯째, 정서적 지원을 통해 멘토링과 네트워크 구축 등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체이피 프로그램의 일환인 교육 및 훈련 바우처 프로그램(ETV)은 보호 종료 청소년이 대학, 직업훈련, 직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바우처는 등록금, 교재비, 생활비 등 교육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3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TV는 체이피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청소년의 학업 지속성을 높이고 성인기 자립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 평가는 National Youth in Transition Database(NYTD)를 통해 이루어진다. NYTD는 보호 종료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고, 이를 통해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를 체계적으로 기록·분석하여, 프로그램 개선과 정책 결정에 활용된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평가 체계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체이피 프로그램은 미국 내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성인기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약 20,000명 정도의 청소년이 보호 종료 연령에 도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교육적,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여 위험에 노출된다. 체이피 프로그램은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보호 종료 청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4).

(5) 시사점

미국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사업들은 청년층의 다양한 어려움을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IOA 청년 프로그램과 Pell Grant 등 교육 및 고용 지원 사업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학업 지속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Foster Care 자립 지원과 Juvenile Justice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 적응과 재범 방지를 돕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지원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했으며, AmeriCorps 봉사 프로그램과 HUD 주거 지원 사업은 청년의 사회적 참여와 주거 안정을 증진하는 데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정책은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사회 전반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표 III-4. 기타 미국 청년정책 주요 사업 요약

사업명	참여 규모	주요 성과 지표	2023년 예산(추정)	최근 정책 동향
WIOA 청년 프로그램	약 50만 명	6개월 내 취업률 60% 이상	약 12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M 교육 강화, 디지털 직업 훈련 확대
Pell Grant 및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약 700만 명	교육 접근성 대폭 향상	약 30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교육 지원 확대, 대출 상환 유예 강화
Foster Care Youth Programs	약 10만 명	자립 성공률 상승,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약 3억 5천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 서비스 예산 확대, 민간협력 강화
Juvenile Justice Programs	약 2만 명	청소년 범죄율 감소, 재범 방지	약 2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폭력 프로그램 확대, 트라우마 치료 강화
SAMHSA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증가	약 5억 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치료 및 비대면 상담 서비스 확대
AmeriCorps 청년봉사 프로그램	약 8만 명	청년 사회참여 증가, 리더십 강화	약 4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확대
HUD Youth Homelessness Programs	약 5,000명	안정적 주거 제공 및 자립 지원	약 1억 5천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 청년 긴급 주거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주거 솔루션 개발

* 출처: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 website(www.hud.gov) 외 개별 미 정부 부처 웹사이트 참조

2. 일본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¹¹⁾

1) 청년정책 법률 현황

(1) 일본 청년정책의 흐름

① 취업빙하기세대와 청년문제의 등장(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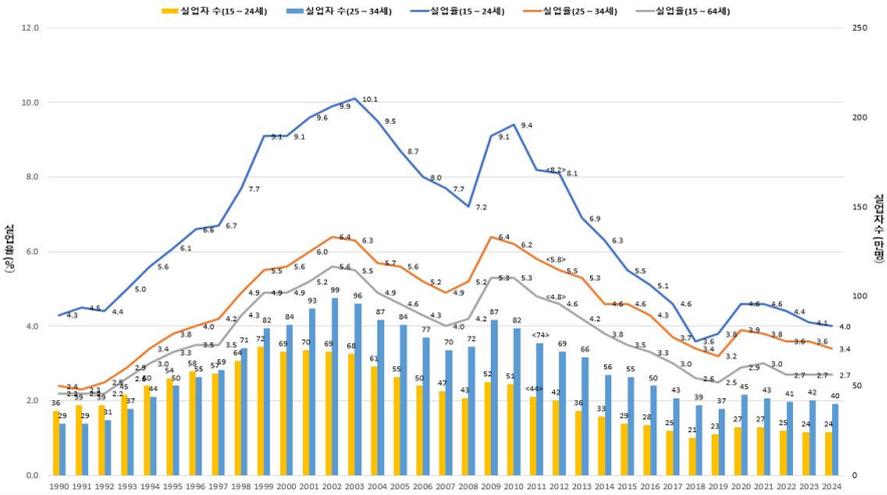
여기서는 일본 청년정책의 동향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변화 속에서 청년문제가 어떻게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간략히 살펴본다. 일본 청년정책의 시기적 구분에 관해서는, 미나미데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정책 전개를 ①청년지원의 창설기(2003년~), ②포괄적 지원의 확장기(2006년~), ③제도·정책 난립기(2009년~)로 구분(南出, 2012)한 것을 바탕으로 2010년대 이후의 정책 동향을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일본에서 성인이행기에 초점을 맞춘 청년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그 이전까지는 총리부(현 내각부)가 주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대책, 건전육성정책, 국제교류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노동성(현 후생노동성)은 취업을 위해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한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및 여가정책을 시행하였다.

한편, 일인일사제도(一人一社制)로 불리는 학교의 취업 알선기능은, 학교와 기업 간의 실적관계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채용관행을 통해 학생들은 졸업 전에 이미 취업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본 기업 특유의 채용관행인 신졸일괄 채용(공채채용)을 통해 기업은 학교 졸업예정자들을 대규모로 흡수함으로써 청년실업률을 비교적 억제할 수 있었고, 동시에 남성고용을 중심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왔다. 이처럼 일본의 성인이행기 구조에서는 주로 가족·학교·기업에 각각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적었다(宮本, 2002; 宮本, 2012).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이 급감하였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위 ‘취업빙하기세대(就職氷河期世代)’라는 용어가 1994년 신어·유행어 대상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에 졸업한 청년들로, 이전 세대에 비해 악화된 고용환경 속에서 일부는 취업내정취소나 하향취업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海老原, 2009; 近藤, 2024).

11) 이 절은 박재호 전문연구원(동경도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과)이 작성하였음.



* 출처: 총무성통계국 노동력조사 홈페이지, <https://www.e-stat.go.jp/>에서 2025년 9월 12일 인출.

그림 III-1. 일본의 청년실업 및 청년실업자 수

당시 일본 정부는 청년문제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경제단체와 함께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도부현(광역자치체)마다 1개씩 설치되어 있는 학생직업센터¹²⁾에 ‘미취업 졸업자 상담코너’를 신설하여 구인정보제공, 취업상담 등을 실시했다(金崎, 2017: 28-29). 또한 2000년대 초반 후생노동성은 청년층의 커리어형성사업으로 일환으로 프리터 등 청년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청년트라이얼고용(일·경험사업)’이나 커리어컨설팅사업 등을 실시했다.

이처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사업은 전개되었으나, 일본에서 본격적인 청년정책의 출발점은 2003년 ‘청년자립·도전플랜(若者自立·挑戦プラン)’으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1990년대 청년 취업난을 계기로 청년문제가 사회문제로서 부상했으나, 체계적인 청년정책이 마련되기까지는 1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12) 학생직업센터는 일본의 대학, 전문학교 졸업예정자 및 3년 이내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임. 1976년 노동성이 도쿄와 오사카 등 대학생이 많은 주요 도시에 설립했으며 점차 확대되어, 현재(2025년)는 각 도도부현에 1개씩(도쿄는 2곳) 전국 56곳에 설치되어 있음(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index.html#dpt>)에서 2025년 9월 12일 인출). 2010년부터 신종응원헬로워크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② 청년정책의 형성기(2003년~)

2003년 ‘청년자립·도전플랜’의 등장배경에는 프리터 담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프리터는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980년대 처음 등장한 프리터라는 용어는 원래 자신의 꿈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자유로운 계약 형태로 일하는 젊은이를 가리켰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본의 아니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청년 노동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바뀌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언론에서 프리터 관련 보도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 총무성 통계에서는 프리터가 200만명으로 추계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日本經濟新聞, 2001년 7월 31일). 이처럼 사회와 언론에서 프리터를 사회문제로 규정하는 담론이 확산되면서,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청년문제를 정책의제로 설정하였다.

2003년 4월, 정부는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내각부 경제재정정책담당, 4명의 대신(장관)이 참여하는 합의체 기구로서 ‘청년자립·도전전략회의’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청년자립·도전플랜’을 수립하여, 청년프리터, 청년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청년자립·도전플랜’에서는 독일의 일·학습 병행프로그램인 듀얼시스템을 모델로 설정하여 일본판 듀얼시스템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학교교육 단계부터 직장정착에 이르는 경력형성과 취업지원의 추진, ②청년 노동시장의 정비, ③청년의 능력향상 및 직업선택기회의 확대, ④청년의 창업·기업 활동 지원, ⑤지역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통칭: 잡카페)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청년자립·도전플랜’은 프리터 증가와 청년실업의 사회문제화 속에서 수립된 종합적 청년정책이었다. 청년 개인의 직업의식·능력향상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부처 간 정책 조정을 통해 기존의 교육·노동·산업정책을 청년정책이라는 범주로 통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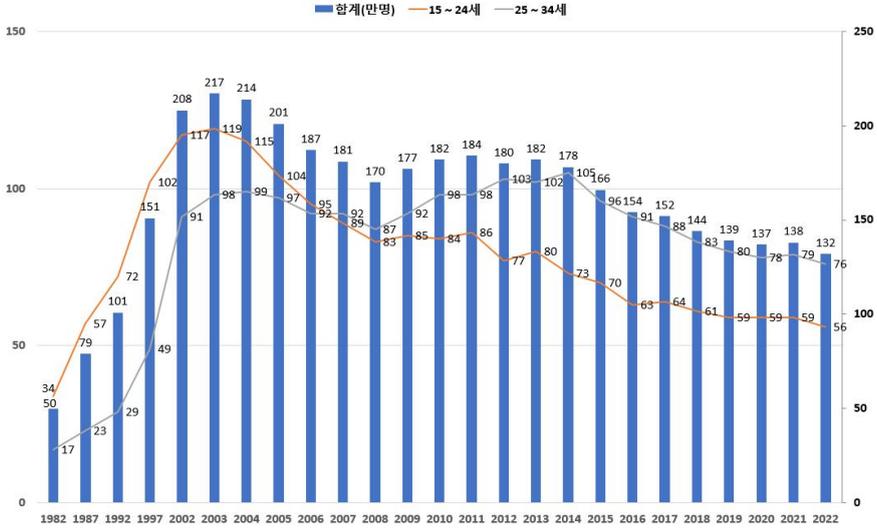
그러나 청년자립·도전플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프리터 증가 및 청년실업의 원인을 장기불황으로 인해 기업이 신입사원의 채용을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했으나, 정책 방향은 기업 측에게 청년의 채용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청년의 근로의욕 저하나 직업능력의 부족처럼, 청년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방식이었다(南出, 2012: 120). 따라서 일본의 ‘청년자립·도전플랜’은 개인에 초점을 맞춘 취업지

원칙에 편중되어 있으며, 청년의 근로관과 노동의욕을 고취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児美川, 2007; 2010).

이러한 배경에는 ‘청년자립·도전플랜’의 이론적 논리를 제공한 문부과학성의 진로교육과 산업계의 요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의 진로교육은 이미 1960~70년대부터 일부 과목에서 시행되었으며, 1999년 문부성이 공식적으로 커리어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94년 경제단체가 규제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및 고용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교육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학교교육단계에서 커리어교육의 강화 논의로 이어졌다(江上, 2008: 64-65). 그러나 진로·직업교육은 노동행정과도 긴밀히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문부과학성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었으며, 부처 간 정책 조정은 필수적이었다(児美川, 2007; 江上, 2008).

2002년의 ‘프리티어 200만 시대’ 담론은 정부 차원에서 커리어교육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의 창(Policy Window)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커리어교육은 청년정책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고,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추진되었다(児美川, 2007: 104). ‘청년자립·도전플랜’은 3년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캐리어교육회의’로 계승되며 커리어교육은 지속되었다. 특히 교육행정 관계자들이 2004년을 ‘커리어교육의 원년’을 선언할 만큼, 일본의 첫 청년정책인 청년자립·도전플랜에서 커리어교육의 비중은 컸다고 할 수 있다.

(단위: 만명)



* 출처: 厚生労働省「平成21年版労働経済の分析」, p.44. 総務省「労働力調査(詳細集計)」, p.15.에서 참고.
 * 주: 프리터는 15-34세 청년 중(학생 및 주부 제외)에서 아르바이트 및 파트타임 근로자로 정의함.

그림 III-2. 프리터의 추이

③ 지역전달체계의 정비(2006년~)

청년비정규직을 의미하는 프리터 이외에도, 2000년대 초부터 새로운 청년문제로서 니트가 등장했다. 니트는 “학교에 가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의미한다. 이러한 니트 용어는 1999년 영국 정부의 보고서에서 유래하였으며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언론에서 유행하였다. 당시 일본의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에서는 대규모 조사에 기반한 니트 관련 보고서가 출간되고, 연구자들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의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 니트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トイボネン, 2013; 井上, 2016). 이러한 정책형성과정 속에서는 일본에서 ‘니트’는 일할 의욕이 부족한 청년 무업자로 규정되었다.

당시 내각부의 청소년담당부서에서는 청년불안정고용과 청년무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의 ‘커넥션스 서비스(connexions services)’를 모델로 하는 ‘지역청년서포스태이션 사업’이 언급되었다(井上, 2019: 116-120). 다만 지역

청년서포스테이션은 내각부가 아니라 후생노동성의 관할하며, 그 전신은 근로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청소년홈이었다. 후생노동성의 입장에서 근로청소년의 감소로 이용률이 낮아지자, 니트문제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였다(トイボネン, 2013).

2004년 전국 25곳에 '지역청년자립지원 네트워크정비사업(현 지역청년서포스테이션)'으로 시작하여 각 도도부현에 최소 1곳씩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했으며 사업은 매년 확대되었다. 현재 2025년 전국 179곳에 지역청년서포스테이션이 운영되고 있다.

당초 내각부는 자립을 단순히 취업을 통한 '직업적 자립'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지원과 사회참가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정책집행과정에서는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의 영향으로 직업적 자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역청년서포스테이션은 '직업적 자립지원기관'으로 규정되었으며, 포괄적 지원은 그 하위에 목표로 위치하게 되었다. 게다가 정책평가에서 취업률이 핵심지표로 강조되면서, 초기의 '다양한 자립'이라는 이념은 후퇴하고 직업적 자립에 국한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南出, 2012: 121-122).

이러한 정책과정 속에서 후생노동성이 담당하는 근로청소년홈은 지역서포스테이션으로 전환되었으며, 정책대상 연령은 1960년대의 15~19세에서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15~49세까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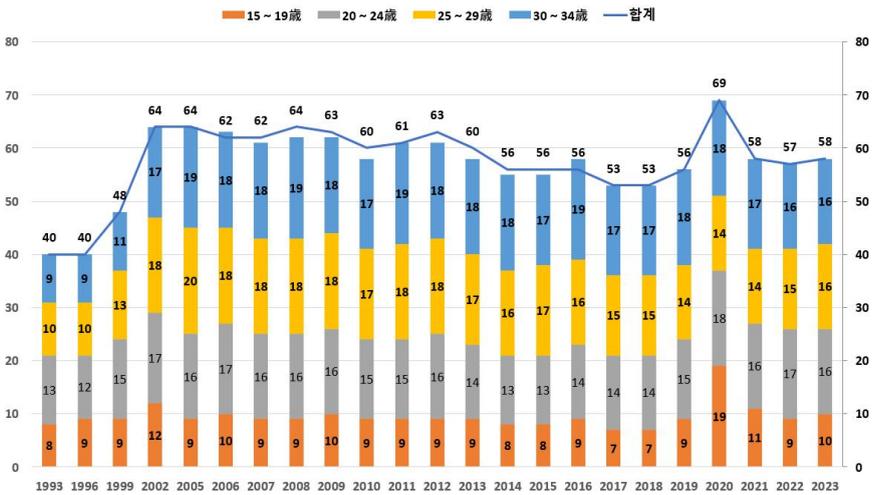
지역서포스테이션과 별개로, 2009년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이 제정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젊은이를 지원하는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다. 이 법의 제정 배경에는 내각부의 청소년정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각부는 청소년정책 전반을 관장해 왔으나, 종합적인 청소년육성정책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할 근거 법률의 부재가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다(松井, 2009: 1).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8년 12월, 내각부 청소년육성추진본부는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수립하였으며, 여기에는 니트·히키코모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차원의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포함되었다.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이 수립된 이후, 2009년 3월 일본 정부는 국회에 '청소년종합대책추진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은 니트·프리터·히키코모리 등 청년문제가 아동기에 이미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에는 아동의 시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朴, 2022: 59-60). 이처럼 입법과정에서 법률의 지원대상은 청소년에서 어린이·젊은이로 크게 변경되었고, 15세이하로 규정한 연령하한도 철폐되었다. 결국

2009년 7월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으로 수정되어 가결되었다.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은 일본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근거로, 니트·히키코모리·부등교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중심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청년종합상담센터’와 ‘어린이·청년지원지역협의회’의 설치가 지자체의 노력의무로 명시되었으며, 상담·연계·네트워크 구축, 아웃리치(방문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단위: 만명)



* 출처: 厚生労働省 (2018). 「平成30年版 厚生労働白書」, 総務省統計局 (2023). 「労働力調査 (基本集計) 2023年(令和5年) 平均結果の概要」.
 * 주: 청년무업자는 15~34세 비노동력 인구 중 가사·통학을 하지 않는 자로 정의함.

그림 III-3. 일본의 청년무업자(니트) 추이

④ 민주당 정권기: 빈곤정책과 청년정책의 결합(2008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인 리먼 쇼크는 일본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2009년의 경제성장률은 -5.6%¹³⁾를 기록하며 전후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이 시기 일본은 수출 감소, 기업의 투자 축소, 고용 악화 등의 영향을 받아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직접적으

1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에서 2025년 9월 21일 인출.

로 받았다. 기업들은 위기 대응 차원에서 고용조정을 실시하였고,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약 연장중단이나 해고를 단행했다. 생활보호수급자는 2011년에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厚生労働省, 2011), 상대적 빈곤율도 1991년 13.5%에서 2009년 16.0%로 증가했다(厚生労働省, 2022). 이 시기 일본에서는 ‘넷카페 난민’, ‘파견해고’, ‘워킹푸어’ 같은 빈곤문제가 대두되었다(南出, 2012; 濱田, 2021).

2009년 9월, 경제위기 속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며 민주당 정권(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이 출범했다. 민주당 정권은 대규모 경제대책과 고용대책을 추진하면서 긴급고용대책, 제2의 사회안전망(현재 구직자지원제도)¹⁴, 퍼스널 서포트서비스(현재 생활공공자지원제도) 등을 마련했다.

특히 민주당 정권은 청년층을 포함한 전 세대의 실업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고용보험과 생활보호제도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사회적 안전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비정규직, 무업자, 주부 등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던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생활비를 결합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청년층을 넘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퍼스널 서포트 서비스(Personal Support Service: PS)’가 시행되었다. 이는 주거·생계·취업 등 복합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포괄적 지원 제도로, 후에 ‘생활공공자자립지원법(2015년 시행)’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전국의 지자체에서 생활공공자자립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南出, 2012: 125). 이러한 제도는 저소득층과 생활보호수급자에게 단순히 취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빈곤계층, 특히 청년 빈곤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생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지향한다.

따라서 민주당 정권의 청년정책은, 앞서 자민당 정권 시기의 ‘근로 의욕이 부족한 청년’이라는 전제를 두고 근로관 양성과 직업적 자립을 중시한 정책과는 달리, 빈곤과 사회적 곤란에 직면한 청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고, 빈곤의 대물림 차단과 조기 개입·포괄적 지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14) 일본의 실업부조제도에 해당하는 구직자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직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직업훈련 참가자는 월 10 만엔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요건으로는 일정한 소득제한(개인 월수입 8만엔 이하, 세대 월수입 30만엔 이하, 세대 금융자산 300만엔 이하)이 설정되어 있음(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you/kyushokusha_shien/index.html에서 2025년 9월 19일 인출).

⑤ 아베 정권기: 성장전략 속 청년정책(2012년~)

2012년 12월, 민주당의 3년 집권이 끝나고 자민당이 재집권하였다. 자민당 정권(아베 신조 총리)은 청년고용대책의 큰 틀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였다. 다만 2013년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인력부족의 기조로 전환되었고, 신규졸업자의 구인배율(2000년 0.99 -> 2013년 1.27)이 상승세로 돌아설 정도로 청년고용상황은 호전되었다(金崎, 2017: 33). 아베 정권의 청년정책은 아베노믹스를 핵심으로 하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인적자원의 시점에서 청년들의 커리어형성에 중점을 두었다(Song, 2018).

아베정권은 2013년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戰略)'을 발표하며,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여성·고령자의 활약 확대를 고용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하였다(內閣府, 2013). 이후 2014년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에서도 청년의 역할은 인구감소 사회에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축으로 강조되었다(內閣府, 2014). 2016년에는 '일본 1억층 활약 플랜'이 수립되면서, 청년고용안정과 소득향상을 포함한 결혼·출산 대책이 제시되었다(內閣府, 2016).

앞서 민주당 정권의 청년정책은 빈곤대책 중심이었다면, 자민당 아베 정권의 청년정책은 성장전략·인구정책과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즉, 청년정책은 독립된 정책 영역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노동인력감소 대응을 위한 전략의 일부로 추진되었다.

한편으로 2015년 일본정부는 청년고용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을 정비하였다. 청년고용촉진법은 블랙기업¹⁵⁾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 배경에는, 2010년대 이후 POSSE라는 청년단체가 블랙기업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고, 이를 미디어와 선거 과정에서 쟁점화한 사회운동의 영향도 작용하였다(今野, 2015).

청년고용촉진법의 내용은 ① 신규졸업자 채용 기업의 고용정보제공제도, ②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은 헬로워크에서 신입사원 구인공고를 받지 않는 구인불수리 제도, ③ 청년친화기업 인증제도(Youth Yell) 등이 담겨있다. 또한 법률에서는 취업내정취소 방지, 졸업 후 3년간의 신입채용의 지원자격 보장, 취업활동 과정의 갑질 방지 등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15) 일본에서 장시간 노동, 저임금, 법을 무시한 고용 관행, 파워하라스먼트(직장 내 괴롭힘) 등을 강요하는 기업을 지칭하며, 2000년대 IT기업 등을 중심으로 불안정한 청년고용, 청년과로사 문제 등이 발생하자 인터넷 커뮤니티(2채널 등)를 중심으로 유행했음.

⑥ 취업빙하기세대 지원정책의 강화(2019년~)

2010년대 이후, 전후 베이비붐세대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의 은퇴로 인한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청년고용은 점차 호전되었으나, 취업빙하기세대는 여전히 불안정 고용에 머물렀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빈곤층 전략을 우려하여, 2019년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9’에서 처음으로 취업빙하기세대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고, 내각관방실에 전담부서와 전국 플랫폼을 설치하였다. ‘취업빙하기세대 지원 행동계획 2019’에서는 약 100만명의 취업빙하기세대 중 정규직 30만명 달성을 목표로, 상담·교육훈련·아웃리치 등을 포함한 3년간 총 650억 엔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이후 1·2단계(2020~2024년)를 거쳐 2025년 4월 이시바내각에서는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경제교육의 제공과 주거지원이 포함된 새로운 취업빙하기세대지원프로그램(2025~2026년)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두 가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청년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중장년문제로 전환되고, 장차 노년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션, 헬로워크, 히키코모리지원 등의 사업에서 연령상한을 조정하여 중장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취업빙하기세대지원의 사업은 55세미만까지 적용하고 있다. 또한 취업빙하기세대의 노년빈곤을 우려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연령상한을 높더라도 지원대상의 고연령화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일본의 청년세대는 취업상황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연령보다는 특정한 세대와 계층의 문제로 접근하여 세부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堀, 2017: 141-142).

둘째, 일본의 청년문제는 점차 복합화되고 있다. 취업빙하기세대는 소위 ‘8050문제’(80대 부모와 50대 자녀)로 이어졌다. 취업빙하기세대 가운데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도 존재하므로, 이들에게는 취업 외에도 돌봄과 생활지원에 대한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부모의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부모의 연금에 의존해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부모가 부재할 경우 연금소득이 단절되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⑦ 어린이가정청의 출범과 어린이·청년정책의 일원화(2021년~)

2009년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 제정 이후, 일본은 어린이와 청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2년 6월 국회에서 ‘어린이가정청 설치법(こども家庭庁設置法)’과 ‘어린이기본법(こども基本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젊은이에 관한 정의, 정책목적, 정책추진체계는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어린이기본법’의 제정은 일본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다(末富, 2023). 일본은 1994년 유엔아동권리조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어린이의 권리와 포괄적 지원을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면서, 아동권리보장을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자민당의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린이행정의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 ‘어린이가정청’ 설치가 논의되었고,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를 이어받아 공식 의제로 채택하였다. 이처럼 어린이기본법의 제정과 어린이가정청의 설치는 시민단체와 정치인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다.

정부 관료들 또한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연령별 제도의 분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본 방침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22년 6월 국회에서 ‘어린이가정청 설치법’과 ‘어린이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23년 4월 1일 어린이가정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어린이기본법을 통해 일본 헌법 및 유엔 아동권리조약의 정신에 따라 모든 어린이·청년을 권리주체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어서 어린이가정청의 출범을 통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어린이·청년정책을 일원화하며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인생 전반기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을 통합적·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제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일본의 인생전반기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末富, 2023; 小倉, 2024).

(2) 일본의 청년정책 관련 법률

①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

2009년에 제정된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こ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¹⁶⁾은 프

16)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의 ‘와카모노(若者)’는 ‘젊은이’로 번역하였다. 법 제정 취지가 연령 제한을 없었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청소년에서 와카모노로 변경되었기 때문임. 다만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에만 ‘젊은이’로

리터, 니트, 히키코모리, 부등교(등교거부) 등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젊은이를 상징하여, 각 부처의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 종합적 지원체제의 정비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의 목적(제1조)은 “어린이·젊은이 육성지원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 및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젊은이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정비”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일본국 헌법 및 아동권리조약의 이념에 따라서, 어린이·젊은이가 건전한 성장을 이룩하고, 사회와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자립한 개인으로서 자아를 확립하고, 타인과 더불어 차세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되었다(제2조).

법률에서는 지원대상의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청년이 직면한 문제의 배경에는 유년기의 경험이나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육성과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기존에 사용한 ‘청소년’을 대신해서 ‘어린이·젊은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다만 법률의 기본계획인 어린이·젊은이비전(子ども・若者ビジョン)에서는 청년기를 30세까지, 포스트 청소년기를 40세까지 설정해두었다(内閣府, 2010).

어린이·젊은이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내각부의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본부(본부장:총리대신)가 설치가 규정되었지만, 2022년 어린이가정청의 출범으로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본부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어린이가정청의 어린이정책추진회의가 일본의 어린이·젊은이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한편 이 법에서는 니트·히키코모리 등 어려움을 가진 어린이·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지원 구축의 추진을 명시하였다. 그 정책수단으로서, 니트나 히키코모리 등 어린이·청년의 상담을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청년종합상담센터’가 설치되었다(제14조). ‘어린이·청년종합상담센터’는 자체적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하거나, 더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계기관을 소개하거나 어린이·청년지원지역협의회에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법률에는 지역 관련 기관 간의 협의체로 ‘어린이·청년지원지역협의회’도 명시되었다(제19조). 이 협의회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의 각 분야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久保田, 2009: 3).

번역하고, 다른 정책이나 사업에서 사용되는 와카모노는 편의상 ‘청년’으로 번역하였음.

그러나 ‘어린이·청년종합상담센터’와 ‘어린이·청년지원지역협의회’는 지자체의 노력의 무로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을 설치할 때 국가로부터 예산이나 인력이 보장되지 않고, 각 지자체 재량에 맡겨진다. 그 결과 지역에서는 인재와 자원의 부족, 담당 부서의 업무부담 증가, 그리고 노력의무 규정에 따른 법적구속력 약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岡部, 2019: 130-133).

한편 법률에서는 니트·히키코모리 등,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젊은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웃리치 실시도 명시되었다(제15조). 2024년 6월에는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이 개정되어 영 케어러 지원의 근거 법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개정 법률은 영 케어러를 “가족의 간호나 그 밖의 일상생활상의 돌봄을 과도하게 수행하는 어린이·젊은이”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명확히 하였다(제2조).

② 청년고용촉진법

2015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법’(정식명칭: 靑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은 블랙기업 문제와 청년층의 높은 이직률을 배경으로 마련되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블랙기업’ 담론은 시민단체와 청년단체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언론과 선거 쟁점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도 대응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청년들의 졸업 후 3년 이내 이직률이 약 30%¹⁷⁾에 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년들의 직장정착과 일자리 미스매칭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아베 정권의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日本再興戰略 改訂2014)’에서 처음으로 청년고용촉진법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2015년 9월 11일 국회에서 근로청소년 복지법(1970년 제정)이 개정되어, 청년고용촉진법이 성립되었다. 이 법에는 ‘직장정보의 적극적 제공’, 공공직업안정소의 ‘구인불수리규정(求人不受理規定)’, ‘청년친화기업(Youth Yell) 인증제도’ 등이 담겨져 있다.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의 목적으로 청년의 높은 이직률과 노동력 인구 감소를 배경으로, 적절한 직업선택지원과 직업능력 향상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청년들의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청년의 구직활동과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이미지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고 인식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직업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는 학교와

17) 2013년 신규 학졸자의 졸업 후 3년 이내 이직률은, 대학교 31.9%, 단기대학 등 41.7%, 고등학교 40.9%, 중학교 63.7%로 조사되었음(厚生労働省, 2013).

공공직업안정소 및 지자체 직업소개알선소에 '직장정보 제공의 의무화'(제13조·제14조)가 명시되어 있다. 청년고용촉진법 시행규칙에는 기업의 고용정보공개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집·채용 현황(최근 3년간의 신입 채용자 수와 이직자 수), △직업능력개발·향상과 관련된 노력(직원교육 연수실시 여부, 자기계발제도의 유무 등), △직장 내 정착을 위한 노력(월평균 소정 외 노동시간, 유급휴가 평균취득일수, 육아휴직 취득자 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직장환경 관련 정보를 학교, 공공 및 민간 직업소개소에 공개함으로써 각 기업의 이직률, 근로자의 경력개발, 일·생활 균형 보장 등 근로환경에 대해 기업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서는 청년고용이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하는 '청년친화기업 인증제도'의 도입(제15조~제17조), 청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잡 카드(Job Card)'(직무경력 등 직무기록서)의 보급 촉진(제21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블랙기업 방지를 목적으로 법률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대상의 노동권 교육이나 노동권 강화보다는 고용환경 개선을 고용정보 공개를 통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에 맡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블랙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헬로워크의 '구인불수리'(제10조) 조항을 근거로, 일정한 노동관계 법령(잔업수당 미지급, 성희롱, 노동시간 규제 위반 등)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신입직원 구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③ 지역대학·산업창생법

2018년에 제정된 '지역대학·산업창생법(地域大学·産業創生法)'(정식명칭:地域における大学の振興及び若者の雇用機会の創出による若者の修学及び就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은,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발족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역활성화 정책인 '지방창생(地方創生)'의 일환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일본은 급속한 저출산의 진행과 지방청년인구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험이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법률은 지역산업과 인구정착을 견인하는 핵심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설정하고, 지방대학을 매개로 한 청년의 학업·취업·정착을 지원하는 환경을 정비하여 지방소멸문제를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森, 2019).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대학·산업창생법'의 목적(제1조)은, 급속한 저출산과 지방 청년 인구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

로 한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진흥과 청년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통해 청년의 학업과 취업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활력의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기본이념(제2조)에서는 이러한 정책추진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간의 긴밀한 연계와 더불어 기업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이는 청년에게 매력적인 학업환경과 안정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하며, 나아가 '마을·사람·일 창생법'(2014년 제정)의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대학·산업창업법은 지방대학의 진흥과 청년고용촉진을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 '반짝이는 지방대학 육성' 사업으로 대표되는 교부금사업(지방대학·지역산업창업교부금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내각총리대신이 정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 핵심산업의 진흥 및 전문인재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학 및 지역 기업과 협의하기 위해 지역대학 진흥·청년고용창출추진회의를 조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예산으로 93억엔이 배정되었다(内閣府, 2024).

둘째, 수도권대학 정원억제이다. 법률은 특정 지역, 특히 학생이 이미 집중되어있는 도쿄 23구를 대상으로, 10년간 대학 학부·학과의 수용정원 증원을 금지하는 시한부 조치를 두었다. 다만, 재건축 방식의 학부 신설, 유학생 및 사회인, 야간·통신 교육과정 설치, 이미 투자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전문직 대학의 설립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는 수도권 대학정원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지역대학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제13조).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본 정부에서도 디지털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4월부터는 도쿄 23구 내 대학정원 증가 억제 규제의 예외조치로서 정보계 학부·학과에 한정하여 정원 증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다만, 정원증가연도부터 3년 후에 원래 정원으로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23).

셋째, 지역청년 고용기회 창출에 관한 조치이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 제공, 전문인재의 지역 유입 촉진,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책은 도쿄집중완화를 목표로 한 다른 정책들과 결합되어 추진하고 있다(제15조).

④ 어린이기본법

2009년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 제정 이후, 일본은 아동과 젊은이를 셋트로 지원하는 정책체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2년 ‘어린이기본법’ 제정과 ‘어린이가정청’의 출범은 생애전반기 정책에도 큰 변환을 가져왔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어린이의 권리보장을 위한 포괄적 법률 제정과 어린이전담 행정조직 창설 필요성이 급부상하면서, 자민당 젊은 의원을 중심으로 어린이기본법의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론 수렴과 정책 제안이 이어지고,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도 어린이가정청의 창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치인과 정당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행정부 차원에서도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등으로 분산된 기존 어린이·청년 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되었고, 유식자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서 정부가 법안을 발의했다. 2022년 6월 어린이가정청설치법이 제정되었으며, 동시에 어린이기본법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제정되었다.

어린이기본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기본법의 목적(제1조)은 일본 헌법 및 유엔 아동권리조약의 정신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는 어린이라도 권리가 보장되며, 장래에 걸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다.

어린이기본법의 기본이념(제3조)으로는, 어린이시책을 추진할 때 아동권리조약에 규정된 4가지 일반원칙(차별의 금지, 어린이의 최선이익, 생명·생존·발달에 대한 권리, 어린이의 의견존중)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제3조 제5항에서는 아동의 양육에 관해서는 가정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으며, 양육 및 보육 환경의 정비가 명기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가족주의적 색채가 남아 있으며, 보호자와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지적도 있다(末富, 2023: 24).

어린이기본법은 어린이(こども)를 “심신(心身)의 발달과정에 있는 자”로 정의한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어린이시책(こども施策)은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환경의 정비, 더 나아가 취업·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양육과 관련된 각 단계에

대응하여 일체적이고 단절 없이 실시하는 시책”을 의미한다(제2조). 여기서 ‘こども(코도모)’는 기존 법률에서 ‘子ども’와 발음은 동일하나 표기를 달리했다. 기존의 ‘子ども’는 유엔 아동권리조약에 근거하는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어린이기본법의 ‘こども’는 ‘심신의 발달과정에 있는 자’로 정의하여 18세와 20세처럼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령구분을 없앴다. 이는 생애전반기를 포괄하는 의미를 새롭게 담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김기현, 2025).

어린이기본법은 이러한 어린이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4조·제5조). 국가는 어린이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기본계획인 ‘어린이대강’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대강을 감안하여 어린이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기본법은 특별기구로서 아동정책추진회의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회의는 어린이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회의의 의장은 내각총리대신이 맡으며, 구성원은 각 국무대신으로 이루어진다. 회의에서는 ‘어린이대강’의 작성은 물론, 어린이시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심의 및 그 실행의 추진, 나아가 관계 행정기관 상호 간의 조정을 수행한다(제17조~제18조). 더 나아가, 동 회의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9조).

어린이기본법은 아동·젊은이에 관한 시책이나 사무 등을 종합적이고 일원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2009년 제정),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2003년 제정), 어린이빈곤대책법(2014년 제정) 등에 규정된 연차보고서·대강·특별기구 등을 제도적으로 통합했으며, 매년 국회에 어린이시책의 현황을 보고하게 규정되어 있다(제9조). 다만 각각의 법률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연차보고서·대강 및 특별기구만 통합했다(그림 III-4 참조).

법률	연차보고서(백서 등)	대강	특별기구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	소자화사회대책백서	소자화사회대책대강	소자화사회대책회의
어린이·젊은이육성 지원추진법	어린이·청년백서	어린이·청년육성지원 추진대강	어린이·청년육성지원 추진본부
어린이빈곤대책법	어린이빈곤상황 및 어린이빈곤대책의 실시상황	어린이빈곤대책대강	어린이빈곤대책회의

어린이기본법
연차보고서 일원화
어린이대강 일원화
어린이정책추진회의
일원화

* 출처: 上田(2022:33)에서 수정함.

그림 III-4. 어린이기본법 이후 제도의 변화

어린이기본법에서는 아동권리조약에 규정된 어린이의 의견표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시책을 수립·실시·평가할 때 해당 시책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로서, 아동가정청에서는 어린이·젊은이들의 참여사업으로 ‘어린이·청년★의견플러스’(4절참조)를 실시하고 있다(小倉, 2024: 78).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린이기본법은 어린이·젊은이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어린이·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참여제도가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린이·젊은이의 포괄적 지원을 명시한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과 비교하더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어린이와 젊은이가 단순한 지원·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어린이기본법의 제정과 어린이가정청의 출범을 계기로 아동, 청소년, 청년을 연령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어린이기본법과 어린이가정청의 출범은 아동권리보장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청년정책은 부차적으로 다루어졌다. 어린이기본법의 기본계획인 ‘어린이대강(こども大綱)’은 생애단계를 ① 출생 전·영유아기, ② 학령기·사춘기, ③ 청년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년기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시기’로 규정되며, 진학·취업·결혼·상담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으나(こども家庭庁, 2023: 30-32), 청년정

책 자체는 뚜렷한 진전이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어린이가정청의 설립과정에 참여한 미야모토 미치코(방송대학 명예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행정관료들은 보육·양육정책에만 집중했으며, 학교교육 이후 청년에 대한 지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宮本, 2023: 229-230). 이처럼 어린이가정청의 설립과정에서는 청년문제가 아동문제와 소자화대책의 연장선에서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직업훈련·주거·생활지원 등 청년기의 고유 과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었다(野村, 2023: 203).

2) 청년정책 행정부서

(1) 어린이가정청

2023년 4월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이 출범하면서, 일본은 인생전반기에 해당하는 어린이·청소년·청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형성되었다. 기존 내각부 산하의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본부가 각 행정부처의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가정청 역시 내각부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아동·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본부에 비해서, 어린이가정청은 실질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있으며, 내각부 외국에 설치되어 일정한 독립성을 갖고 있다(그림 III-5 참조).

어린이가정청은 내각총리대신의 직속기관이며 그 소관사무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중에서 어린이정책담당대신이 관장한다. 특명담당대신은 한국의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국무대신으로 보임되며, 내각총리대신의 지시에 따라 국정의 중요한 정책이나 여러 부처에 걸친 과제를 대상으로 기획과 입안, 종합적인 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명담당대신은 내각부설치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요구, 권고, 권고에 따른 조치보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내각총리 대신에게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명담당대신은 경제재정정책, 과학기술정책, 지방창생, 방재 등 다양한 분야의 사무를 담당하며, 통상적으로 복수의 정책영역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2025년 현재 어린이정책담당대신은 소자화대책, 청년활약, 남녀공동참획, 공생·공조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다른 특명담당대신들과 달리, 어린이정책은 어린이가정청이라는 특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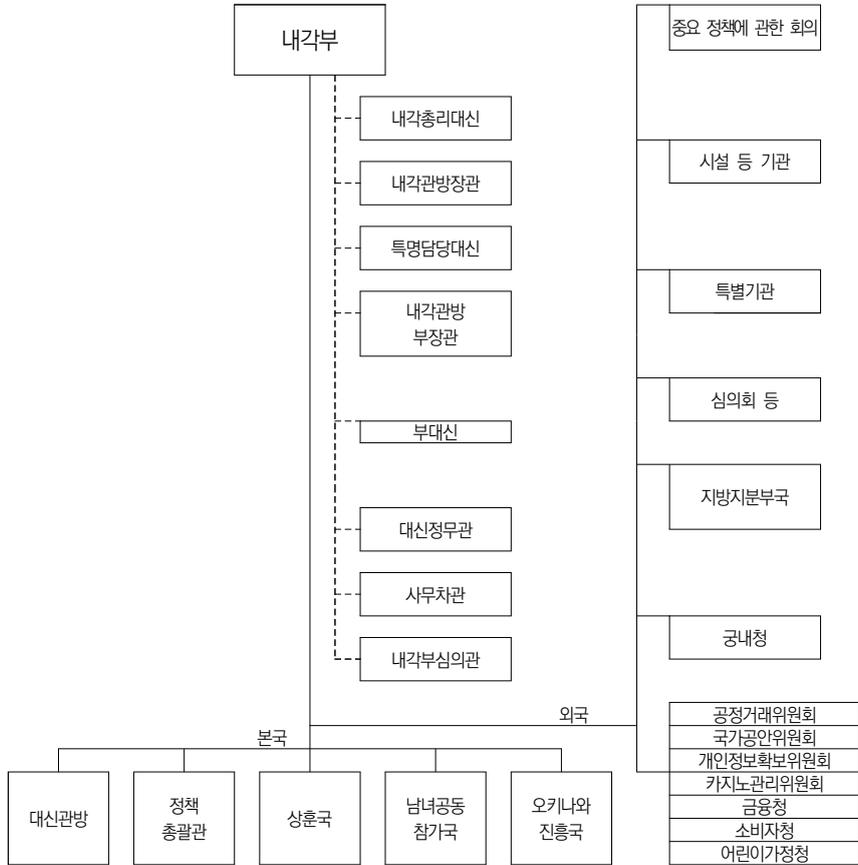
조직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小倉, 2024: 28).

한편 어린이가정청의 장관(長官)은 법률이 규정한 사무범위 내에서 지휘·감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책임자이며, 장관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 복지증진, 보건향상, 그 밖의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의 실시 등이 주요 임무로 규정되어 있다(어린이가정청설치법 제3조). 다음 <표 III-5>는 어린이가정청의 소관사무를 정리하였다.

표 III-5. 어린이가정청의 소관사무

소관사무	구체적 사업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 지원 및 가정의 육아지원에 관한 사무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보육소·인정어린이원·유치원 공통의 시설형 급부사업, 가정영·육아 지원, 아동보호시설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방과 후 학동클럽, 육아가정의 상담·교류·일시보호 등을 담당하는 지역시설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안전안심한 생활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무	어린이사고방지, 성피해방지, 비행방지 등
보건향상에 관한 사무	성장육성의료, 영유아건강검진, 아동발달지원·장애아동 지원 등
어린이 권리와 이익의 옹호에 관한 사무	아동학대방지대책, 학교 밖 괴롭힘 방지를 위한 자자체의 체제 정비, 아동권리조약, 어린이 참여기구 등
기타: 각 부처의 조정사무	소사회대책,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 어린이빈곤대책 등

* 출처: 小倉(2024: 28-29)를 참고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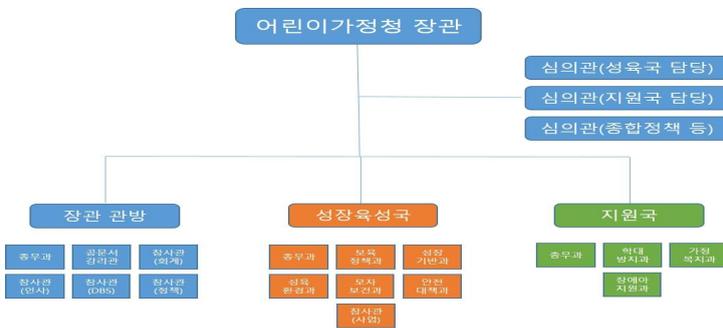
* 출처: 내각부(内閣府) 홈페이지(<http://www.cao.go.jp/>). 김기현(2021: 25)을 참고하여 재작성.

그림 Ⅲ-5. 일본의 청년정책 추진 중앙조직

어린이가정청이 어린이·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사령탑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어린이가정청 산하에 총리대신이 의장으로 참석하는 ‘어린이정책 추진회의(こども政策推進会議)’를 설치하여, 각 행정부처의 어린이·청년 관련 정책을 종합적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어린이가정청 내에는 중요정책을 심의 하기 위한 ‘어린이가정청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심의회는 내각총리대신 또는 어린이가정청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아동·양육지원법 시행, 아동 및 모성의 복지증진, 아동 및 모성의 보건향상, 아동의 권리·이익보호 등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한다(제6조).

어린이가정청의 조직은 크게 세 개의 부서로 나누어진다. 첫째, 장관관방은 정책기획과 조정, 예산편성, 총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우리나라의 기획조정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성장육성국은 실제 정책을 담당하는 중심 부서로서 보육정책, 성장기반 마련, 아동의 건강·안전정책 등 아동이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셋째, 지원국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와 가정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아동학대, 어린이빈곤대책, 한부모가정지원, 장애아동지원 등 직접적인 보호·지원을 담당한다(그림 III-6 참조). 어린이가정청의 정원은 현재 450명이며, 본부 350명(장관관방: 97명, 어린이성육국: 160명, 어린이지원국: 93명), 시설기관인 국립아동자립지원시설 등에 80명이 있다¹⁸⁾.

어린이가정청의 예산은 7.3조엔(2025년도)이며, 그중에서 보육소 및 방과후 아동 클럽의 운영비 등 2조 4600억엔, 아동수당 2조 1,700억엔, 육아휴직 등 급부는 1조 600억엔, 장애아동지원·학대방지·한부모가정지원 등 8,500억엔, 대학의 수업료감면 등 6,500억엔, 임신부의 급부지원(10만엔) 800억엔, 관리비·조사연구비 등 600억엔이다. 어린이가정청의 예산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아동에 대한 방과 후 교육지원 및 아동수당 같은 소자화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그림 III-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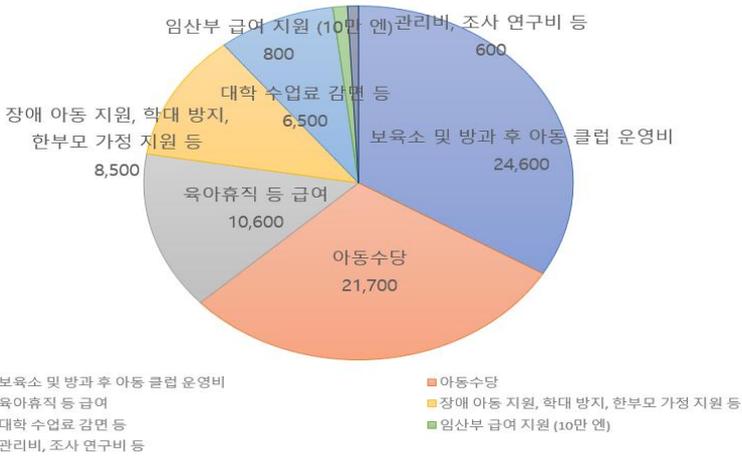


* 출처: 김기현(2025)을 참조하였음.

그림 III-6. 어린이가정청의 조직도

18)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 홈페이지,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7e61aa5c-b18a-4711-85c4-c28d6822c7eb/4fecaf46/20250328_about_30.pdf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단위: 억엔)



* 출처: こども家庭庁 (2024).「令和7年度こども家庭庁当初予算案の全体像」, p.1.에서 참조하였음.

그림 III-7. 2025년도 어린이가정청 예산

(2) 내각부 청년국제교류

내각부 정책총괄관(공생·공조 담당) 소속 참사관이 청년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한다. 참사관은 국장과 과장급 사이에 중간관리자이며, 청년국제교류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에서 활약할 차세대 글로벌 리더의 육성을 목적을 세계 각국의 청년과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파견·초청과 선박을 통한 다국간 교류 등 5개 국제청년교류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 8천명이 넘는 청년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성과를 환원하고 있다(内閣府, 2025). 2025년 예산은 총 13억 4600만엔을 배정했으며 구체적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 사업은 일본과 ASEAN 국가의 청년이 선내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토론, 워크숍, 문화 활동 등을 수행하고, 각국을 방문하여 현지 청년과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이해와 국제친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하게 '세계 청년의 배' 사업은 일본 청년과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이 선상에서 집중적인 토론과 문화교류를 실시하여 국경을 초월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일본 내 여러

지역에 기향하여 일본 청년과 외국 청년이 협력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제적 협력 경험과 실천력을 겸비한 지도자형 인재의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청년 상호교류사업’은 세계적 과제해결을 위한 청년 역량강화와 국가 간 우호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 GX) 등 글로벌 의제를 설정하여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을 육성하는 ‘국제사회 청년육성사업’,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중 청년우호교류사업’,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한·일 청년 우호교류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은 양국 청년 간 상호이해와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확대에 기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내각관방실

2019년 6월 일본정부에서는 ‘취업빙하기세대지원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같은 해 7월 내각관방실¹⁹⁾에 취업빙하기세대지원추진실을 설치했다. 이 조직은 내각총리대신이 의장으로 참석하는 ‘취업빙하기세대지원의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회의’에 실무를 맡고 있다. 취업빙하기세대지원추진실에서는 ‘취업빙하기세대지원 행동계획(취업빙하기세대지원프로그램)’을 계획을 작성하는 한편, 취업빙하기세대지원실에서는 공식적인 SNS를 운영하며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4)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은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2001년 정부 부처 통합 이전 노동성 시절부터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과 여가활동지원 등 청소년정책을 담당해왔다. 현재는 인재개발총괄관의 청년·커리어형성지원담당참사관이 청년고용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인재개발총괄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정책을 실시하는 부서이며,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근로자, 외국인, 개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직업 훈련, 기능검정 등을 실시한다. 청년·커리어형성지원담당참사관실에서는 주로 청년층

19) 내각관방실과 내각부는 총리의 직속조직이지만, 내각관방실은 총리를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비서실 조직에 가까우며, 내각부는 범정부적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조직임.

과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근로청소년의 복직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직업안정기관, 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서 학생 및 졸업자에게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전역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지역청년서포스테이션도 청년·커리어형성지원 담당 참사관실의 관할 아래 운영되고 있다.

(5)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은 교육정책을 총괄하며, 주로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이 대학과 고등전문학교 정책을 관장하기 때문에 청년층에 해당하는 대학생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장학금지원이나 복귀후생, 생활지원, 교육지도 같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운영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도 고등교육국의 관할이다. 한편, 종합교육정책국은 평생학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을 관장하며, 지역 차원의 교육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표 III-6. 일본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전담부서 현황 (2025년 9월 1일 기준)

구분	총괄조정기구	행정체계	
		행정부서 명칭	중간지원조직
어린이가정청	어린이정책추진회의 (의장:내각총리대신)	• 장관관방, 성장육성국, 지원국(1관방·2국체제)	• 어린이·청년지원지역협의회 / 어린이·청년종합상담센터 등
내각관방	관계각료회의 (의장:내각총리대신)	• 취업빙하기세대 • 지원추진실	
내각부 정책총괄관 (공생·공조담당)	-	• 참사관 • (청년국제교류)	-
후생노동성	-	• 인재개발총괄관 • 청년·캐리어형성지원 담당참사관	• 지역청년서포스테이션 • 헬로워크 •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 • 자립상담지원기관
문부과학성	-	• 종합교육정책국 • 고등교육국 등	• 학교와 지자체를 통한 지원

* 출처: 내각부 홈페이지(<https://www.cao.go.jp/>), 내각관방 홈페이지(<https://www.cas.go.jp/>), 어린이가정청 홈페이지(<https://www.cfa.go.jp/>),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s://www.mhlw.go.jp/index.html>), 문부과 학성 홈페이지(<https://www.mext.go.jp/>)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3) 청년정책 전달체계

(1) 내각부 청년정책 지역전달체계

일본의 청년정책전달체계로는 내각부 아동가정청이 관장하는 어린이·청년지원지역협의회와 어린이·청년종합상담센터가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청년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션, 신졸응원헬로워크, 와카모노헬로워크, 잡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히키코모리지원을 위해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표Ⅲ-3).

우선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어린이·청년지원지역협의회’와 ‘어린이·청년종합상담센터’를 살펴보겠다. ‘어린이·청년지원지역협의회’는 지역에서 어린이·청년 지원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협의체이다(제19조). 지원대상은 “수학 및 취업을 모두 하지 않고 있는 자,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어린이·젊은이”로 규정되어 있으며(제15조), 여기에는 청년무업자뿐만 아니라 히키코모리, 부등교 등 다양한 어려움을 지닌 어린이·청년도 포함된다.

어린이·청년 지원은 각 행정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상황 속에서 2009년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취지는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종합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즉, 지역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젊은이를 대상으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횡단적으로 기획·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어린이·청년지원지역협의회는 지역의 서비스담당자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각 기관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상호지원을 도모한다. 다만, 복지·고용 등 개별 분야의 담당 기관이나 기존 네트워크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은 협의회가 다루지 않으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こども家庭庁, 2024).

어린이·청년종합상담센터는 부등교, 히키코모리, 청년무업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내 관련 기관을 연결·소개하는 관문(gateway) 역할을 담당한다. 즉, 어린이·청년종합상담센터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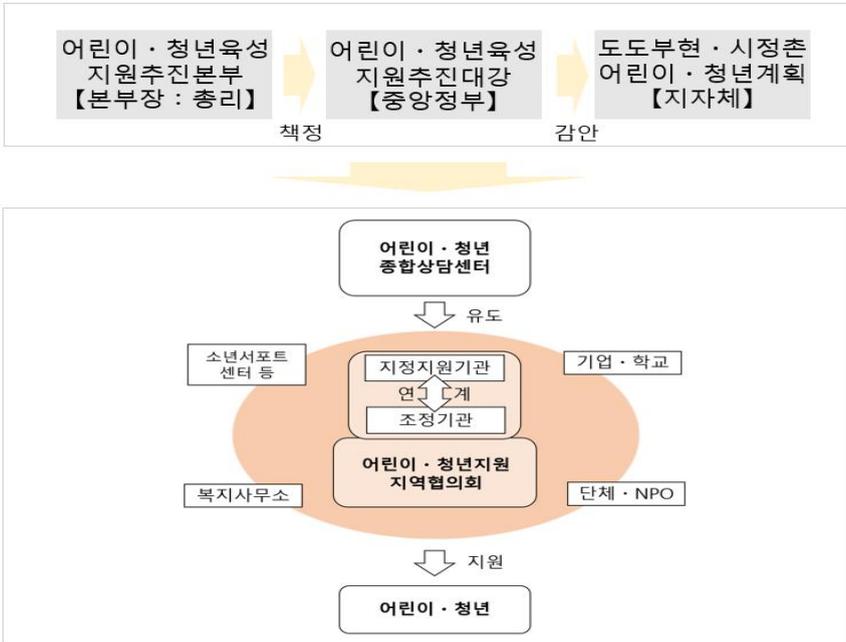
하지만 어린이·청년지원지역협의회와 어린이·청년종합상담센터는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기초지자체(시정촌)에서 두 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많다. 2024년 기준 어린이·청년지원지역협의회는 전국 142곳(도도부현 42, 정령시 15곳, 시정촌 85곳), 어린이·청년종합상담센터는 전국 122곳(도도부현 21곳, 정령시 11곳, 시정촌 90곳)에 설치되어 있다.

표 III-7. 일본의 청년정책 전달기관 수

구분 (기준연도·전체 지자체 수)		도도부현 (47개)	정령지정도시 (20개)	시정촌 (1,718개)	합계
어린이 가정청	어린이·청년지원 지역협의회(2024년)	42	15	85	142
	어린이·청년종합 상담센터(2024년)	21	11	90	122
후생 노동성	히키코모리지원센터 (2024년)	47	20	110	167
	지역청년서포스테이션 (2025년)	-	-	179	179
	신졸응원헬로워크 (2025년)	56 (지역별 중 복설치)	-	-	56
	와카모노헬로워크 (2025년)	-	-	21	21
	잡카페 (2025년)	46 (지역별 중 복설치)	-	-	46

* 출처: 어린이가정청 홈페이지, <https://www.cfa.go.jp/policies/youth/kyougikai-soudancenter>,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jinzaikaihatsu/saposute.html에서 2025년 9월 11일 인출.

* 주: 지역청년서포스테이션, 신졸응원헬로워크, 와카모노헬로워크, 잡카페는 지자체별로 구분된 데이터가 부재하여 합계로 산출하였음. 그 중 와카모노헬로워크는 전국 21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에 있는 헬로워크(544곳) 내에도 '와카모노지원코너' 및 '와카모노지원창구'의 형태로 총 200곳이 운영되고 있음.



* 출처: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927443/www8.cao.go.jp/youth/wakugumi.htm>에서 2025년 9월 11일 인출.

그림 Ⅲ-8.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 개요

(2) 후생노동성 청년고용서비스전달체계

일본에서는 ‘1인1사제(1人1社制)’로 불리는 학교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고용 관행이 존재하며, 이는 학교와 기업이 학생의 취업을 매년 알선하는 과정을 통해 일정한 실적 관계를 형성해왔다. 즉, 학생은 학교라는 집단을 매개로 기업이라는 노동시장으로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堀, 2017).

일본에서는 취직내정율이라는 통계를 통해서, 졸업 전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취업이 결정된 학생 비율을 파악하고 있다. <그림 Ⅲ-9>는 일본의 취직내정율로서, 2024년 졸업생의 90% 이상이 취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초에는 취직내정율이 하락했지만 2010년대 이후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청년 고용상황은 다시 호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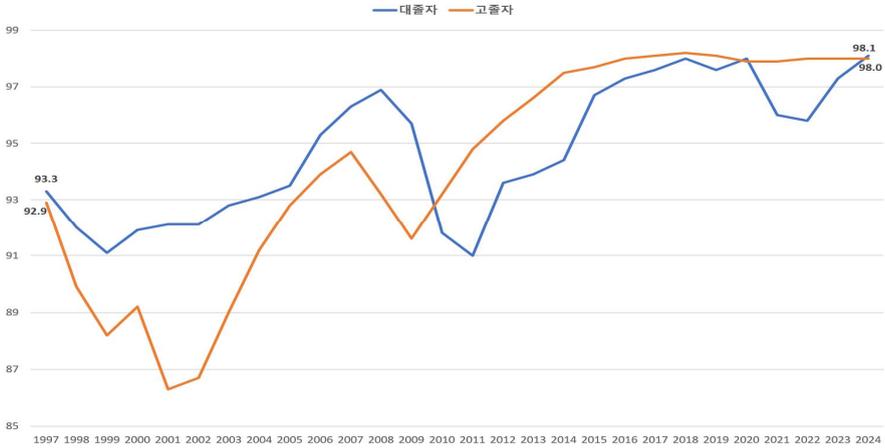
한국의 청년들이 졸업 후 절반 이상이 취업하지 못한 채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일본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성인이행기 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성인이행기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神林, 2017; 堀, 2017; 小熊, 2019). 그러나 이러한 이행기 구조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프리터, 니트 등 일부 이탈한 청년들의 문제가 드러나자, 청년 개인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이 정비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션, 한국의 고용센터에 해당하는 헬로워크(Hello Work) 내의 신졸자 및 기졸자(3년 이내) 대상으로 지원하는 신졸응원헬로워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와카모노헬로워크, 그리고 청년에게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잡카페가 있다.

동시에 일본은 학교와 기업이라는 집단적 기반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해왔다. 고교졸업자의 경우 학교와 연계한 커리어교육과 헬로워크를 통해 취업정보공유와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은 취업지원 내비게이터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취업활동에서 직장정착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교육정책과 노동정책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추진되었으나 청년정책은 이러한 간극을 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堀, 2017: 142-143). 예를 들어, 2003년 청년자립·도전플랜 이후 커리어교육이 실시되면서 고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 기업간의 연계를 통해서 정보공유, 학생들의 직장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内閣府, 2022). 또한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은 매년 학교·지역·산업계의 연계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커리어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커리어교육 추진 연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학교·지역사회·산업계가 협력하여 실시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커리어교육추진연계표창(キャリア教育推進連携表彰)²⁰⁾’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청년고용촉진법의 제정 이후, 기업은 자사의 고용환경정보를 학교와 공공·민간 직업알선소에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청년정책은 학교교육 단계에서 청년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갖는 한편, 비정규직·니트·실업 등 청년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취업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김기현, 2021: 28-29).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청년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을 살펴본다.

20) 커리어교육의 구체적 사례는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経産省(<https://www.meti.go.jp/policy/economy/jinzai/career-education/award.html>)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 출처: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index.htm>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취직내정율(=취직내정자/취직희망자*100)은 다음연도 신규졸업예정자 중 특정한 시점(고졸자의 조사실시는 10월·12월·3월, 대졸자의 조사실시는 10월·12월·2월·4월)에서 취직이 결정된 학생의 비율임. 본 통계는 고졸자 2025년 3월, 대졸자는 2025년 4월 기준임.

그림 III-9. 일본의 취직내정율 추이

4) 청년정책 대표사업

(1) 청년고용서비스사업

① 지역청년서포스테이션

2000년대초 당시 청년니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후생노동성은 기존 근로청소년홈을 대체하며 지역청년서포스테이션사업(이하: 지역서포)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전국 25곳에서 출발했으며, 각 도도부현마다 최소 1곳 이상 설치가 규정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2025년 4월 현재 전국 179곳에서 후생노동성의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²¹⁾.

지역서포는 주로 15세에서 49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니트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적 자립을 지원한다. 커리어컨설턴트 등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상담과 외부 기관과의 연계 지원이 제공되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임상심리사의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단기·장기·아웃리치로 구분되는데, 단기프로그램으로

21)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jinzaikaihatsu/saposute.html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는 커뮤니케이션 강좌, 직장체험, 비즈니스매너강좌, 취업세미나 등이 있으며, 장기프로그램은 합숙을 기반으로 생활지원, 직장실습, 자격증 교육을 통해 사회성 및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적합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장기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과거에는 최대 6개월 과정이었으나 현재는 2개월로 축소되었다.

지역서포는 기관 방문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는 아웃리치도 실시하고 있다. 아웃리치는 직접 이용하는데 불안하거나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서포의 직원이 직접 학교나 가정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지만 일부 심리상담이나 실비가 필요한 과정은 유료이며, 직접적인 취업알선은 실시하지 않지만 관련 단체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지역서포의 총이용건수는 약 49만 5천건(상담 건수와 세미나 이용자 수 합계)에 달하며, 신규등록자 대비 취업자 비율은 73.7%로, 약 1만 3천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²²⁾.

② 신졸응원헬로워크

신졸응원헬로워크(新卒応援ハローワーク)는 1976년 노동성이 설치한 학생직업센터를 전신으로 하며, 대학 및 전문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과 지원을 담당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학생들의 취업상황이 악화되자, 2010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025년 기준 전국 56곳에 설치되어 각 도도부현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운영되고 있다.

이 기관은 대학원,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의 졸업예정자와 졸업 후 3년 이내의 기졸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특히 기업 인사·노무 경험자를 채용한 ‘취직지원 내비게이터’를 통해 전문적인 직업상담을 제공하며, 구직준비상담, 지원서류작성, 면접 대비, 취업세미나, 직업훈련 안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업 후에는 직장정착을 돕는 사후 지원과 임상심리사에 의한 심리상담도 병행한다. 또한 학교담당제를 통해 각 학교의 수요에 맞춘 상담과 세미나를 출장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한편, 의사소통 장애가 의심되는 청년들의 이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김문길, 2024: 9). 2023년도 기준,

22) 지역청년서포스테이션 홈페이지, <https://saposute-net.mhlw.go.jp>에서 2025년 9월 21일 인출.

누적방문자는 28만 3천명이며, 이 가운데 정규직 취업자는 8만 1천명으로 집계되었다(후생노동성, 2025: 5).

③ 와카모노헬로워크

와카모노헬로워크(わかものハローワーク)는 프리터 등 불안정고용 상태가 장기화된 35세 미만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2025년 현재 전국에 21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헬로워크 내에도 '와카모노지원코너' 및 '와카모노지원창구'의 형태로 약 200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기관은 비정규직 청년의 정규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자제 직업상담'을 실시하여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구직과정에서의 과제를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필요할 경우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와 연계한 심리상담도 병행한다. 또한 비즈니스매너, 서류작성, 면접대비 세미나 및 그룹워크, 직업훈련(별칭: 하로 트레이닝), 구인정보제공, 기업설명회 등을 운영하며, 지방이주 취업상담(U·I·J턴 취업)²³⁾도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 이후에도 직장적응, 인간관계,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이른바 블랙기업 문제 등에 대한 상담과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직장 정착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3년 기준 신규등록자는 약 19만 5천명이며, 이 가운데 정규직으로 취업한 인원은 약 5만 3천명으로 집계되었다(厚生労働省, 2025: 5).

④ 잡카페(Job Café)

잡카페는 2003년 청년자립도전·자립플랜의 일환으로 설치된 청년지원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 다양한 기관의 청년 고용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청년에게 제공하고 있다.

잡카페에서는 취업세미나, 직장체험, 상담·카운슬링, 직업소개 등 다양한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며, 전국 46개 도도부현(주로 현청 소재지, 일부지역은 복수 설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헬로워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또한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23) 「U턴」은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일단 도심에서 근무한 뒤,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함. 「I턴」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취업하거나 이주하는 것을 말함. 「J턴」은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한번 도심에서 일한 후, 고향이 아닌 또 다른 지방으로 이주해 일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을 묶어서 「U·I·J턴」이라고 부름(후생노동성 와카모노헬로워크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ite/bunya/0000181329.html>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청년과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다층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름처럼 ‘카페’와 같이 친근하고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특징이다

(2) 히키코모리지원사업

① 히키코모리 지원사업의 배경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는 1990년대 이후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부등교(등교거부) 문제와 연결되어 정신의학적 문제나 가족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8년 사이토 타마키(齋藤環)의 저서 ‘사회적 히키코모리’의 출간을 계기로 ‘히키코모리’ 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사이토는 히키코모리가 병명이 아니라 정신건강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신의학적 개입을 통해서 극복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적 건강문제에 기인한 ‘히키코모리’와 사회적 관계로부터 이탈한 ‘사회적 히키코모리’를 구분하였다(齋藤環, 1998). 한편 2000년대 초반 닛트 담론이 부상하면서 히키코모리는 단순한 개인·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과도 연결되는 공공정책의 과제로 인식되었다(堀口, 2013: 224).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0년대 이후 일본정부도 히키코모리는 정신보건복지의 대상을 설정하고 지역의 상담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부등교·히키코모리 대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2000년 ‘지역정신보건활동 개입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보건소·정신보건복지센터 등의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厚生労働省, 2003)을 작성했다.

2009년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 제정을 계기로 히키코모리 지원은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 차원의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이후 2018년 ‘히키코모리 서포트사업’ 개시, 2022년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의 기초지자체 설치, 2024년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의 시행으로 지원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히키코모리 정의도 변화하였는데, 2003년 가이드라인에서는 “히키코모리는 10·20대 청년에 한정하여, 사회적 참여가 위축되어 학업이나 취업 등 가정 외 활동을 장기간 상실한 상태”로 정의하며 정신보건 과제로 인식되었다. 201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6개월 이상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집에 머무는 상태”로 규정되었으나, 2025년 히키코모리 지원핸드북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거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재정의되었다(표Ⅲ-8 참조).

이러한 정의의 변화는 히키코모리를 청년 문제나 특정 연령층에 국한하지 않고, 생애 전반에 걸친 보편적 문제로 확장하여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히키코모리는 아동·청소년 문제에서 청년을 거쳐 중장년층에까지 확대된 사회문제로 재인식되었다. 특히 장기화·고연령화 현상 속에서 ‘8050문제’와 같은 복합적 과제가 부각되면서 기존 분절적 서비스전달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의 정책은 연령이나 직업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와 가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8. 후생노동성 히키코모리 정의의 변천

구분	정의
후생노동성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키코모리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참여가 위축되고, 학업이나 취업 등 가정 외 활동을 장기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함 • 정신보건과제로서 인식 • 연령제한(10·20대 한정)
후생노동성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요인의 결과로 사회적 참가(학업, 취업, 가족 외 교류 등)를 회피함 •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집에 머물러 있는 상태 • 정신보건·복지·의료의 지원대상 • 광범위한 연령층
후생노동성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어려움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 -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교류가 제한적인 상태 - 지원이 필요한 상태(스스로 지원을 요청하지 못 하는 사례도 포함) • 지원대상: 본인 및 그 가족(세대) • 히키코모리 상태의 기간 및 연령은 제한하지 않음

* 출처: 厚生労働省 (2003, 2010, 2025)에서 인용.

② 히키코모리지원사업의 내용

후생노동성의 히키코모리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지원과 홍보를 담당하며, 2024년부터 포털사이트 ‘히키코모리 VOICESTATION’을 운영하여 기본정보, 상담안내, 당사자 및 경험자의 사례를 사회에 전달하고 있다(그림 III-10). 또한 인재양성 연수사업을 통해 지역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ひきこもりVOICE STATION

<https://hikikomori-voice-station.mhlw.go.jp/>

高橋みなみさんとの対談動画、
当事者の声などを掲載



その他Youtubeでは、「全国キャラバン」もアーカイブ配信
<https://www.youtube.com/@voicestation4467/videos>

* 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hikikomori/index.html에서 2025년 8월 20일 인출.

그림 III-10. 히키코모리 VOICE STATION 홈페이지

히키코모리 지원을 위한 지역전달체계는 후생노동성의 보조금과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며,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사업, 히키코모리 지원스테이션 사업, 히키코모리 서포트사업으로 구분된다(그림 III-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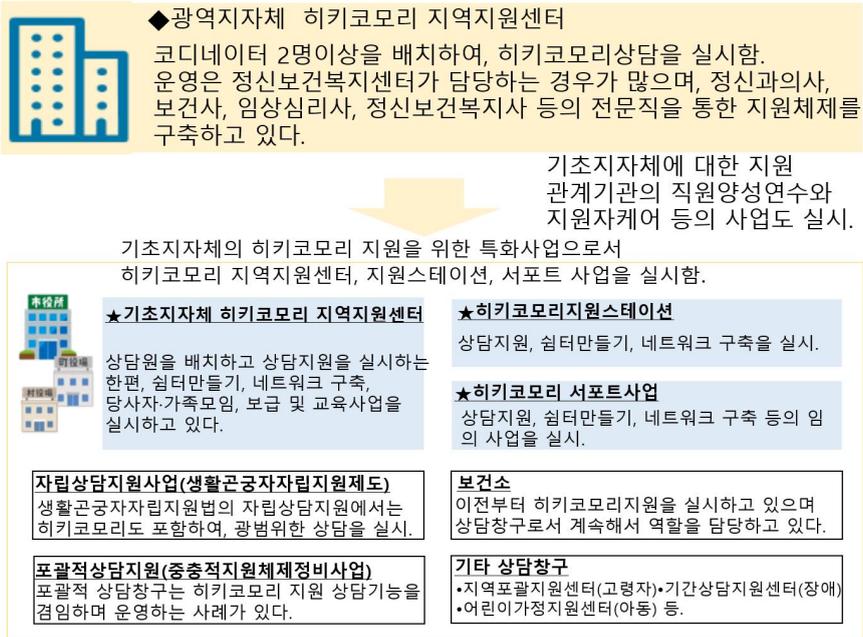
먼저,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사업은 2009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NPO 등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18년 모든 도도부현(47곳)과 정령지정도시(20곳)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2022년부터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위해 시정촌 단위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 38개 시정촌에서 운영하고 있다²⁴⁾.

다음으로, 히키코모리 지원스테이션사업과 서포트사업은 2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히키코모리 지원스테이션 사업은 2022년 도입된 필수사업으로, 2024년 현재 110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각 기관에 히키코모리 지원코디네이터(최소 1명 이상)를 배치하여 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조기개입을 도모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히키코모리 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하며, 당사자를 위한 쉼터 제공, 넷

24)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hikikomori/index.html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임의사업으로 당사자·가족 모임, 주민 강연, 서포터 양성, 실태조사 등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히키코모리 서포터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상담, 쉼터마련, 네트워크 구축, 가족모임, 주민 강연·연수, 서포터 양성, 민간단체 연계, 실태조사 등 8개 항목 중 복수로 선택해 운영하는 임의사업이다. 초기단계에서 당사자와 가족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층적 지원을 제공하며, 서포터(자원봉사자 등) 양성·파견, 가족 모임, 시민강연·연수, 민간단체 협력과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 출처: 厚生労働省 (2025). 「ひきこもり支援ハンドブック~寄り添うための羅針盤~」. p.11.에서 인용.

그림 Ⅲ-11. 히키코모리 지원 체계

(3) 영케어러 지원사업

① 영케어러 지원사업의 배경

영 케어러(Young Carer)는 본래 성인이 담당하는 가사나 가족 돌봄을 아동이나 청년이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들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 전념하거나 친구들과 교류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2020·2021년 일본 정부가 실시한 조사결과,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 6.5%, 중학교 2학년 5.7%, 고등학교 2학년 4.1%, 대학교 3학년 6.2%로 나타났다²⁵⁾.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영 케어러 문제가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지 않고, 아동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인생 전반적인 시기에 걸쳐 존재하는 과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영 케어러 지원은 2021년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설치한 프로젝트팀의 보고서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영 케어러 코디네이터 배치, 피어서포트(상호지원) 등 상담체계 구축지원이었다(厚生労働省·文部科学省, 2021).

한편, 영 케어러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2024년 6월 개정된 아동·양육지원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 케어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같은 해 개정된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은 영 케어러를 “가족의 간호나 일상생활상의 돌봄을 과도하게 수행하는 어린이·젊은이”로 정의하고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였다. 아울러, 아동·청년지원지역협의회와 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대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지원체제를 정비하였다.

이처럼 영 케어러를 법적으로 명확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체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크게 실태조사와 연수강화, 지원체제 구축, 상호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こども家庭庁, 2025).

② 실태조사·연수추진사업

이 사업은 지자체가 영 케어러를 조기에 파악하고 개별적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시구청촌) 단위에서는 기명식 등 개인 단위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은 고등학생을 포함해 성인 영 케어러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한다. 또한 복지, 의료, 교육, 사법 등 다양한 관계기관 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영 케어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기발견

25)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mext_01458.html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및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조사비용을 지원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③ 영 케어러 지원체계 구축사업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비를 보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영 케어러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전문적 상담과 다기관 협력적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시도부현 단위에서는 18세이상 영 케어러까지 포괄하는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료 간 상호지원 활동과 상담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진로·케어 상담, 돌봄휴식서비스(Respite Care), 당사자간 교류행사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설치하여 영 케어러들이 상호 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통역 인력을 파견하는 서비스도 마련되었다.

④ 영 케어러 상호네트워크 형성추진사업

이 사업은 고립과 고독의 위험을 줄이고 지속적인 상담·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행사나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별 영 케어러와 지원자 간 교류를 촉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한다. 아울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활동, 영 케어러와 지원 단체 간 상호교류, 상담 기능의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 실행은 민간 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영 케어러 지원정책은 실태 파악과 전문인력양성, 지원체계구축, 그리고 상호교류기반 조성이라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조기발견에서 개별적 지원, 나아가 사회적 이해 증진까지를 포괄하는 다층적 체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4) 어린이가정청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

①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의 배경

2023년 어린이가정청 출범 당시, 아동정책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최근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원사업이 신설·확대되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는 어린이가정청의 설립과정에서 청년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아동에서

청년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체계를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사업으로 '어린이·청년쉼터 및 상담지원사업', '학대·빈곤으로 인해 고립된 학생 등에 대한 아웃리치 지원사업(이하: 아웃리치 지원사업)', '청년지원코디네이터사업'이 있으며, 세 사업 모두 취약청년계층의 조기발견 → 상담 및 생활 지원 → 자립기반마련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세 사업 모두 어린이가정청 지원국 학대방지대책과에서 관할하며, 아동학대방지대책 등 종합지원사업비 보조금(兒童虐待防止対策等綜合支援事業費補助金)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② 어린이·청년쉼터 및 상담지원사업(2024년~)

이 사업은 학대나 가정문제로 인해 거처를 잃은 10대~20대 청소년·청년에게 단기간 숙박과 상담·생활지원을 제공한다.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아동상담소가 있는 시(市)가 사업 주체가 되어 민간단체와 협력하며, 지자체는 사업수행단체에게 연간 최대 2천만엔까지 보조할 수 있다. 쉼터는 야간(23시까지)까지 운영하여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고, 상담·진로지원·법률상담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③ 아웃리치 지원사업(2025년~)

이 사업은 부모의 학대와 빈곤으로 인해 고립된 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직접 방문하여 초기 지원의 접점을 마련한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학습·진로상담, 심리상담, 장학금 활용 지원 등 교육적·심리적 지원을 포함한다. 지자체와 NPO가 협력하여 조기발견·조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화·SNS·대면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 사업은 청소년·청년이 학업을 지속하고 자립을 준비하도록 돕는 동시에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④ 청년지원코디네이터사업(2026년 예정~)

의무교육 이후 30대까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이다. 청년들이 과거의 경험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거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 관계 형성과 안정적 공간 제공을 중시한다. 지자체는 청년공간운영, 교류이벤트, 동행지원 등을 실시하며, 도도부현은 광역적 차원에서 자문·연계·온라인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대상으로 모델사업을 실시하

여 효과적 지원방안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제도 간 공백을 메우고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림 III-12 참조).



* 출처: とも家庭庁 (2025).「令和8年度とも家庭庁予算概算要求」, p.18.

그림 III-12. 청년지원코디네이터사업 개요

(5) 어린이·청년★의견플러스(とも若者★いけんぷら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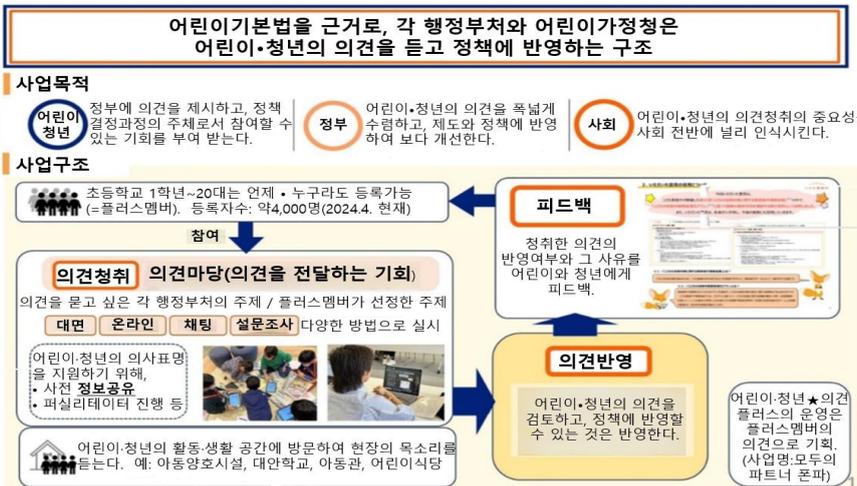
2023년 4월 어린이가정청의 출범과 함께, 어린이·청년의견반영추진사업(별칭:어린이·청년★의견플러스)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린이·청년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3년 4월 시행된 어린이기본법에 근거한다. 어린이기본법은 연령과 발달단계에 맞는 의사표명 기회의 보장과 의견 존중을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수립 시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어린이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어린이대강(기본계획)에서도, 어린이와 청년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두 가지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강조한다(とも家庭庁, 2023: 35).

- ㉔ 어린이와 청년의 상황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 ㉕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자기긍정감과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체성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어린이청년★의견플러스 사업은 플러스 멤버 참여 → 의견청취 → 의견 반영 → 피드백의 순환 과정을 통해 어린이·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그림 III-13 참조). 어린이·청년 의견게시판인 ‘의견마당(いけんひろば)’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20대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어린이가정청과 관계 부처가 이를 검토한 후 당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그림 III-14 참조). 또한 아동가정심의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하여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고, 퍼실리테이터를 양성·과련하는 제도를 통해 의견제시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청년★의견플러스는 일본의 아동·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과정에서도 시민의견과 참여가 부족했던 사회적 풍토를 고려할 때, 일본 사회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1994년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아동의 의사표명권과 참여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960~70년대 안보투쟁과 격렬한 학생운동의 기억으로 인해, 자민당을 비롯한 집권층은 아동참여기구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Osler & Kato, 2022).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이가정청의 출범과 어린이·청년참여사업은, 어린이와 청년을 단순한 정책수혜자에서 정책과정의 주체적 참여자로 전환하는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출처: 어린이가정청 홈페이지, <https://www.cfa.go.jp/policies/iken-plus/about>에서 2025년 9월 11일 인출.

그림 III-13. 어린이·청년★의견플러스(어린이·청년의견반영추진사업)



어린이청년★의견플러스 2024년도 주제 일람

2025.3.1. 시흥

주제 (No.)	방법	대상연령	개최시기	담당부처
1. 대학생이 관심있는 「식물안전」에 관한 주제는 무엇인가?	설문조사	대학생 연령대	2024년 6월 (완료)	소비지청
2. 「2024년 어린이정책」(취문 버전)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	대안, 온라인	초등학교 ~고교생 연령대	2024년 7월 (완료)	어린이과장청
3. 결혼·육아에 대한 청년의식	대안, 온라인	청학생이상	2024년 7월 (완료)	어린이과장청
4. 「청소년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에 관한 기본계획(제3차)」(안)	설문조사	초등학교 ~고교생 연령대	2024년 7월 (완료)	어린이과장청
5. 농림수산업·식물의 지속가능한 재래에 관한 소비자의 정보발신에 대해서	설문조사	전연령대	2024년 7월 (완료)	농림수산청
6. 학교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치와 선거에 관한 교재」에 대해서	설문조사	초등 4학년 이상	2024년 7~8월 (완료)	총무청
7. 교육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온라인 회의	전연령대	2024년 8월 (완료)	디지털청
8. 헤이브스피드 향소를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대안, 온라인	청학생 ~고교생 연령대	2024년 8월 (완료)	법무청
9. 「어린이공간 만들기」에 관해서 어린이청·청소년복지과 대상서	온라인 설문조사	초등 5학년 이상	2024년 9월 (완료)	어린이과장청
10. 어린이·청년의 배리어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전연령대	2024년 9월 (완료)	국도교통청

(※) 어린이·청년에게 송부할 때, 어린이·청년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고 싶을 수 있도록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 출처: 어린이·청년의견플러스 홈페이지, <https://ikenplus.cfa.go.jp/>에서 2025년 9월 11일 인출.

그림 III-14. 어린이·청년 의견마당 홈페이지

3. 독일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²⁶⁾

1) 청년정책 법률 현황

독일은 청년정책만을 규정한 독립된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청년의 발달 특성상 청년이라고 규정하는 단어도 혼재되어 사용된다.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에서는 젊은 성인(Junge Volljaehrige) 용어를 18세 이후 성년이 된 젊은 사람을 지칭하고, 형법(Strafrecht)에서는 청년을 언급할 때 젊은이(Heranwachsenden)라고 표현한다. 위 법들은 아동과 청소년기를 거쳐 아직 성숙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체류법(Aufenthaltsgesetz)에서는 젊은 성인을 언급할 때 성인의 완전한 지위를 인정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경우 성년이 된 이후에도 청년들은 여전히 자녀로 간주된다(체류법 제44조 제3항 제1호). 청년들은 젊은이라는 상위개념으로 묶여 18세 미만의 집단과 함께 부분적으로 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연령 제한을 규정할 때는 단순히 특정연령에 도달한 사람 또는 수습생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 청년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음의 <표 III-9>와 같다(Meysen, T., Schoenecker, L., Wrede, N., 2020).

26) 이 절은 흥문기 교수(서영대학교 사회복지과)가 작성하였음.

표 III-9. 독일 청년 법률용어

용어	관련법	용어	관련법
젊은 성인 (Junge Volljaehrige)	아동청소년지원법 (SGB VIII)	아동 (Kin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법전 제2권(SGB II), 민법(BGB), 소득세법(EStG), 연방아동수당법(BKGG)
청소년 (Heranwachsende)	소년법원법(JGG), 체류법 (AufenthG)	청년 (Junge Mensch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법전 제2권(SGB II), 사회법전 제2권(SGB III),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
청년 (Junge Erwachsene)	사회법전 제2권(SGB II), 체류법(AufenthG)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수습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법전 제2권(SGB II), 연방교육지원법(BAfoeG)

* 출처: Meysen, T., Schoenecker, L., Wrede, N. (2020). Gesetzliche Altersgrenzen im jungen Erwachsenenalter. Deutsches Jugendinstitut. p. 10

독일 제15차 아동청소년보고서(Kinder- und Jugendbericht)는 연방정부 정책이 지난 수십년간 청년기를 독립적인 삶의 단계로 점점 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비판한다. 청년의 사회적 참여와 통합에 대한 책임이 점증적으로 청년 개인에게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Deutscher Bundestag, 2017).

이에 연방정부는 청년정책의 핵심과제를 자격취득, 자아성장, 독립성으로 제시하고, 청년기라는 인생단계에서 일반적·사회적·직업적 행동능력을 습득하여 타인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독일 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모든 청년들은 각자의 개별적 조건이 다르더라도, 이러한 과제를 동등하게 극복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고 본다(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9).

이후 제19대 의회 연정협정에는 연방정부의 공동 청소년·청년 전략을 개발할 것을 규정한다. 2019년 연방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참여, 정책의 가시화,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부처합동으로 전략을 수립한다(Deutscher Bundestag, 2021).

(1) 청년정책에 대한 법제화

청년정책에 대한 법제화는 1990년 청소년복지법 개혁의 주요 핵심과제였다. 당시 법

개정의 목표는 청년 성인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1974년 입법부가 법적·정치적 이유로 성년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비하였다. 1980년대 상당수의 청년들이 18세에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명료해지자,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18세가 도달한 이후에도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변경하였다(Wiesner, 2014). 당시 아동·청소년지원법의 개정목적은 개입 중심의 청소년복지법을 아동·청소년, 청년과 그 부모를 위한 예방적 지원법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 변화는 당시 청년지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었다(Zentrum Bayern Familie und Soziales Bayerisches Landesjugendamt, 2025).

하지만 당시 청년들의 지역별 정책수요 불균형과 사회구조적 여건의 문제로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는 적절한 실행력을 갖추지 못하였다(Deutscher Bundestag, 1989). 제14차 아동·청소년보고서(Kinder- und Jugendbericht)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41조에 따른 청년정책 지원이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하다. 특히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청년 발달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인격발달 및 자립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13).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1년 아동·청소년강화법(KJSG : Kinder- und Jugendstaerkungsgesetz)을 통해 개정되었다. 이 법은 위탁가정이나 청소년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첫째, 청년지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였다. 청년들은 기존 청소년청의 제한적인 정책승인으로 주거 불안정 및 생활환경의 어려움에 놓여있었음에도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기존법에 규정된 청소년청은 청년의 자립불안정을 청년이 직접 증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변경된 규정에서는 청소년청이 청년의 자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하였으며,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청년의 정책지원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였다. 둘째, 타 기관과의 구속력 있는 협력관계이다. 기존 청소년청의 관할권 변경 시 관련 기관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지원체계의 지속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구속력 있고 투명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청년정책의 총책임 역할을 청소년청이 수행하고, 관할권이 이양되는 시점 1년

전부터 다른 기관과의 협력계획을 세우고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청년의 지원 서비스가 종료 후에도 청년이 필요시에 재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청년 지원서비스가 종결 후에 재차 서비스를 요청하여도 관행적으로 승인을 제한하였으나, 규정된 법상에서는 청년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넷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사후관리체계의 작동이다. 청년의 보호가 시설에서 종료되었을 경우,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담당자는 부재하였고 자립준비청년은 양육가정 또는 보호자, 주변인들의 선의에 의존하였다. 개정안에는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서비스가 종료 후에도 청년이 원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다. 다섯째, 자립준비청년의 시설이용 분담금을 소득의 최대 75%에서 25%로 줄이고, 자산을 통한 비용징수를 삭제하였다(홍문기, 2022a).

(2) 아동청소년지원법 상의 청년정책 규정

청년정책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지원법(KJHG:Kinder- und Jugendhilfegesetz)은 13개의 법률로 구성된 사회법률 체제에 제8사회법전(SGB VIII)으로 편입되어 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청년정책 지원과 관련된 법적 사항을 규정한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은 1991년 1월 1일에 발효되어 그간 적용되었던 1961년 청소년복지법(Jugendhilferecht)을 대체하였다(홍문기, 2016).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청년이 자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를 강조한다. 이는 청년자립을 우선적으로 당사자인 청년에게 의무가 발생하며, 양육하는 부모나 국가에 종속되지 않음을 의미한다(제1조 제1항). 특히 이 법은 청년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구조적 결함이나 개인적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교육 및 발달 조건을 균등화하고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청년이 자신의 연령과 개별능력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제1조 제3항). 즉 국가의 역할은 청년의 긍정적인 생활조건과 자립 친화적 환경의 조성과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청년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대변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정책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조에 명시된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 지원의 광범위한 역할은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사회적으로 통합된 인격체로 성장할 권리에 부합하는 청년의

육성 및 교육을 위한 인프라 제공, 청년의 열악한 생활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서비스의 구축, 청년의 복지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 수행,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여 사회의 통합을 확대하는 것이다(홍문기, 2022b).

아동청소년지원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18세가 되었다고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41조는 18세이상 27세 미만의 청년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41조 제1항은 인격발달 지원을 일반적으로 청년이 21세가 될 때까지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개별사례에 대해서는 27세가 될 때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 그동안 양육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18세가 된 후에 해당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청년지원 근거는 교육중단, 중독 질환, 주거 불안정 또는 기타 정신적·신체적 위기 상황 등 지원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다. 특히 지원의 필요성은 각 청년의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Wiesner, 2014).

2021년 6월 아동청소년지원법(KJSG)이 개정²⁷⁾되면서, 18세 이상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급요건 규정이 개정되었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41조의 권고규정이 법적 의무로 전환되면서, 입법부는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공공기관의 지원기준은 청년이 자신의 능력범위 내에서 자립을 보장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고, 청년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지원을 반드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청년이 자기 결정적이고 책임적이며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않는 것이 입증되면 법적 지원이 가능하다(Deutscher Bundestag, 2021).

2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제41조에 규정된 내용은 이전규정(RJWG 제6조 제3항, 제75a조)과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 청년을 위한 지원은 단순히 연장형태로만 구성되지 않으며, 18세 이후에도 처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정책은 사회복지 지원과 분리되었으며, 법적의무가 선택적 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어 규정상 청년들의 권리로 격상되었다. 따라서 법률체계상 청년을 위한 지원은 아동청소년 양육지원(§ 27 KJHG) 및 정신장애 아동청소년 통합지원(§35a KJHG)과 연계되지만, 지원 필요성은 성년도달로 인한 부모의 양육 책임종료로 더 이상 부모-자녀관계의 맥락에서 다루지 않고, 보다 일반적으로 청년이 자립적인 생활을 설계하는 데 사회교육적 서비스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적용한다(Zentrum Bayern Familie und Soziales Bayerisches Landesjugendamt, 2025).

(3) 청년정책 지원에 대한 절차규정

서비스 수급은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 지원조건은 사회적 생활환경과 청년이 습득한 대처능력 기술이 청년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때 가능하다. 청년지원 정책의 계획수립 및 결정은 지원이 장기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청년 당사자, 담당공무원, 전문가, 필요할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해당 부모가 함께 수립해야 한다. 지원계획의 수립은 필요성과 정책 서비스,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기간을 연말, 학년 또는 교육과정 등으로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년에게 한 명 이상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시에 형제·자매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36조 제2항).

아동청소년지원법 제36조는 제공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적합하고 필요한 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규정한다. 필요할 경우 해당 청년, 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자들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점검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반기별로 권장되나, 위기 상황 등에서는 훨씬 더 짧은 주기에 가능하다.

지원계획의 연장여부는 당사자인 청년과 논의하여, 현재 필요와 목표 달성여부를 공동으로 점검한다. 동시에 제공된 지원이 개인의 성격발달을 촉진하여 자기 결정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적합한지, 아니면 목표·지원형태 또는 범위 등에 대한 조정이 추가로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 제공되는 지원이 더 이상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경우, 청년과 함께 기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청년 지원서비스가 계속되지 않거나 종료될 경우, 청소년청은 종료시점 1년 전부터 해당 청년의 필요를 고려하여 다른 기관으로의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41조 제3항).

이전 아동청소년지원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제41a조에 구체화되어 더 높은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청년서비스의 지원 종료 후 적정한 기간 내에 청년에게 이해 가능하고, 추적 가능하며, 인지 가능한 형태로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4) 아동청소년지원법 상 청년정책 지원서비스²⁸⁾

청년지원서비스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치료서비스(제27조 제3항~제4항), 상담서비스·집단프로그램·돌봄지원(제28조~제30조), 전일제 돌봄·시설보호·집중적인 사회복지 돌봄서비스(제33조~제36조),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지급 및 의료지원(제39조~제40조)이 있고, 이 경우에 법적인 친권자 또는 명시된 아동·청소년의 지위는 청년이 대신한다. 세부적인 정책은 다음의 <표 III-10>과 같다.

상담서비스(Erziehungsberatung)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28조에 따라 청년 및 부모(양육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상담소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모두에서 운영된다. 상담서비스는 상담을 원하는 청년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사례관리의 행정절차나 지원계획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

집단프로그램(Soziale Gruppenarbeit)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년그룹 중심의 체험, 연극 또는 예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기 결정적, 책임적, 독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또는 돌봄지원(Erziehungstand/Betreuungshelfer)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30조에 따라 청소년형사법의 보호조치 일환이다. 필요시 청년에 대한 개별적 필요사항이 지원요건에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때 보호기간 및 지속여부는 청소년 법원이 결정하고,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의 보호기간을 권고한다.

전일제 돌봄(Vollzeitpflege)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위탁부모는 자신의 가정환경에서 청년에게 주거공간 제공과 정서적 안식처를 제공한다. 위탁부모는 기관으로부터 양육과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된다. 청년의 발달이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때에 보호서비스가 가능하다. 위탁가정에서 성공적으로 독립한 후에도 청년에게 위기 상황(교육 또는 직장의 상실, 이별로 인한 주거지 상실, 불안정성에 따른 집거 등) 및 발달의 결핍 등이 확인된 경우 위탁가정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시설보호(Heimerziehung)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34조에 따라 청년에게 사회교육적, 치료교육적 그룹홈부터 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청년에게는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자립생활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서비스를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각 청년의 개인적 요구인 자기 책임감, 독립성, 발전 기회

28) Zentrum Bayern Familie und Soziales Bayerisches Landesjugendamt(2025)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측면을 고려한 적합한 환경을 선택해야 한다. 이 지원형태의 필수적인 조건은 시설 밖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다가 실패하여 재입소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맞춤형 돌봄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정신적 장애나 장애위험이 있는 시설보호 청년에게는 적시에 재활 지원제도 또는 통합지원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집중 사회복지 돌봄서비스(Intensive sozialpaedagogische Einzelbetreuung)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35조에 따라 위험하고 위태로운 생활환경(노숙, 매춘, 위험한 중독 물질) 및 다중범죄로 인해 부담을 안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개별서비스이다. 서비스의 목표는 청년의 사회적 통합과 자립적·독립적인 생활방식, 개인의 인격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다. 개별사례지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며 1:1 돌봄환경을 제공한다. 청년의 개별능력, 현재 문제와 필요에 따라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지원시간과 활동정도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청년의 상황에 따라 요청이 있을 때마다 또는 긴급한 필요상황에 발생할 경우 24시간 지원형태로도 제공된다.

청소년 사회사업(Jugendsozialarbeit)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규정은 청소년의 학교 및 직업교육, 노동 시장 통합 및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사회교육적 지원(제1항), 대상자를 위한 사회교육적 지원을 동반한 교육 및 취업조치(제2항), 학교 또는 직업교육에 참여하거나 직업 통합과정에 사회교육적 지원을 동반한 주거형태의 숙소 제공(제3항)이다. 이 세 가지 서비스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거나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제13조 제1항) 이 서비스는 단순히 직업이나 교육 기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 주거생활, 중독문제, 부모와의 갈등해결 등도 포함된다. 특히 청소년 사회복지사업에서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패한 청년에게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기회를 제공하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지원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Wiesner, 2014).

표 III-10.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 상 청년정책 서비스현황

지원서비스	법적근거	내용
1) 치료 서비스 (Therapien)	§27 Abs. 3 SGB V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교육, 상담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심리적) 치료 서비스 제공(비용 없음) ※ 단독 서비스로는 제공하지 않음.
2) 상담 서비스 (Erziehungsberatung)	§28 SGB V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개인 문제, 가족 문제, 자립 등을 위한 상담 서비스(비용 없음)
3) 집단 프로그램 (Soziale Gruppenarbeit)	§29 SGB V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발달장애와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 청소년, 청년(비용 없음) 활동: 2명의 전문가가 문제극복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법원에서 사회복지 조차로 명령하기도 함(§10 JGG)
4) 교육 또는 돌봄지원 (Erziehungsbeistand/Betreuungshelfer)	§30 SGB V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환경을 극복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서비스 지원: 매주 8시간 지원(교육, 주거, 일자리, 사회적 관계 등) (비용 없음)
5) 전일제 돌봄 (Vollzeitpflege)	§33 SGB V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일반적) 위탁가정 보호, 필요에 따라 청년도 가능 지원: 위탁부모 양육비 지원, 교육비·용돈 등 모든 비용 지원 필요한 경우 학교물품, 수학여행 등 일회성 비용 지급(부모와 자립준비청년 소득에 따라 비용분담 가능) ※ 위탁수당 65시간 이상(월 162.50€), 95시간 이상(월 299.60€), 120시간 이상 (월 466.80€), 160시간 이상(월 700.10€), 180시간 이상(951.00€), 180시간 이상(월 1,327.90€)
6) 시설 보호 (Heimerziehung)	§34, 94 SGB V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시설보호 입소형 지원(18세 이후에도 시설에 거주 가능) 지원: 필요에 따라 지원(일반적으로 24시간 보호) (청소년청 부담), 다양한 지원형태(치료시설, 식사장에 그룹홈, 성소수자 그룹홈, 단독 주거 등) ※ 비용분담 가능(청년의 자립 정도, 시설보호 관리 정도 등), 2021년 개정에서 자기부담금 최대 75%에서 25%로 변경(§94 SGB VIII) (비용산정 제외: 월 150유로 이하의 보수를 받는 학생 일자리 또는 인턴십, 방학 중 일자리, 자원봉사 수입, 교육 보조금 일부로 월 150유로)
7) 집중적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Intensive sozialpädagogische Einzelbetreuung)	§35 SGB V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성매매, 약물중독, 범죄노출, 노숙자 등 위험한 생활환경에 처한 청년 지원 지원: 상담사가 집중적인 도움 지원, 생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필요에 따라 비용 분담 가능
8) 사법적 지원 (Straf-)justiznahe Hilfen	§36a Abs.1 SGB V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청소년법원에 의해 청년에 맞는 서비스 명령 지원: 법원이 명령한 내용을 청소년청이 이행 및 비용 부담 ※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27조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9) 청소년 사회사업 (Jugendsozialarbeit)	§13 SGB V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고용 지원 지원: 고용청 및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

* 출처: 홍문기(2024). 독일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정책현황. 국제사회보장리뷰 Vol. 31, p.23

(5) 사회법전 제2편, 제12편에서의 청년정책 규정²⁹⁾

청년의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통합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2편 사회법(SGB II)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은 근로능력이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의 기본 생계 보장을 규정한다. 25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은 청년이 신청 후에 즉시 고용 또는 직업훈련 관련기관에 배치 등 고용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고용이 필요한 청년들은 직업훈련, 고용을 위한 집중적 지원을 받으며, 주거, 채무, 중독상담 등 그 외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담당자를 배정받는다.

독일에서 직업교육은 기업과 직업학교라는 두 개의 교육 기관에서 진행된다. 현재 약 170만명의 청년이 이 형태의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와 독일 경제 주요단체들은 2004년 6월 16일 '독일 직업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국가'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따라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청년에게 직업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의 직업교육으로의 진학이 우선순위로 제공되며, 직업교육 및 취업에 진입할 기회를 제한받은 청년들도 직업교육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청이 기업에게 청년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월 최대 192유로까지 사후에 보상해주고, 사회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부담한다. 연방 노동사회부는 진로교육을 40,000개로 확대하였다.

18세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사회법 제12편 사회보조법에 따른 사회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 법의 목적은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힘으로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지원은 자립을 목표로 위기 상황에 처한 원인과 관계없이 현금, 물품, 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 사회복지지원은 생활비 지원과 근로능력 감소시 기본생활 보장으로 구분된다. 두 지원 모두 개인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 금액도 동일하다. 생활비 지원의 경우, 추후 수급자의 보호자나 당사자가 비용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청년정책 행정부서

독일 연방정부의 행정체계를 살펴보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ne und Jugend)와 그 산하에 설치된 청소년청

29) Becsky, S., Dreber, M., Haenische, D.,(2008)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Jugendamt), 노동사회부(BMAS,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es)와 그 산하에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uer Arbeit)을 살펴볼 수 있다.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청년정책을 총괄하며, 청년정책, 청년보호, 자원봉사, 다른 부처와의 청년정책 등을 협력 및 조정한다. 특히 청년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 노동시장, 사회 및 보건, 사법, 도시정책과 연결한다. 다른 사회적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기회를 개선하며, 청년이 일상생활을 극복하는데 정책을 지원하고 참여를 촉진한다. 청년정책의 주요전략은 연방 아동청소년 계획에 따라 청년지원정책수립, 연방정부 내에서 청년의 이익을 고려한 사회정책적 인식개선, 빈곤예방, 가족지원기관 및 연구를 촉진한다. 주요역할은 청년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인격발달 강화 및 개인별 서비스를 지원한다(Hong, 2014).

2005년 11월 22일 조직법에 따라 연방 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es)가 설립되었다. 연방노동사회부는 모든 청년의 교육 및 고용기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어떤 청년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청년 실업률을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방노동사회부는 노동시장 정책, 외국인 고용, 실업보험, 구직자 지원, 노동자 안전과 사회보험, 연금보험, 사회적 보상 및 장애인, 재활, 사회통합 등이다.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uer Arbeit)은 사회법전 제3편에 따른 적극적인 고용 지원정책을 통해 청년과 장애를 가진 청년,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한다(Becky, S., Dreber, M., Haenische, D., 2008).

3) 청년정책 전달체계

연방 차원에서는 청년정책의 목표가 연방정부 내에서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 의해 설정되고 조정된다. 연방의회는 입법부로서 법률 제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연방 차원의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을 위한 핵심 지원 수단은 연방 아동 및 청소년 계획(Kinder- und Jugendplan des Bundes)이다. 연방청소년위원회(Bundesjugendkuratorium)의 임무는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의 기본적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방청소년위원회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이 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또한 각 입법 기간마다 학계 및 실무계의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청년의 실태와 복지서비스의 제공현황 보고서를 4년마다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아동청소년 지원법 제83조).

주 차원에서는 16개 주가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주에 위임한 법률 분야를 담당한다. 따라서 16개 주 모두 지방 조직 문제, 어린이집, 아동 및 청소년·청년정책 등에 관한 주 시행 법률이 각각 존재한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주에 주 청소년청(Landesjugendamt)을 설립할 의무를 부과하며, 청소년청은 청소년 지원 위원회(Landesjugendhilfeausschuss)와 청소년청 행정기관으로 구성된다. 주 청소년부서(최고 주 청년부서)는 공공 및 민간 청소년, 청년 복지기관의 활동을 촉진하고 청년복지 발전에 기여한다. 주 정부는 시설 및 서비스의 균등한 확충을 도모하고, 청소년청 및 주 청소년청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83조 및 제85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청년 복지 인프라, 서비스 제공 업무의 전문적·실무적 실행의 기반이 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중앙기관으로서 청소년청(아동청소년지원법 제69조, 제70조, 제71조)을 설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청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독일에는 577개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청이 있다(아동청소년지원법 제79조).

청소년청은 청년의 유익한 성장발달과 사회적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청소년복지법에 근거하여 총책임의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정책을 위하여 청소년청은 중앙부처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 속하여 있으며, 주단위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청소년청을 조직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주청소년청의 업무범위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5조에 따라 지역청소년청 지원, 민간단체 협력지원, 관련 프로젝트 및 행사운영, 민간기관 또는 관련단체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역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복지법 제11~41조에 따른 업무추진과 제42~60조에 따른 공공기관 업무를 수행한다. 자세한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그림 III-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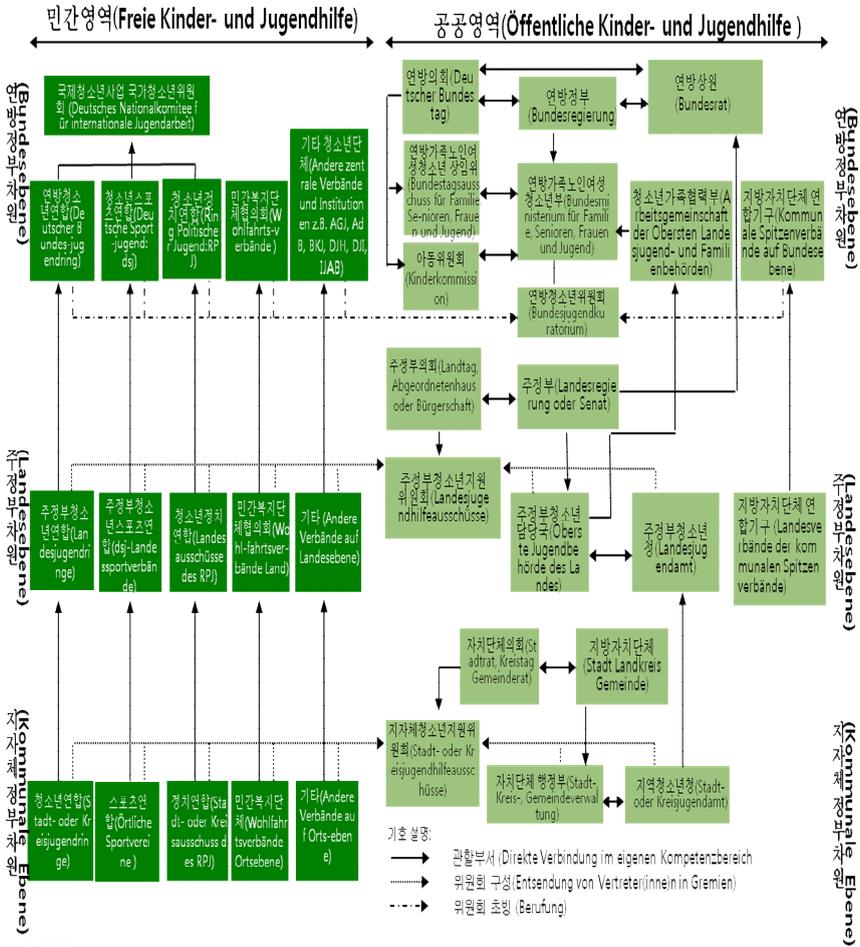


그림 III-15. 독일 청년정책 전달체계

4) 독일 청년정책 세부사업

(1) 청년정책 전략과 추진사업³⁰⁾

고령화 사회인 독일은 젊은 세대를 효과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공정하

30)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9)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지역발전 균형과 청년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청년의 사회적 참여요구, 기후변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정치적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방정부는 청년의 관심사와 요구를 정책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민주사회 내에서 다른 계층과의 연대적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목적은 청년 친화적 사회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바탕으로 청년의 다양한 생활 상황과 개별요건을 고려하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9). 청년전략은 9가지 행동분야로 개발되었으며, 청년들 스스로가 제안한 정책영역이다. 청년전략에는 총 163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 조치들은 청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와 세대 간 대화 부문에는 독일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 세계화, 디지털화 등 이에 수반되는 발전이 다른 계층보다 청년층에게 성장조건의 변화와 발전가능성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설계할 때는 젊은 세대의 요구와 청년에 맞는 적합한 인프라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청년정책은 청년 정책연구소 및 청년 체크, 청년은 어떻게 생각할까 등 4개 사업이다.

참여, 협력, 민주주의 부문에는 청년들이 삶에 단계에서 직면하는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고, 청년의 관심사와 요구를 적절히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청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발언권, 참여권,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청년의 요구와 관심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기존 정치 참여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는 청년기 민주적 교육, 연방프로그램 민주주의를 실천하자, 양질의 청년참여를 위한 품질기준 마련 등 9개 사업이 있다.

도시와 농촌, 주거와 문화 부문에는 도시와 농촌지역 청년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농촌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일자리 부족, 열악한 인프라 등 서로 다른 조건과 발전양상으로 청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 청년들 역시 교육 및 취업목적으로 지방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향으로의 회귀는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의 많은 지역에서 이미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청년 이주비율이 높은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여성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최대 20% 낮게 나타난다. 도시와 농촌, 주거와 문화부문의 정책은 청년들이

교육을 마친 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한다. 고향으로 회귀하기 위한 정책은 일자리, 주거공간, 인프라 등 지역여건에 따라 제공서비스의 가용성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청년들은 농촌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인프라·지역서비스 등 청년의 요구사항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는 연방농촌 프로그램 개발사업, 농촌지역 청년을 위한 서비스 확대 및 개선, 주거비 완화 정책 등 13개 사업이다.

다양성과 참여부문의 목표는 청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이 없는 수용성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독일 청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인구의 40%가 이민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계층에 비해 이민배경 청년들은 빈곤율이 높다. 특히 청년의 고등교육 접근성은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교육 지향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특별히 현대의 청년들은 디지털 참여를 선호한다. 디지털 미디어는 청년에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청년에게 디지털 참여 역시 접근성 부족이나 미디어 활용에 대한 지식과 능력 부족이라는 형태로 사회적 불평등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모든 청년에게 공동의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제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청년 삶의 상황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구조적 차별과 불이익이 고착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청년정책은 이민배경을 지닌 청년단체와의 대화, 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이다.

교육과 노동, 자유공간 사업부문의 목표는 청년들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 시장의 성별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고, 적절한 임금과 일·가정의 양립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독일 청년 20세에서 26세 사이의 약 50%가 직업훈련 과정에 속해있다. 독일의 이중교육 시스템은 독일 청년에게 약 300개 이상의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 연계성 덕분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졸업생의 75%가 교육을 받은 기업에 바로 채용되었다. 연방정부는 모든 청년이 자격을 갖춘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교육조건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청년정책은 연방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한 장학금 지원, 전세계 직업교육, 직업 스타트 등 23개 사업이다.

이동성과 디지털 분야의 목표는 모든 청년에게 생활영역에서의 장벽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적이고 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독일 청년 대부분은 거주지와 상관없

이 동일한 이동성 요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단시간에 대학과 직업학교, 여가공간, 친구 등에게 이동하기를 원한다. 이동수단이 부족할 경우 독립성과 유연성이 제한되고, 청년 수용성이나 비용 부분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동성과 디지털 분야의 접근성 정책은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통해 승강장에 접근성을 높이고, 버스나 기차에 계단의 불편함 없이 승차하고, 요금체계나 시간표가 명확하여 여행 경로 전반에 인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는 청년에게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들은 디지털 경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참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활동에도 참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정책은 농촌지역의 디지털화와 이동성 프로그램, 디지털 생활혁신 사무소 등 8개 사업이다.

환경분야의 목표는 모든 청년들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독일 청년들은 글로벌 환경문제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며, 청년의 미래기회와 사회발전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청년들의 약 55%는 기후변화의 결과를 두려워하며, 약 71%는 환경오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 67%가 기후보호 문제로 인해 기성세대에 버려졌다고 느끼고 있다. 청년은 정치적 결정에 대한 비판과 기후 보호를 위한 해결책 요구를 중심에 두고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미래가 보장된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정책은 기후보호 2030조치 프로그램, 기후보호를 위한 혁신기금 지원 등 5개 사업이다.

건강분야의 목표는 학교에서 직업교육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자립적인 삶과 사회로의 건강한 통합이다. 정신적 문제 또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지닌 청년은 직업교육을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 청년 18세에서 29세 중 15%는 낮은 건강역량을 보였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년들이 건강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역량은 건강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활방식을 개발하는 데 청년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청년 집단에 적합한 정보와 생활환경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청년정책은 건강 리터러시 동맹, 건강한 식생활 및 운동증진 이니셔티브 등 4개 사업이다.

유럽 및 세계 분야는 청년들에게 인격형성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정부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청년정책은 송 콘테스트,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4개 사업이다. 세부적인 정책은 다음의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독일 청년정책 전략과 세부정책

사업부문	법적근거	내용
미래와 세대 간 대화 (Zukunft, Generationendialog & Jugendbilder)	가족·노인·여성·청 소년부(BMFSFJ)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적 청(소)년 정책연구소(Arbeitsstelle Eigenstaendige Jugendpolitik) : 청소년·청년정책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논의를 위한 참여를 촉진 청(소)년 체크(Jugend-Check) : 청(소)년 영향평가는 연방정부의 법안 초안이 12세에서 27세 사이 청(소)년의 생활상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청(소)년영향평가 전문센터(KimJC)에서 전문적 운영)
	내무부(BM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은 어떻게 생각할까?(Wie ticken Jugendliche) : 청소년, 청년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포착하고, 자기증언 등을 통해 청소년, 청년세계의 일상, 가치관, 일상적 삶의 내용을 제공, 실무적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법무·소비자보호부 (BMJ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소비 보호를 위한 16개 보호센터 프로젝트(Projektforderung der 16 Verbraucherzentralen im Bereich des wirtschaftlichen Verbrauchens schutzen) : 젊은 소비자(14-24세)를 대상으로 경제 교육을 통한 개인 자금관리 및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참여·협력·민주주의 (Beteiligung, Engagement& Demokratie)	가족·노인·여성·청 소년부(BMFSFJ)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기 민주적 교육증진(Foerderung demokratischer Bildung im Kindes- und Jugendalt) : 27세 이하 연령층을 위한 민주적 교육기관 및 개념을 평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 프로그램 “민주주의를 실천하자”(Bundesprogramm Demokratie leben) : 300개의 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기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 진행, 청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자체예산으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제공
	내무부(BM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질의 청년 참여를 위한 품질기준 마련(Qualitaetsstandards fuer gute Kinder- und Jugendbeteiligung) : 다양한 실무분야를 위해 양질의 참여 품질기준 마련 및 지속적인 관리 캠페인 “함께해주세요! 당신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Kampagnen, Pack mit an! Fuer dich. fuer uns alle) : 청년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캠페인

사업부문	법적근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 네트워크 “젊고 열정적이며 연결된”(Peernetzwerk JETZT-jung, engagiert, vernetzt) : 16세에서 27세 사이의 자원봉사 청소년, 청년이 모인 단체로 매년 전국적인 워크숍 운영 청년 회의, 연결되어 있나요(YOU:KO Jugendkongress) : 16세부터 27세까지 약 300여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세계화, 기후, 정치, 산업혁명,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논의
참여·협력·민주주의 (Beteiligung, Engagement&Demokratie)	농림식품부 (BM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모델 프로젝트 “청년을 진지하게 대하다. 농촌지역에 뿌리내리는 젊은이”(Bundesprogramm Laendliche Entwicklung) : 고향마을에 소속감을 강화하고 청년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에 뿌리를 내리도록 지방정치에 대한 포럼 제공 및 자원봉사활동 장려
	자연·환경보호 원자력안전부 (BMU)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개발 및 규정체계 내에서 비공식적 청년 참여과정 개발 및 지속추진(Entwicklung und Fortfuehrung informeller Jugendbeteiligungsprozesse bei Programmen und Regelwerken) : 청년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성격의 국내 및 국제 참여과정을 진행하고, 새로운 참여과정을 유도
	노동사회부 (BM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노동사회: 청년 교류(Digitale Arbeitsgesellschaft:Austausch mit jungen Menschen) : 청년은 노동과 복지국가의 미래, 디지털화와 사회적 통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
	경제협력개발부 (BMZ)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 만남 프로그램(weltwaerts Begegnungen) : 독일과 각국의 청년들이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를 주제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프로젝트 기간은 최대 2년 지원)
도시와 농촌, 주거와 문화 (Stadt&Land, Wohnen& Kultur)	농림식품부 (BM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농촌 개발 프로그램(Bundesprogramm Laendliche Entwicklung) : 농촌지역을 매력적인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청년에게 정착을 지원함. 주제별 공모를 통해 시민사회 참여부터 공공서비스, 디지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농촌 개발 프로그램 “농촌지역 문화활동 및 참여” (Bundesprogramm Laendliche Entwicklung) : 공모전을 통해 최대 261개 프로젝트를 지원(공연, 예술, 음악, 무용, 문학, 문화, 박물관, 전시, 문화유산 등) 특히 청년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과정을 직접 참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농촌 개발 프로그램 “사회마을 개발”(Bundesprogramm Laendliche Entwicklung) : 총36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마을 공동체가 청년들과 활발한 사회적 교류를 진행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공간 활성화 연방농촌 개발 프로그램 “모델사업”(Bundesprogramm Laendliche Entwicklung) : 시범사업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13개에 예산을 지원함. 청년대상 프로젝트도 함께 지원함.
	법무·소비자보호부 (BMJ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 청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개선(Ausbau und Verbesserung der Unterstuetzungsangebote) : 청년에게 경제적·법적 소비자 보호 주제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전달하고, 농촌지역 소비자 정책수립에 청년을 참여시킴.

사업부문	법적근거	내용
도시와 농촌, 주거와 문화 (Stadt&Land, Wohnen& Kultur)	내무부(BM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정상화의 결의안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Umsetzung der Beschluesse des Wohngipfels zur Sicherung der Bezahlbarkeit des Wohnens) : 교육이나 학업을 수행하거나, 소득이 낮거나 가족이 있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 지원 ▪ 도시리그(Urbane Liga) : 도시계획에 적극 참여하는 청년들의 연합체, 공공토론을 통한 청년의 발언권을 장려하고, 도시 비전을 개발하고, 행동 가능성을 확대함. ▪ 도시간실 지원 프로그램(Staedtebaufoerderprogramm) : 인프라가 취약한 도시에 청년의 인프라와 주거환경을 개선함. 청년들은 도시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 제공 ▪ 부처간 전략 "사회적 도시"(Ressortuebergreifende Strategie) : 청년들의 통합 및 참여, 사회문화, 소비자 보호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취약한 도시를 지원
	문화·미디어담당관 (B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 프로젝트, 유토폴리스(Utopolis) : 전국 16개 모델 프로젝트 및 최대 830만 유로 지원, 청년들은 문화 및 미디어에서 소외집단을 포용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 농촌지역 문화 자원봉사 프로젝트(Kulturelle Freiwilligenprojekte) : 공모전을 통해 청년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장기간 타 도시에서 활동지원)
	교육연구부 (BMB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문화교육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지원(Richtlinie zur Foerderung von Forschungsvorhaben zur kulturellen Bildung in laendlichen Raeumen) : 농촌지역에서 문화교육의 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한 학제간 연구 프로젝트 지원
	노동사회부 (BM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을 위한 청년 이동성 지원 프로그램(Angebote zur Unterstuetzung der Mobilitaet von jungen Menschen zur Aufnahme einer Berufsausbildung) : 타도시의 직업활동을 위한 교통비 또는 이사비용 지원, 직업훈련 기간동안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충분치 않을 경우 직업훈련 보조금 추가 지급 및 숙식비용 제공
	다양성과 참여 (Vielfalt & Teilhae)	이민·난민·통합 담당관 (IntB)
문화·미디어담당관 (B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Kunstwelten-Vermittlungsprogramm der Akademie der Kuenste) : 예술가들은 청소년과 청년 등과 함께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예술 워크숍 등에서 함께 작업함.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원

사업부문	법적근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남을 가능하게-편견을 없애고-칭찬을 장려(meinTestgelaende-Begegnung ermoegliche, Vorurteile abbauen, Gestaltung foerdern) : 젠더주제 및 문제에 대한 토론 활성화 및 표현기회 제공
	가족·노인·여성·청 소년부(BMFSFJ)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성애적 생활방식과 성 다양성을 위한 네트워크(Das Wissensnetz zu gleichgeschlechtlicher Lebensweise und geschlechtlicher Vielfalt) : 레인보우 인터넷 포털을 운영하여 퀴어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청년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퀴어사람들과의 포괄적인 네트워크 제공
교육, 노동, 자유공간 (Bildung, Arbeit & Freiraume)	교육연구부 (BMB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교육지원법(BAfoeG) 개정 : 2019년, 2020년 겨울학기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비용을 인상. 부모의 주거지에서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에 대한 주거보조금도 인상됨. ▪ 전세계 직업교육(AusbildungWeltweit) : 2018년 6월부터 전세계를 대상으로 국제적인 직업 역량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함.(현재 850명의 직업훈련생과 강사가 교육목적으로 약 40개국으로 파견) ▪ 직업 스타트(JOB STARTER Plus): 독일 내 20여개의 교육-이민조정 센터(KAUSA)를 지원하여, 이민배경을 가진 대학중퇴자 등 특정대상 그룹이 직업교육을 시작하도록 유도함. 지금까지 약 100개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거나 진행중임. ▪ 직업교육에서의 가상 및 증강현실(VR/AR) 지원강화(Foerder bekannt machung zur Virtuellen und Erweiteren Realitaet) : 직업교육에서 실무 및 현장중심학습을 지원하여 기술을 시험하고 개발 ▪ 기업 간 직업훈련센터 및 역량센터 지원(Foerderung ue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aetten und Kompetenzzentren) : 연방 정부는 직업훈련센터를 투자하여 역량센터로 발전시켜 중소기업의 청년 수습생들이 동일한 출발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보완 ▪ 대학 지원(Hochschulpakt) : 대학에 입학하는 모든 청년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기한없이 매년 약 20억유로를 대학에 추가로 지원(대학에서 학업 및 교육에 중시하는 청년의 고용관계 확장)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직업교육(Modellversuchsfoerderschwer punkt Berufsbildung fuer nachhaltige Entwicklung)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직업교육 및 연수과정에 구조적으로 정착시키는 것, 청년의 지속가능성 중심 직업자격 취득에 기여
교육, 노동, 자유공간 (Bildung, Arbeit & Freiraume)	교육연구부 (BMB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훈련법 개정(Novelle des Berufsbildungsgesetzes) :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훈련생에 최소 515유로의 훈련수당을 2020년부터 지급, 시간제 직업훈련 가능으로 재료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청년들이 유연하게 참여 가능.

사업부문	법적근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교육품질 협약(Qualitaetspakt Lehre) : 16개주 156개 대학이 학생 지원 및 교육 품질 개선, 혁신 학습모델, 교육 품질 발전을 위해 연방정부는 약 20억유로를 지원 ▪ 직업 교육기관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Sonderprogramm zur Foerderung von Digitalisierung in ue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aetten) : 직업훈련기관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청년 훈련생을 위한 디지털 장비 지원 및 현대적인 교육환경 마련(보건의로 직업군에서도 디지털 미디어 보조금 지원) ▪ 직업교육 훈련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Verstetigung der Assistierten Ausbildung) : 취약계층(학습장애, 다양한 문제를 겪는) 청년들이 직업훈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배치함. (직업교육 찾기, 기업지원, 시험준비, 직업찾기 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소)년포럼(Jugendforum zur Bildung fuer nachhaltige Entwicklung) : 독일 전역에서 선발된 16~24세 청소년, 청년들은 고위급으로 구성된 국가 지속가능발전 플랫폼에 참여하여 정책적 제안사항을 마련함(6개의 지속가능발전 전문포럼에서 활동), 이들은 청소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추가교육을 받거나 강사로 활동함.
	노동사회부 (BM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노동청의 SGB II 제16h 시행을 위한 절차규정(Verfahrensregelungen der Bundesagentur fuer Arbeit fuer die Umsetzung) : 일반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2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 ▪ 졸업과 연결 프로그램(직업진로프로그램 및 직업교육포기방지 지원)(Abschluss und Anschluss, Bildungsketten bis zum Ausbildungsabschluss) : 청년들이 학교에서 직업훈련 및 직업으로 가능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진로프로그램, 직업훈련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시니어전문가가 청년을 지원함. ▪ 직업훈련지원금 및 직업훈련수당에 대한 필요금액 및 공제액 인상(Erhoehung der Bedarfssaetze und Freibetraege bei der Berufsaus bildungsbeihilfe und dem Ausbildungsgeld) : 2019.8.1. 발효된 직업훈련지원금 및 직업훈련수당 조정법에 따라 직업훈련 및 직업준비교육에 대한(BAfoeG) 필요금액 및 공제액 인상 ▪ 평생 직업상담(Lebensbegleitende Berufsberatung) : 연방노동청은 취업 전과 취업생활 중에 직업상담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이른 시기에 진로를 고민하고, 직업관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 노동, 자유공간 (Bildung, Arbeit & Freiraume)	노동사회부 (BM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환기에 있는 지원이 필요한 청년지원(Unterstuetzung foerderungsbeduerftiger junger Menschen am Uebergang von der Schule in der Beruf) : 개별 요구에 따라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보조금, 서비스 제공 등

사업부문	법적근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직업상담소(Weiterentwicklung der Jugendberufsagenturen) : 고용청-직업센터-청소년복지기관-학교간의 조율된 협력을 통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이행과정에서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전환과정을 지원하고 확대
	경제에너지부 (BMW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한 협력(Allianz fuer Aus- und Weiterbildung) : 2015년에 출범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한 연합은 가능한 모든 청년이 자격을 갖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자리수와 지원자수의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데 중점을 둠. 웰컴 가이드(Willkommenslotsen) : 주로 청년난민을 대상으로 기업의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함. 현재 137명의 인내인이 활동중이며, 110개의 공업회의소, 상공회의소, 자유직업협회, 기타 경제기관과 네트워크가 되어있음. 2018년 기준 약 2,850개 직업훈련자리를 제공했으며, 3,700개 인턴십, 1,390개 초급 자격증, 1,22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Fachkraefteoffensive Erzieherinnen und Erzieher) : 연방프로그램은 유치원(어린이집), 아동청소년교육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을 양성하고 전문가를 확보(연방정부 지원 : 1.교육기관 내 정원확대 2.청년 실무경험 제공(실무통합교육) 3.승진보너스 등 지급을 통한 직업 선택 유도) 청(소)년 강화 : 미래 설계(JUGEND STAERKEN : Zukunft gestalten) : 독일경제청년회(WJD)는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 현장 체험 및 취업준비 교육을 제공함. 매년 8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하여 하루 동안 견습생 체험이 진행 교육 및 돌봄직업군 직종을 위한 가치높이기(Mehr-Wert:Neue Werte-Bilder fuer soziale Berufe) : 교육 및 돌봄직업군을 위한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해 가치 실험실을 운영함. 운영기관, 협회, 노사대표, 주정부 대표 및 이해관계자와의 토론을 통해 미래비전 개발
이동성, 디지털(Mobilitaet & Digitales)	농림식품부 (BM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의 디지털화 기회(Chancen der Digitalisierung fuer laendliche Raeume) : 연방농촌 개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의 지능적 활용과 연결을 통해 농촌지역의 문제해결을 돕는 지역차원의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농촌지역에서 이동성 연방프로그램(Bekanntmachung LandMobil - Unterwegs in laendlichen Raeumen) : 농촌지역 이동성 개선을 위한 약 5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도움없이 교육 기관 및 문화·여가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동성 문제해결에 초점을 둠.
이동성, 디지털(Mobilitaet & Digitales)	법무·소비자보호부 (BMJ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웹데이-청(소)년이 미래 디지털 생활을 디자인하다(WebDays-Jugendliche gestalten die digitale Lebenswelt der Zukunft) : 청년들이 디지털화, 소비자 보호, 미디어 교육, 네트워크 정책 등에

사업부문	법적근거	내용
		<p>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통해 정치적 논의를 하도록 활동 촉진(프로젝트는 3년간 진행되며,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소비자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Algorithmen und Kuenstliche Intelligenz im Verbraucheralltag) : 15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소비자에게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위험성 정보를 알리고,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지니는지 인식하도록 정보 및 교육 제공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독일-국민 디지털 역량 모니터링(Digitales Deutschland-Monitoring zur Digitalkompetenz der Bevoelkerung) : 청년층의 디지털 역량에 관한 실증적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청년층과 다른 계층간의 디지털 역량에 대한 차이를 비교. 디지털 생활혁신 사무소(Innovationsbuero Digitales Leben) : 청년들의 디지털화 프로젝트 지원, 디지털 역량 지원 등 디지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정책개발
	교통·디지털 인프라부 (BMV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광대역 확장(Flaechendeckender Breitbandausbau) : 독일 내 모든 가정과 기업에 기가비트급 인터넷 연결을 구축하여 청년들의 사회 인프라와 서비스에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자전거 교통 강화 - 도로교통법 개정(StVO-Novelle) : 청년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보호 차선에서 일반적인 추월금지, 자전거 전용구역 설치 등이 시행됨.
환경 (Umwelt)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 (BMU)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보호 2030조치 프로그램 참여(Beteiligung am Massnahmenprogramm Klimaschutz 2030) : 기후보호 행동연대는 사회집단과 연방정부 간 기후보호정책 입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핵심 포럼운영 및 청년단체 대표등도 참여 기후보호를 위한 혁신기금 지원(Innovationsfonds Klimaschutz als Jugendpolitik) : 청소년, 견습생,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기후 보호 교육 및 활동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목적으로 프로젝트 비용 및 장학금 지원, 표창장 수여 등 국제기후분야 청(소)년 대표단(Jugenddelegierte im internationalen Klimaschutz) : 세계 기후회의를 위한 16~35세 사이의 청년대표 25명에서 40명이 기후보호와 관련된 분야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함. 직업선택 및 실무에서의 기후보호를 위한 ESF프로그램(ESF-Programm zum Klimaschutz in der beruflichen Orientierung und Praxis) : 이미 취업했거나 취업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보호에 관한 직업을 직접 체험해보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
	외교부 (A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봉사활동(Natur-Freiwilligendienst) : 18세부터 26세까지의 청년에게 6개월동안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국가들에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질공원 등을 대상으로 사무실 행정부터 공원의 수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사업부문	법적근거	내용
건강 (Gesundheit)	농림식품부 (BM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행동계획 생후 첫 1,000일 강화(Staerkung der ersten 1.000 Tage in Rahmen des Nationalen Aktionsplans) : 임신부터 만 2세까지의 기간, 이른바 1,000일에 청년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활방식의 변화를 위해 영양 권장사항 등을 알림.
	보건부 (BMG)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리터러시 동맹(Allianz fuer Gesundheitskompetenz) : 연방 보건부와 함께 건강역량 동맹을 창설, 직업학교 또는 대학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건강정보를 안내함. 건강한 식생활 및 운동증진 이니셔티브(Nationaler Aktionsplan) : 청년을 대상으로 운동촉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침을 제공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청년들이 더 많이 운동할 수 있도록 장려
	교육연구부 (BMBF)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구 지원 : 희귀질환 연구, 1차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 연합, 건강 연구 분야의 장기연구, 생명과학 분야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관한 담론 프로젝트 지원
유럽과 세계 (Europa & Die Welt)	경제협력개발부 (BMZ)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 콘테스트 "하나의 세계를 위한 당신의 노래"(Song Contest) : 10세에서 25세사이의 아동과 청소년, 청년들은 노래경연대회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의 성장과 교류 지원
	문화·미디어담당관 (B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프랑스 청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Schaffung einer deutsch-franzoesischen Erinnerung) : 청년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유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청소년 활동분야 전문 인력양성 추진(Offensive zur Fachkraeft equa lifizierung in der internationalen Jugendarbeit) : 전문가들이 직접 국제 경험을 하게 되면, 국제경험의 가치를 깨닫고 청소년에게 경험을 공유할 것임. 따라서 국제 청소년 활동분야에 종사자들을 지원하여 다양한 국제활동에 경험을 쌓고 활동을 지원
	내무부(BM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네트워크 노래 활동 프로그램(Peer-Education-Prrogramm und weitere Bildungsmaßnahmen des Netzwerks team GLOBAL) : 16세-27세까지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전국의 청소년과 청년이 세계화를 주제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및 노래활동 프로그램 운영

* 출처: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9). In gemeinsamer Verantwortung: Politik fuer, mit und von Jugend. Die Jugendstrategie der Bundersregierung. pp.33-144

(2) 독일 청년정책 서비스

독일 청년정책 서비스를 살펴보면, 아동수당(Kindergeld)은 독일에 거주하는 부모가 자녀를 출생한 달부터 18세까지 지급된다. 18세 이후에도 직업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직업훈련 자리가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 및 복무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2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025년 기준 아동수당 지원내용은 첫째 255유로, 둘째 510유로, 셋째 765유로, 넷째 1,020유로, 다섯째 1,275유로이며, 소득 및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은 저소득 부모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사회부조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5년 지급기준은 25세 미만이 대상이며, 편부모 월 600유로 이상을 받거나, 양부로 900유로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아동 1인당 6개월 동안 최대 297유로가 지급가능하다.

연방교육지원법(BAfoeG)은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생활보조금으로 구성된다. 10학년 부터 모든 형태의 정규학교 또는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 대상이다.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직업훈련지원금이 별도로 가능하며, 전체 비용 중 50%만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될 때 상환하면 된다. 지원내용으로는 2024/ 2025년 겨울학기 기준 최대 992유로를 지급하고, 10세 미만의 아동을 돌볼 경우 160유로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외에 주거공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추가비용 지급이 가능하다.

직업훈련지원금(Berufsausbildungsbeihilfe)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합한 직업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생활비, 통학비, 여행비, 작업복비, 돌봄비용 등을 지원하는 연방고용청의 재정지원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첫 번째 직업훈련에 대해 비용이 지급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두 번째 직업훈련에도 지원될 수 있다. 정부에서 인정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기간 동안 부모와 동거하지 않아야 한다. 18세 이상 청년 또는 결혼을 하였거나, 한 명의 아이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및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결정한다. 2024년 8월부터 매월 최대 822유로를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통학비 최대 475유로, 아동돌봄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

직업교육(Berufsausbildung)은 현장실습과 학교교육을 병행하는 이원화 직업교육 시스템으로 현장인력이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은 직업교육을 받는 청년으로 실습기간에 2024년 기준 월평균 1,133유로를 지급하며, 훈련직종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적용된다. 이외에 직업훈련 비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직업훈련지원금 및 주거수

당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취업지원 교육조치(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는 청년들이 자신의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자리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25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아직 찾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어떤 진로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확신이 없는 경우, 학교 졸업장이 없는 경우에 연방 고용청은 다양한 직업교육센터(BBW), 상공회의소 교육기관, 지역기관과 함께 청년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 역량평가 및 개별 지원계획 수립, 직업 방향설정 및 기초훈련(작업장 실습 또는 수업, 기초지식, 직업정보 공유), 인턴십 및 직업실습(기업 실습, 기술 습득), 심화 및 전환단계(훈련자리 및 입사지원, 면접 지원)등이다. 보통 10~12개월이 소요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최대 18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필요시 직업훈련지원금을 신청하여 생활비, 교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수당(Bürgergeld)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보장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재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당(Arbeitslosengeld II)에서 시민수당(Bürgergeld)으로 변경되었다. 기준은 15세 이상이며,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본인 또는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의 소득과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직업센터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2024년 기준 단독 거주자 또는 한부모는 563유로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 주거 및 난방비, 추가급여(임신부, 한부모, 장애 등)가 가능하다.

생계비 지원(Hilfe zum Lebensunterhalt)은 독일의 사회부조(Sozialhilfe)제도 중 하나로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최소 생계보장서비스이다(사회법전 제12권 제3항). 수급대상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영구적·일시적으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기준은 본인 소득과 자산, 부양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측정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청년에게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조사없이 초기에 긴급비용이 지원되며, 이후 부모나 청년에 대한 소득 및 자산을 추계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생계비 지원은 시민수당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

가족법상 부양의무(Familienrechtlicher Unterhaltsanspruch)는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돌봄으로써 자녀에게 제공해야 하는 부양의무가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의 근거가 된다. 고등법원에서 전체 생계비를 포함하여 주거, 건강, 사회적 필요, 여가활동, 학교 및 직업교육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부양금을 결정하며, 대상자가 직업교육(대학교, 직업학교 등)을 마치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경제적 청소년지원(Wirtschaftliche Jugendhilfe)은 청소년청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라 제공하는 청년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청년의 시설보호 및 그룹홈 등 위탁 양육비를 지급하고 의료지원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부모 또는 청년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비용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거수당(Wohngeld)은 임차인에게는 임대 보조금으로, 주택소유자에게는 비용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지원기준은 가구 구성원수, 임대료, 소득 등을 고려하여 주택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2025년 기준 성인 또는 한부모에게 최대 563유로가 지급되며, 한부모 및 임산부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독일 청년정책 현황

정책현황	설명	지원내용
1. 아동수당 (Kinderge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① 아동의 출생부터 18세까지 지급 ② 18세 이후에도 25세까지 지급 • 직업학교나 대학교에 다닐 경우 • 직업훈련 자리가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 및 복무를 할 경우 ※ 무직상태의 경우, 연방고용재단에 등록된 경우 21세까지 수령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내용(2025년 기준) • 첫째 아동: 매월 255유로 • 둘째 아동: 매월 510유로 • 셋째 아동: 매월 765유로 • 넷째 아동: 매월 1,020유로 • 다섯째 아동 : 매월 1,275유로 ※ 소득, 자산 고려 없음
2. 아동추가수당 (Kinderzuschl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저소득부모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사회부조(Hartz IV)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기준: 편부모 월 600유로 이상/ 양부모 900유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 최대 297유로 ※ 최대 6개월
3. 연방교육지원법 (BAfö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학생을 위한 장학금+생활보조금 - 기준: 10학년부턴 모든 형태의 정규학교 또는 대학 등에 다니는 사람 ※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직업훈련 지원금 별도수령 가능 - 상황: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 소득 발생 (대출금: 전체비용 중 상환의무가 있는 50%만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매월 최대 992유로(학업기간: 5년 이내) (부모와 함께 거주 671유로, 혼자 거주 992유로) • 10세 미만의 아동을 돌볼 경우 160유로 추가지급 ※ 기숙사나 거주공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경제적 지원 추가지급 가능

정책현황	설명	지원내용
4. 직업훈련지원금 (BAB)	- 내용: 학교 교육기관이 아닌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 - 기준: 첫 번째 등록하는 직업훈련에 가능하며, 18세 이상 청년 또는 결혼하였거나 또는 아이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822유로(기본 442, 숙박 380) • 필요시 통학비용 476유로까지 가능 • 아동을 돌볼 경우 추가비용 지급
5. 직업교육 (Berufsausbildung)	- 내용: 현장실습과 학교교육이 병행되어 현장인력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이원화 직업교육 시스템 - 기준: 직업교육을 받는 청년	- 지원 내용 • 실습기간에 월평균 1,133유로 급여(기업마다 상이) ※ 이외 직업훈련지원금 및 주거수당 지원
6. 취업지원교육조치 (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n)	- 내용: 아동청소년지원법 제62조에 따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지원 (2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아직 찾지 못했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어떤 진로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확신이 없는 경우, 학교 졸업장이 없는 경우에 지원)	- 지원 내용 • 참가비용 : 무료 • 참가기간 : 10~12개월(최대 18개월) • 프로그램 : 개별역량평가 및 개별 지원계획 수립, 직업 방향설정 및 기초훈련, 인턴십 및 직업실습, 심화 및 전환단계
7. 시민수당 (Bürgergeld) (전)실업급여 수당 (Arbeitslosengeld II)	- 내용: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재통합 지원 - 기준: 15세이상 청년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하루 최소 3시간 이상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 소득 및 자산 조사 후 지급	- 지원내용 • 급여 : 생활비+주거비+난방비+기타 • 청년 : 매월 563유로(2024년 기준) • 임신부, 한부모, 장애 등 추가지원
8. 생계비 지원 (Hilfe zum Lebensunterhalt)	- 내용: 스스로 생계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 기준: 본인 소득과 자산 산정, 부양부모·배우자 소득도 고려	- 지원 내용 • 청년: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조사 없이 초기에 지급 가능, 이후 부모나 청년에 대한 소득 및 자산을 추계하여 비용 추계
9. 가족법상 부양 의무 (Familienrechtlicher Unterhaltsanspruch)	- 내용: 부모는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돌봄으로써 자녀에게 부양을 제공,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불가능하거나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 - 기준: 아동·청소년, 청년이 다른 부모와 살거나 혼자 거주하는 경우 청구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금: 실제 금액은 고등법원에서 부양금 결정 ※ 고려 조건: 전체 생계비를 포함하여 주거, 건강, 사회적 필요, 여가활동, 학교, 직업 교육 비용 포함
10. 경제적 청소년 지원 (Wirtschaftliche Jugendhilfe)	- 내용: 직계가족의 돌봄이 가능하지 않을 때 청소년청은 생계비용 지원 - 기준: 시설보호 및 그 외 보호유형 등	- 지원 내용 • 생계에 필요한 비용(숙박, 의료, 위생, 일회성 비용 등) 전액 청소년청 지원
11. 주거수당 (Wohngeld)	- 내용: 임차인에게는 임대 보조금으로, 주택소유자에게는 비용 보조금으로 지원 - 기준: 가구 구성원수, 임대료, 소득 등 고려하여 주택수당 수령 여부 검토	- 지원 내용: 1~7단계 • 단계 및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름 (성인 및 한부모) : 563유로 (파트너와 함께 거주 성인) 506유로 (25세 미만/ 시설거주) 451유로 ※ 이외 주거수당 지급표 참조

* 출처: 홍문기(2024). 독일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정책 현황 및 쟁점. 국제사회보장리뷰, 31, p.23을 참조하여 재구성

4. 프랑스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³¹⁾

청년정책의 시작을 청년층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또는 직무의 도입으로 본다면 프랑스에서 청년정책의 출발은 19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년·가족정무차관(*secrétaire d'État*)직이 생겼고, 1947년에는 청년·예술·문학부(*ministre de la Jeunesse, des Arts et des Lettres*)가 신설되었다. 이후 청년업무는 주로 교육부(*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체육부와 단체활동(*vie associative*)부와 함께 이어져 오고 있다.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소속 및 명칭의 잦은 변경이 말해주듯, 프랑스 청년정책의 대상, 핵심 목표, 정책 수단은 계속 변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현재를 기점으로 최근 10년간 프랑스 청년정책의 변화와 2025년 현재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살피고, 청년정책의 지배구조, 즉 구상 및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구를 소개하였다. 이어 정책의 전달체계를 청년정책 실행기관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며, 마지막으로 주요한 청년정책을 나열하고 분석하였다.

1) 청년정책 법률 현황

프랑스에는 청년정책을 위한 특별법이나 기본법이 없다. 정부는 주로 시행령(*Décret*)과 관계 법률(*loi*)의 개정을 통해 청년 관련 기구를 설립하거나 정책을 도입한다. 첫째, 범정부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법적 기반은 매해 제정되는 재정법(예산법; 2025년 재정법 *loi de finances pour 2025*)이다. 법률의 별첨 자료 *Annexe*에는 범부처정책문건(*Documents de politique transversale: DPT*)이 수록되어 있는데, 2022년부터 교육부는 모든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지원정책(*politique en faveur de la jeunesse*)을 수록하고 있다. 둘째, 청년 관련 기구의 설립은 주로 시행령에 기반한다. 대표적으로 1982년 설립된 범부처청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³²⁾와 2016년에 발족한 청년정책자문위원회(*COJ*)³³⁾의 설립 근거는 모두 시행령에서 찾을 수 있다. 청년정책자문위원회(*COJ: Conseil d'orientation des politiques de jeunesse*)는 모든 청년

31) 이 절은 김상배(일하는시민연구소)가 작성하였음.

32) 범부처청년위원회 설립에 관한 1982년 4월 30일 시행령 82-367호(*Décret n° 82-367 du 30 avril 1982 portant création d'un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

33)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립에 관한 2016년 10월 12일 시행령 2016-1377호(*Décret n° 2016-1377 du 12 octobre 2016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d'orientation des politiques de jeunesse*)

정책을 평가 및 심의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행정자문기구이며, 국무총리 직속 기구이다. 셋째, 구체적인 청년정책은 별도의 시행령 또는 관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청년수당 정책인 청년참여계약(CEJ)은 2022년 재정법을 근거로 한 시행령을 통해 도입되었고, 3년간 한시적 형태로 노동법전에 수록되었다. 이후 2023년 말 완전고용법(Loi pour le plein emploi)의 제정으로 노동법전이 개정되면서 항구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재정법에 수록된 청년지원정책을 살펴보면, 2022년과 2025년의 범부처정책문건 청년지원정책 편이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지원정책은 5개 분야로 나뉘는데, 2025년을 기준으로 <표 III-13>과 같이 분류한다. 청년지원정책은 총 16개의 항목으로 나뉘며, 항목별로 단수 혹은 복수의 세부정책(프로그램)이 담겨있다. 2025년 가동되는 세부정책은 총 41개이며, 개별 세부정책이 복수의 항목에 속할 수 있다.

표 III-13. 프랑스 총괄 청년지원정책 분류(2025년 예산안 기준)

분야	내용
청년의 체육, 문화, 시민사회 활동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시민의식 함양을 촉진하는 활동 ◆ 해외 경험(학업, 연수, 직업훈련 등) 지원 ◆ 공평한 문화생활 기회 보장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 ◆ 모든 청년의 체육활동 장려
교육, 진로안내,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최우선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졸업 시 필요한 공통 핵심 지식과 역량을 습득하도록 지도 ◆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정규교육 과정 졸업 시 기대되는 역량 수준에 도달하고 해당 졸업장을 취득하도록 지도 ◆ 학업 지속을 장려하고 졸업장 취득을 지원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교 졸업 후 취업률 개선 ◆ 대학 졸업 후 취업률 개선 ◆ 견습제도 및 교대형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의 취업 증진 ◆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취업 증진
평등한 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회 계층에게 균등한 대학교육(고등) 이수 기회 보장 ◆ 사법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사회 동화 촉진 ◆ 맞춤형 직업 훈련 제도를 통해 청년층을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및 대학 생활 시기 건강과 삶의 질 증진 ◆ 모든 일상 활동에서 청년을 안전하게 보호

* 출처: 교육부 (2024), "Politique en faveur de la jeunesse", 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 주: 교대형 직업훈련(formation en alternance)은 구직자 또는 학생이 기업에서 노동을 수행하며 동시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노동계약을 일컫는다. 교대형 직업훈련에는 견습계약(contrat d'apprentissage)과 전문화 계약(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 등이 포함된다. 견습계약은 16세 이상 29세 이하의 학생이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며, 전문화계약은 학생뿐 아니라 구직자, 최저생계소득자 등 다양한 연령층이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다. 두 계약은 모두 법정 최저임금(SMIC) 이하의 임금 기준을 적용받는다(노동부 홈페이지³⁴⁾).

각각의 정책은 대부분 별도의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이자 동행서비스는 현행 노동법전(code du travail)에 수록된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업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15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청년은 국가가 마련한 취업과 자립을 위한 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Tout jeune de seize à vingt-cinq ans révolus en difficulté et confronté à un risque d'exclusion professionnelle a droit à un accompagnement vers l'emploi et l'autonomie, organisé par l'Etat.

- Article L5131-3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청년 즉 취업과 자립을 위한 동행서비스의 계약을 맺고 해당 여정에 참여한 모든 청년 또는 프랑스로동(고용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청년은 국가가 지급하고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한시적인 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Afin de favoriser son insertion professionnelle, tout jeune mentionné à l'article L. 5131-3 qui s'engage dans un parcours contractualisé d'accompagnement vers l'emploi et l'autonomie mentionné à l'article L. 5131-4 ou qui bénéficie d'un suivi par l'opérateur France Travail, à l'exclusion des jeunes mentionnés à l'article L. 5131-6, peut percevoir une allocation ponctuelle versée par l'Etat et modulable en fonction de la situation de l'intéressé.

- Article L5131-5

L.5131-3 조항에서 언급한 동행서비스는 L.5411-6에서 언급한 계약이 규정한 집중동행서비스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청년참여계약'으로 명명한다. 이 계약은 청년과 함께 작성되며, 청년의 상황 파악 시 확인한 그의 요구에 맞게 작성된다.

L'accompagnement mentionné à l'article L. 5131-3 peut également prendre la forme d'un accompagnement intensif prévu par le contrat mentionné à l'article L. 5411-6, qui est alors dénommé "contrat d'engagement jeune". Ce contrat est élaboré avec le jeune et adapté à ses besoins identifiés lors d'un diagnostic.

- Article L5131-6

34) <https://travail-emploi.gouv.fr/formation-en-alternance/apprentissage-et-formation-en-alternance>

2) 청년정책 행정부서

(1) 행정기관 및 기구

2025년 현재 청년정책부 담당 정부 부처는 체육·청년·단체활동부(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et de la Vie associative)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에서 청년 업무는 1947년 처음으로 문화부에 배정되었다(당시 부 명칭은 청년·예술·문학부 Ministère de la Jeunesse, des Arts et Lettres). 이후 주로 교육부가 청년 업무와 체육 업무를 담당했다. 1956년의 교육·청년·체육부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à la Jeunesse et aux Sports)가 그 예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9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현재 청년 업무는 교육부에서 벗어나 체육·청년·단체활동부로 분리되었고, 별도의 정무차관을 두고 있지 않다.

담당 부처 및 소속의 잦은 변경에도 불구하고 청년국을 포함한 상설 및 비상설 기구가 청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먼저, 정부는 1967년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행정 기구로 청년국(Direction de la jeunesse)을 신설했다³⁵⁾. 당시 청년국이 속한 부는 청년·체육부(Ministèr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였다. 이후 소속 부처와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청년국은 유지되었다. 현재 이 국의 명칭은 1981년 도입된 청년·평생교육·단체활동국(direction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이하 DJEPVA)³⁶⁾이다.

1982년 정부는 청년정책의 부처 간 조율을 위해 범부처청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 이하 CIJ)³⁷⁾를 신설했다. 비상설기구인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또는 청년부 장관³⁸⁾이 주재한다. 청년정책의 대상은 좁게는 16세 이상 25세 미만, 넓게는 3세 이상 30세 미만 인구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에는 교육부, 문화부, 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의 협력 및 조정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4년 정부는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의 권고³⁹⁾를 수용하여 당시 체

35) https://francearchives.gouv.fr/fr/authorityrecord/Fran_NP_005967

36) 교육부 또는 청년부에 속하며, 해당 장관의 지휘 및 통제를 받지만, 독립적인 행정기관이다. 국장은 임명직 고위공무원으로 해당 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함. 단, 장차관과 달리 독자적인 정치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함.

37) Décret n° 82-367 du 30 avril 1982 portant création d'un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범부처 청년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행령)

38) 청년국이 속한 부의 장관을 의미한다.

39) 프랑스 헌법을 근거로 한 제 3의 회합기구(하원, 상원에 이은)인 사회경제환경위원회(Conseil économique, sociale

육·청년·평생교육·단체활동부⁴⁰)(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에 범정부청년조정관(délégué interministériel à la jeunesse 이하 DIJ) 직을 신설했다. 범부처청년위원회(CIJ)의 상설 형태인 직책이다. 이 직책은 당시 청년국(DJEPVA) 국장이 겸했다⁴¹). 그 결과 청년국(DJEPVA) 국장은 해당 부처 장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지만, 조정관(DIJ)으로서 국무총리의 지휘 체계하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정리하면, 프랑스 정부 조직 개편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 청년정책은 교육부, 노동부, 문화부, 체육부, 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역으로 청년정책이 뚜렷한 정체성을 지니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약 80년에 가까운 청년정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는 계속 바뀌었다. 하지만 1967년 청년국(현재 DJEPVA)이 신설되고, 1982년 범부처청년위원회(CIJ)가 설립되면서 중앙정부의 청년 관련 업무는 일관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최근 범정부청년조정관(DIJ) 직이 도입되면서 청년정책을 둘러싼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가 원활해지고, 자문기구와 행정기관 사이의 유기적 연결이 가능해졌다. 특히, 조정관 직책의 신설은 2년 후 2016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자문위(Conseil d'orientation des politiques de jeunesse 이하 COJ)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2) 자문기구: 국무총리실 직속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COJ)는 2016년 시행령⁴²)으로 설치된 행정자문기구로, 기존 세 기구를 통합한 것이다(전국평생교육및청년자문위원회 Conseil national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jeunesse CNEPJ, 전국청년자문위원회 Conseil national de la jeunesse CNJ, 전국미션로깅자문위원회 Conseil national des missions locales

et environnemental)는 2012년 6월 해당 권고를 담은 의견서(Droits formels/droits réels: améliorer le recours aux droits sociaux des jeunes)를 공식채택하고 관보에 게재함. 2014년 1월 해당 직책이 신설되자 CESE는 이를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함(<https://www.lecese.fr/presse/communiqués/creation-du-poste-de-délégué-interministériel-la-jeunesse-le-conseil-economique-social-et-environnemental-ces>).

40) 단체활동(vie associative)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활동을 지칭하며, 자원봉사활동, 시민단체활동 등이 이에 포함됨.

41) 2022년 시행령(décret n°2024-1025 du 12 novembre 2024)으로 두 직책이 분리된 적이 있지만, 현재는 통합된 상태임.

42) Décret n° 2016-1377 du 12 octobre 2016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d'orientation des politiques de jeunesse(청년정책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행령)

CNM). 즉, 프랑스의 청년 관련 모든 자문위원회를 통합한 것이다.

COJ의 주요 기능은 16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 평생교육, 청년 주체 간 사회적 대화를 조정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COJ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주요 임무⁴³⁾를 지닌다.

- 조정 및 대화: 청년정책, 청년취업지원, 청년교육정책을 조정하고, 주체 간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며,
- 전문적인 자문: 청년정책 관련 법률안, 규제 등에 관한 자문하며,
- 평가: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정부에 제안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위원회는 16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평생교육 그리고 정책 당사자 사이의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공공정책의 조율 및 평가에 기여한다.

국무총리, 청년 담당 장관 또는 여타 정부위원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는 청년, 평생교육, 청년의 취업 관련 정책 분야의 공익 문제를 심의한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률안과 규정문(시행령, 행정명령, 규칙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청년, 평생교육, 취업 관련 공공정책에 관하여 모든 제안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

- 청년정책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행령, 1조

Le Conseil d'orientation des politiques de jeunesse, placé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ontribue à la coordination et à l'é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relatives à la jeunesse de 16 à 30 ans, à l'éducation populaire et au dialogue entre les acteurs concernés par ces politiques.

A la demande du Premier ministre, du ministre chargé de la jeunesse ou de tout autre membre du Gouvernement, le conseil examine toute question d'intérêt général en matière de politique de jeunesse, d'éducation populaire ou relative à l'insertion des jeunes et peut être consulté sur les projets de loi et de textes réglementaires relatifs à ces sujets.

Le conseil peut adresser au Gouvernement toutes propositions relatives aux politiques publiques de jeunesse, d'éducation populaire et d'insertion des jeunes.

- Article 1, Décret n° 2016-1377 du 12 octobre 2016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d'orientation des politiques de jeunes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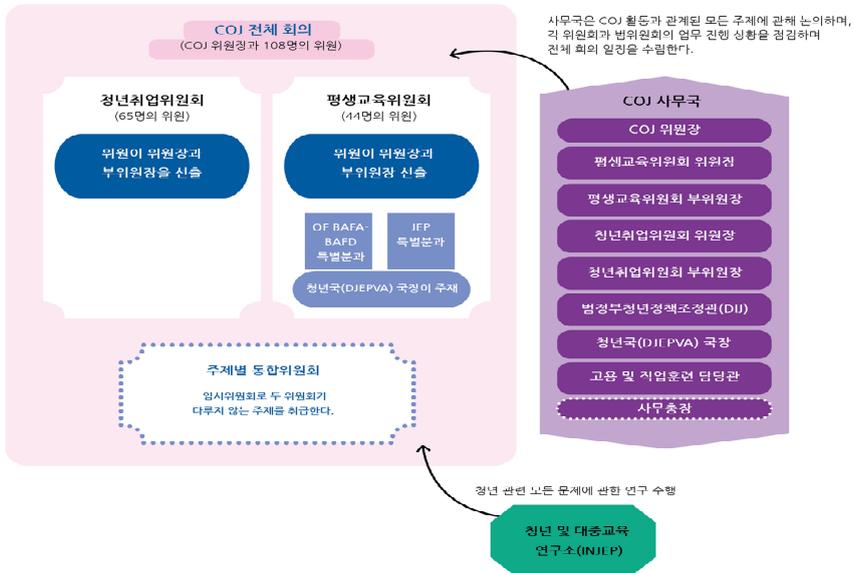
43) 체육·청년·단체활동부 공식 홈페이지 참조. 2025년 8월 열람. <https://www.jeunes.gouv.fr/COJ/mission-et-organisation-du-coj-658>.

(3) COJ와 DJEPVA의 조직 및 지배구조

청년정책자문위(COJ)는 청년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시행령을 통해 임명하는 위원장(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을 포함하여 2025년 현재 109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1명은 직무상 당연직 위원이며, 나머지 위원은 청년부 장관이 행정명령(arrêtés)으로 임명한다. COJ에는 6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취업분과위원회(commission de l'insertion des jeunes)와 4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생교육분과위원회(commission de l'éducation populaire)가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내부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COJ의 의사결정은 사무국(Bureau)을 통해 이뤄지며, 사무국은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DJEPVA 국장, 조정관(DIJ), 노동부 소속 고용및직업훈련담당총괄국장 (DGEFP) 그리고 COJ 사무총장(Secrétariat général)으로 구성된다.

COJ 위원의 수는 현재 108명이지만, 이는 확정된 수가 아니다. 시행령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직위, 기구, 기관, 분야를 명시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조직구조에서 겹침이 발생할 수 있어 구성 인원의 수가 유동적이다. 예를 들어, 현재 청년 조정관(DIJ)과 청년국(DJEPVA) 국장은 1인이지만, 상황에 따라 2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노동·보건·연대·가족부(Ministère du Travail, de la Santé, des Solidarités et des Familles)에는 명칭처럼 다양한 업무가 통합되어 있고, 오랜 기간 분리되어 있던 국민교육부와 고등교육부가 현재는 하나의 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이다. 따라서 국가 측 위원의 변화에 따라 COJ 위원 수는 변할 수 있다⁴⁴⁾. COJ의 조직구성은 아래와 같은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그림 III-16).

44) 이상의 내용은 2025년 9월 8일 국회(하원 또는 의회)가 국무총리 불신임안을 가결하기 전의 정부 조직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임.



* 출처: 체육·청년·단체활동부 공식 홈페이지, 2025년 9월 확인. <https://www.jeunes.gouv.fr/COJ/mission-et-organisation-du-coj-658>

그림 III-16. 프랑스의 청년정책자문위의 조직구조

시행령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표 III-14). 시행령 3조(Article 3)에 따르면, COJ 위원은 크게 8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국가 측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청년부 장관이 장관명령(arrêté du ministre)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며, 첫 차례 연임할 수 있다(Article 5).

표 III-14.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분야	인원	내용
국가 측 위원	10인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부처청년정책조정관과 청년국 국장 관련 부서 장관(연대, 문화, 여성권, 지역통합, 교육, 고용, 고등교육, 내무, 법무, 주택, 보건, 해외령, 농업)
지자체 위원	7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관련 7개 기구의 의장(예를 들면, 프랑스 시장단 회장)
청년기구 및 단체	47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청년자문위(conseils régionaux de jeunesse) 대표 12인, 전국고등학생 위원회(Conseil national à la vie lycéenne) 대표 2인 등 시행령이 명시하고 있는 각종 청년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가 지명한 자로 구성됨. 단, 임명일을 기준으로 위원의 연령은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청년 및 평생교육 운동단체	1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의 청년운동 및 평생교육 운동 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가 지명한 자(견습생, 학부모, 가족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
청년취업	1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션로깅, 프랑스노동(고용센터) 등 11개의 조직의 대표
노사	1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노총이 지명한 자, 3개 군소 노동조합(UNSA, FSU, Solidaire)이 지명한 자, 3개 사용자 단체의 대표, 4개 군소 사용자 단체의 대표로 구성됨
관계 회원	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8개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의 대표
전문가	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및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 2인

* 출처: 시행령을 참조하여 저자 직접 작성

프랑스 청년정책자문위원회(COJ) 구성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민간 부문의 청년 및 평생교육 조직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스무 개가 넘는 청년 단체에는 고등학생단체, 견습생협회도 포함되어 있으며, 활동가가 아닌 일반 미션로깅 이용자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둘째, 청년 단체 몫 대표 위원의 연령을 3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최소 47인의 위원은 30세 미만이다. 셋째, 정부 관계 부처 장관 또는 대리인을 비롯하여, 지자체 대표와 청년정책과 관련 각종 사회보장 기관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시 말해 청년 관련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 대표가 참여한다. 넷째, 노사 대표가 참여한다. 프랑스 전국전직종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5개의 노동조합과 3개의 사용자 단체뿐 아니라 나머지 7개의 노사단체 대표자(또는 지명한 자)가 위원이 된다. 이는 사회적 대화 주체로서 노사의 대표성을 상징한다.

COJ와 달리, DJEPVA는 중앙정부의 체육·청년·평생교육·단체활동부 소속 기관이다. 청년정책 실행기관이며, 청년업무 이외의 체육활동과 단체활동 업무도 관할 한다. 2024년 기준, 9억 110만 유로(약 1조 45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소속 직원은 136명이다

(DJEPVA, 2025). 앞서 언급했듯이, 국장은 범부처청년조정관(DIJ)직을 겸하고 있다. DJEPVA 소속 3인은 청년, 체육, 단체활동 관련 외부의 자문기구에서 사무총장직을 수행한다. COJ 사무국 사무총장 역시 DJEPVA의 범부처청년단체활동정책부(Sous-direction des politiques interministérielles de jeunesse et de vie associative) 청년정책과(Bureau des politiques de jeunesse) 과장(2025년 9월 현재 Pierre MONTAUDON)이다.

DJEPVA의 소속 부 또는 기관은 총 다섯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범부처청년단체활동부: 범부처 청년정책과 자원봉사활동, 시민단체활동을 조정한다. 청년의 유럽 내 이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국제협력을 도모한다.
- 평생교육부: 정규교육기관 외 기관에 접수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 개발에 참여한다.
- 인적자원과 재원 관리 임무 수행
- 디지털, 혁신, 이용자 관계 임무: 두 국영 스타트업(startups d'État)인 <jeveuxaider.gov.fr>과 <Data subvention>을 관리한다. 직업 실험실 JEPVA를 운영한다.
- 전국청년 및 대중교육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éducation populaire; 이하 INJEP): DJEPVA는 산하기관으로 프랑스 청년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이 연구소는 COJ의 활동을 지원한다.

3) 청년정책 전달체계

프랑스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보전달을 주 기능으로 하는 프랑스 청년정보망(네트워크)이 있으며, 청년을 직접 면담하며 학업, 진로, 직업교육, 취업 등을 위한 동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션로깅(Mission locale)이 있다.

(1) 프랑스청년정보(Info-Jeunes France)

프랑스청년정보(Info-Jeunes France)가 관리하는 망(Reseau)은 수도 파리에만 설치되어 있는 전국 수준의 청년문서정보센터(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 이하 CIDJ)와 지역 단위의 지역청년정보센터(Centre Régional Information Jeunesse; 이하 CRIJ) 그리고 프랑스 전역에 설치된 각종 청년정보시설(Structure Info

Jeunes; 이하 SIJ)를 아우르는 연결망을 뜻한다. 2023년 기준 프랑스 전역에 1100여 개의 청년정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시설물 또는 사무실에 ‘청년정보(Info Jeunes)’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뿐이며, 명칭 사용권의 유효기간은 6년이다.

이들은 위계관계 또는 본점-지점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병렬관계를 유지한다. 지역(Département)에 설치된 청년정보센터(Centre d'Information Jeunesse), 기초자치단체(commune)에 설치된 청년정보사무실(Bureau Information Jeunesse), 청년정보거점(Point Information Jeunesse) 등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년정보시설(Structure info jeune)은 청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취급하는 정보는 직업, 학업, 기업에서의 인턴(stage) 또는 여름 아르바이트(jobs d'été)⁴⁵⁾, 장학금, 학생 주택⁴⁶⁾, 어학연수, 진로, 직업훈련, 교대형 직업훈련(표 III-13), 해외 유학 및 취업, 창업, 건강, 일상의 문제 등 매우 방대하다. 예를 들어, 문서 출력,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을 제공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도한다.

청년의 범위도 넓다. 통상 프랑스 청년정책 대상의 주된 연령층은 16세 이상 25세 미만이지만, 청년정보시설을 방문하는 청년은 넓게는 12세 이상 30세 미만이다. 단, 시설마다 연령 차이가 존재한다. 즉, 지역이나 시설마다 다르지만, 중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대학생, 졸업자, 청년구직자 등 폭넓은 연령층을 지원한다.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전국 1,100개의 시설 및 사무실에 2,5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⁴⁷⁾, 연간 방문자 수는 약 3백만 명이다. 채용의 출처는 다양하다. 청년부의 청년국(DJEPVA), 문화부, 내무부, 가족수당창구(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CNAF) 그리고 국토통합처(Agence national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이다.

청년정보시설 중 청년문서정보센터(CID)는 가장 오래된 청년정보 중앙기관이다. 68혁명 이후인 1969년 설치된 기관으로 수도인 파리에 자리 잡고 있다. 파리에는 두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곳은 본사이며, 다른 한 곳은 수도권지역(Île-de-France) 청년문서

45) 9월 학기제이기 때문에 2달 이상인 여름 방학 동안 학생들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직업경험을 쌓고, 재학생인 학교와 청년문서정보센터가 일자리를 소개함.
46) 학생기숙사의 운영 주체는 개별 대학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다(Les Crous).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가 보증하고 학생에게만 임대하는 민간주택이 존재함.
47) 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1jeune1solution.gouv.fr/articles/info-jeunes>)에 따르면 2천 5백 명이지만, 청년부 홈페이지(<https://www.jeunes.gouv.fr/l-information-des-jeunes-304>)의 정보에 따르면, 근무자의 수는 2천 명임.

정보센터이다. 각각 약 50명과 20명이 근무한다⁴⁸⁾.

1971년부터는 지역청년정보센터(CRIJ)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2008년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는 조직이 생겨났으며, 이 조직이 2020년 전국청년정보네트워크(réseau national Infos Jeunes)가 된다⁴⁹⁾. 현재 전국에는 총 18개의 지역청년정보센터(CRIJ)가 광역별(région)로 설치되어 있다. 작은 단위 지역공동체에도 명칭은 다르지만 청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실 또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임무는 청년정보문서센터(CIDJ)와 동일하다.

종합하면, 좁게는 16세-24세, 넓게는 12세-29세의 청소년 및 청년에게 다양한 종류의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프랑스 전역에 약 1,10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청년정보시설(SIJ) 또는 프랑스청년정보연결망이라 한다. 이 시설의 주 기능은 정보제공이기 때문에 필요시 방문한 청년을 미션로깅으로 안내한다.

(2) 미션로깅(Mission locale)⁵⁰⁾

미션로깅(Mission locale; 이하 ML)은 청년의 취업과 자립을 위한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랑스 청년 고용정책의 동맥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국에 426개의 시설과 약 6,800개의 접수처가 설치되어 있으며, 근무 인원은 약 1만5천 명이다. 청년문서정보센터(CIDI)가 60년대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며 도입된 청년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었다면, 미션로깅(ML)은 70년대 경제위기 이후 치솟은 청년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취업지원 기관이었다.

미션로깅의 법적 기반은 1982년 행정명령⁵¹⁾이다. 이를 반영한 노동법전 5314조 (Article L5314조 1, 2)는 이 기관이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공공서비스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에서 16세 이상 25세 미만 청년층의 일자리, 주거, 교통 등의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48) <https://www.cidj.com/decouvrir-le-cidj/notre-equipe>

49) <https://www.cidj.com/reseau-info-jeunes/le-reseau-ij-en-france/presentation-du-reseau-national>

50) 공식명칭은 Les Mission locales pour l'insertion professionnelle et sociale des jeunes이며,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취업을 위한 지역 전담반의 의미를 지님.

51) Ordonnance n°82-273 du 26 mars 1982 relative aux mesures destinées à assurer aux jeunes de seize à dix-huit ans une qualification professionnelle et à faciliter leur insertion sociale.

청년들의 사회 및 직업적 편입을 위한 미션 로깅은 일자리 공공서비스의 차원에서 16세 이상 25세 미만 청년들의 문제, 일자리 찾기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방문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정규교육, 직업훈련교육, 취업에 이르기까지 동반 및 동행의 업무를 수행한다.

Les missions locales pour l'insertion professionnelle et sociale des jeunes, dans le cadre de leur mission de service public pour l'emploi, ont pour objet d'aider les jeunes de seize à vingt-cinq ans révolus à résoudre l'ensemble des problèmes que pose leur insertion professionnelle et sociale en assurant des fonctions d'accueil, d'information, d'orientation et d'accompagnement à l'accès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initiale ou continue, ou à un emploi.(...)

- Article L5314-2

미션로깅의 임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⁵²⁾. 첫째, 청년의 취업을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우며, 이들에게 정보 제공, 상담 및 지도 그리고 동행한다. 둘째, 지역 협력업체(기업)와의 관계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정보를 수집한다. 셋째, 구직 중인 청년뿐 아니라 직업선택, 직업훈련과정, 건강, 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한다. 넷째, 구직 청년에게는 일자리 알선, 취업 중인 청년에게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 지원한다. 다섯째, 상담 과정을 통해, 취업의 장애물을 찾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돕는다.

2024년 기준 미션로깅에서 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청년은 약 110만명이며, 이중 약 43만 명은 첫 방문이었다. 약 24만 명의 청년이 계약형개인맞춤여정(PACEA)에 참여했으며, 약 20만 명이 청년참여계약(CEJ)을 체결했다. 이 기관은 한 해 평균 약 110만 명에게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같은 해 약 53만 명의 청년이 취업했으며, 약 13만 명은 직업훈련기관에 입학했다. 교대형 직업훈련(alternance) 계약을 체결한 청년은 5만2천명이었다.

미션로깅의 재정은 2024년 10억5천만 유로(약 1조7천억원)였다. 2023년 10억7천만 유로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2020년 7억6500만유로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셈이다⁵³⁾. 재원은 주로 국가(중앙정부)이다. 광역단체(région, département)가 일부 지원하고, 기

52) 노동부 홈페이지(<https://travail-emploi.gouv.fr/les-missions-locales>)에서 발췌.

53) 이러한 이유로 현 정부는 건축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미션로깅에 대한 지원금 삭감을 예고하고 있음(상원Senat에서의 대정부질문 Question écrite n°04608 - 17e législature).

초자치단체(commune)는 주로 현물이나 장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간협력공공기관(ÉPCI)과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Plus)도 미션로깅의 재정을 지원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총 재정의 74%를 국가가 부담했다(UNML, 2024).

(3) 프랑스노동(France Travail; 옛 고용센터 Pôle Emploi)

전 연령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일자리를 알선하며, 직업훈련기관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기관이다. 즉, 프랑스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전국에 9백 여개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무자 수는 5만4천 명에 달한다. 공공기관이지만 운영비용의 약 70%를 실업보험 관리공단(UNEDIC)이 부담한다. 매년 실업보험료 수입액의 11%를 프랑스노동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노동은 16세 이상 25세 미만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일자리 및 직업훈련을 알선할 수 있다. 따라서 역할이 미션로깅의 임무와 중첩된다. 청년에게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인 미션로깅이 적합한 기관이지만, 접근성 면에서는 프랑스노동이 뛰어나다.

2022년 청년참여계약 도입 이후 프랑스노동과 미션로깅은 상호보완관계로 변모했다. 두 가지 변화 때문이다. 첫째, 청년에게 일정의 소득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당사자는 오직 미션로깅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2022년부터 시행된 청년참여계약(CEJ)의 당사자는 프랑스노동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프랑스노동이 미션로깅 임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 것이다. 청년층에게는 공공고용서비스의 공간접근성이 확대한 것이다. 둘째, 2025년 이후 청년참여계약을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청년이 반드시 프랑스노동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2023년 말 제정된 완전고용법을 근거로 한다⁵⁴⁾. 2024년까지 구직 및 은둔 청년은 프랑스노동에 구직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미션로깅을 방문해 청년참여계약이나 계약형태별맞춤형동행여정(PACEA)에 참여하여 일정 수당을 수급할 수 있었지만, 2025년 1월부터는 프랑스노동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해당 청년 역시 일반 구직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프랑스노동의 관리 및 감독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54) 법률의 공식 명칭은 LOI n° 2023-1196 du 18 décembre 2023 pour le plein emploi이며, 조항은 1조(Article 1)임.

지금까지 살펴본 청년정책 수행기관인 청년정보, 미션로깅 그리고 프랑스노동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III-15).

표 III-15. 청년정보, 미션로깅, 고용센터 비교

	청년정보 (Info Jeune)	미션로깅 (Mission locale)	프랑스노동 (France Travail)
대상	▪ 11세-29세(단, 시설마다 다름)	▪ 16세-25세 미만 청년	▪ 전체 구직자
주요 임무	▪ 청소년 및 청년의 다목적 문화 공간이자 정보제공기관(학업, 여가, 해외체류, 주거 등)	▪ 청년세대의 사회편입 지원(일자리, 보건, 주거, 학업 등)	▪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기관 알선, 실업급여 지급, 기업의 채용 촉진
운영구조	▪ 지방분산형	▪ 중앙집중형이지만 지점별 자율성 보장	▪ 중앙집중형
재정구조	▪ 시설별 상이. ▪ 청년국(DJEPVA), 문화부, 내무부, 가족수당(CNAF), 국토통합처(ANCT)이 지원	▪ 약 10억5천만 유로(약 1조 7000억 원) - 70%까지 국가재정 - 30%는 지방정부재정 - 유럽사회기금	▪ 약 70억 유로(약 11조 원). - 실업보험기금이 운영자금의 약 70%를 지원 - 나머지는 국가재정으로 지원
직원 수	▪ 약 2 500명	▪ 약 15 000명	▪ 54 000명
지점 수	▪ 1100개(단, 지점이 아닌 회원)	▪ 426개	▪ 896개

*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자료를 인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4) 청년정책 대표사업

프랑스의 구체적인 청년정책은 <표 III-13>에 열거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사업은 제외하고, 성인청년이 주된 정책 대상인 청년 고용정책과 시민참여유도 정책을 살펴보았다.

(1) 청년고용정책

청년층 일자리정책은 2020년 도입된 ‘1청년-1해결책(1 Jeune-1 Solution)’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회계감사원 보고서⁵⁵⁾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 계획에 배정된 금액은 97억 유로(약 15조 5천억원)였다. 2025년 현재 큰 변화없이 유지 중이다.

55) Cour des comptes, « Rapport public annuel 2022 »

표 III-16. 1청년-1해결책(1 jeune 1 solution)

<p>취업 경험 쌓기 (Faciliter l'entrée dans la vie professionnel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습생 및 전문화(professionnalisation) 계약에 대한 지원 ▪ 다양한 사회활동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임무제공 ▪ 지역 단위 스포츠 협회 내 일자리 창출
<p>미래의 직업 및 업종에 대한 교육 및 지도 (Orienter et former des jeunes vers les secteurs et métiers d'aveni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개의 새로운 교육기회 제공 ▪ 요양, 보건분야 교육 증설 ▪ 디지털 교육 ▪ 18세 미만 교육 이탈자에 대한 개별 지도
<p>맞춤형 동행 서비스 (Accompagner plus particulièrement les jeunes éloignés de l'emploi en proposant des parcours d'insertion sur mesu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계약: Parcours Emploi Compétences (PEC) et Contrat Initiative Emploi (CIE) ▪ 청년보장(현재는 청년참여계약), 취업과 자립을 위한 계약된 동반 여정 (parcours contractualisé d'accompagnement vers l'emploi et l'autonomie (PACEA), 집중청년동행서비스 accompagnement intensif jeunes 두배로 확장

* 출처: 노동부홈페이지(Ministère du Travail, du Plein emploi et de l'Insertion) 참조 저자 직접 작성
<https://travail-emploi.gouv.fr/le-ministere-en-action/relance-activite/plan-1jeune-1solution/>

이중 청년을 위한 취업정책은 세 가지 분야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이는 아래의 도식처럼 표현할 수 있다. 세 분야는 직업훈련교육, 동행서비스 그리고 고용촉진 분야이다. 최근 정부는 이중 직업훈련과 동행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직업훈련교육 부문에는 네 가지 주요 정책 및 정책수행 기관이 있다. 능력개발투자계획(Plan d'Investissement dans les Compétences; 이하 PIC)이 대표적인 계획이다. 동행서비스 부문에는 미션로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 중이다. 고용촉진 정책에는 지원계약 형태가 남아 있다. 도식에서 볼 수 있듯, 몇몇 개별 조치 및 정책은 두 부문에 걸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두번째기회 학교(École de la deuxième chance; 이하 E2C)는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그리고 동행서비스 성격을 모두 갖춘 정책이다.

② 직업훈련+동행서비스

고용추진기관(Établissement pour l'insertion dans l'emploi; 이하 EPIDE)이 있다⁵⁷⁾. 17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 중 사회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무직자 또는 직업능력이 취약한 자들의 취업을 돕는 기관이다. 주로 니트층 청년과 약 8개월 정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동행하며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기관이다. 전국에 약 20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시설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2005년 설립 당시에는 국방부 소속 청년취업지원기관이었지만⁵⁸⁾, 현재는 노동부 소속이다. 참여하는 청년은 월 460유로의 수당을 받는다. 금액은 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하는 성실도에 따라 달라지며, 임무를 완수할 경우 소정의 상여금도 지급된다. 수당과 상여금의 합은 월 561.68유로(약 90만원)로 제한된다.

③ 동행서비스

여기에 해당하는 정책은 미션로깅이 실행하는 계약형개인맞춤여정(PACEA)과 프랑스노동(옛 고용센터)이 시행 중인 청년개별동행(Accompagnement individualisé des jeunes; 이하 AIJ) 프로그램이 있으며, 두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청년참여계약(CEJ)이 있다. 각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과 자립을 위한 계약형 동반여정(Parcours d'Accompagnement Contractualisé vers l'Emploi et l'Autonomie; 이하 PACEA)이 있다. 청년은 미션로깅과 최대 2년간 유지되는 계약을 맺고, 기간 동안 취업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원이 제안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에는 직업훈련교육, 시민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교대형 직업훈련 등이 포함된다. 계약을 체결한 청년은 소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5년 현재 월 최대 수당은 552유로(약 89만원)이지만, 1년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총액은 3,314유로(552유로의 6배)로 제한된다. 또한, 인턴(stage)이나 교대형 직업훈련계약을 통한 소득이 월 300유로 미만일 때만 지급할 수 있다. PACEA는 2017년 청년보장(Garantie Jeunes)과 함께 도입되었다. 청년보장은 2022년 청년참여계약으로 변경되었으며, PACEA는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57) 이하의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한 것임(<https://travail-emploi.gouv.fr/letablissement-pour-linsertion-dans-lemploi-epide>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58) 프랑스는 1997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16세 이상 25세 미만의 모든 청년(남녀)은 정해진 1일 7시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 따라서 이 기회를 통해 청년의 학력사항, 취업유무, 가족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음.

둘째, 프랑스노동이 주체가 되어 구직자에게 개인맞춤형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청년개별동행(Accompagnement individualisé des jeunes; 이하 AIJ)이다. 2020년 1청년-1해결책 도입 당시 청년을 위한 집중동행 서비스(Accompagnement intensif des Jeunes)였지만, 2022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프랑스노동은 공식적인 고용고용서비스 기관으로 전 구직자에게 일자리 알선 및 취업능력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AIJ는 16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 구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정책이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다른 동행서비스와 다르다. 먼저, 실행주체가 프랑스노동인만큼 해당 청년은 반드시 구직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적극적 구직활동 중이며 즉시 취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 두 번째 차이는 금전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2022년 4월 이전 AIJ가 1청년-1해결책의 일환으로 시행될 때는 월 최대 497.01유로(약 80만원)를 지급했으며, 총 지급액은 6개월동안 1491.03유로로 제한되었다.

셋째, 미션로깅과 프랑스노동이 동시에 해당 청년과 체결할 수 있는 청년참여계약(Contrat d'Engagement Jeune; 이하 CEJ)이 있다. 청년참여계약의 전신은 청년보장(Garantie Jeunes)으로, 2013년 10개의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16년 말 91개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2017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청년보장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16세 이상 26세 미만의 니트층)과 미션로깅이 계약을 맺고 그 기간(1년)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수당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미션로깅은 계약 청년과 개별 면담을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청년은 제안받은 프로그램에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청년보장은 계약을 통해 각 주체에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일자리 알선이나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같은 단순한 노동시장 정책 수행자 이상의 역할을 미션로깅에 부여하고자 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니트층 청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도모했으며, 직업훈련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원봉사활동, 시민사회 활동 등 다양한 청년참여활동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의욕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2022년) 프랑스 정부는 청년보장을 청년참여계약(Contrat d'Engagement Jeune)으로 변경하고 정책대상을 확대했다. 청년참여계약의 목적과 내용은 청년보장과 대동소이하지만, 기능과 대상을 확장했으며, 임무 수행기관에 프랑스노동(전 고용센터)을

추가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국의 지점 수에서 프랑스노동은 미션로깅보다 두 배 이상 크다. 즉,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 정책참여의 거리접근성이 향상된 것이다. 또한, 청년보장이 니트 청년만을 정책 대상으로 삼았다면, 청년참여계약은 불안정한 일자리, 특히 저임금 시간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까지 포함했다. 게다가 프랑스노동과 미션로깅의 청년의 주거 독립 여부나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오직 연령과 전년도 소득수준만으로 계약의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의 수준을 결정했다. 2025년 기준, 조세 측면에서 독립적인 가구를 이루며 조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성인 청년은 월 최대 552.29 유로의 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조세 납부 대상은 월 최대 331.17 유로(약 50만 원)를 수급한다. 미성인 청년의 경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 220.92유로(약 33만 원)를 수급한다. 이 금액은 매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청년보장과 청년참여계약의 차이는 아래의 표처럼 정리할 수 있다.

표 III-17. 청년보장과 청년참여계약의 주요 내용

구분		청년보장(2021년 기준)	청년참여계약(2023년 기준)
차이점	대상	16세-25세 니트층	- 16세-25세 니트층 (장애인 29세까지) - 불안정 저소득 노동 청년 (주 20시간 미만 시간제 노동 종사자)
	경제적 조건	- 부모와 독립된 주거환경 - 동거 중이지만 부모의 지원 없음 - 지원이 있지만 월 497유로 미만	주거 독립 및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관계없이 면세 대상자 및 1구간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자.
	수행 기관	미션 로깅	미션 로깅 / 고용센터
	지원액	최대 497 유로 (약 70만원)	연령/소득세율 구간별* 차등 지급 18-25세 면세자 - 528유로 18-25세 1구간 납세자 - 316.8유로 16-17세 미성년자 - 211.2유로
	기간	9-12개월 + 6개월(추가)	12개월 + 6개월
공통점		지원액은 월별 경제활동 소득이 300유로 미만일 경우 중복 수급가능. 그 이상일 경우 지원액은 소득에 비례하여 축소, 소득이 월 최저임금의 80% 수준일 경우 지원 중지.	

* 주: 2023년 기준 누진세율은 5구간으로 나뉘며, 2022년 소득이 10,777유로까지는 면세, 27,478유로까지는 11%, 78,574유로 이하는 30%, 168,994유로 이하는 41%, 이를 초과하는 경우 45%의 세율을 적용함. 따라서 연 27,478유로 이하의 소득을 지닌 청년의 경우 CEJ 지원 자격을 가짐.

④ 동행서비스+고용촉진

경제활동 활성화(Insertion par l'activité économique; 이하 IAE) 정책은 특정 부문 기업에 특정 구직자를 단기간 취업시켜 직업경험을 쌓게 하는 정책이다⁵⁹). 정책 수행 기관은 프랑스노동이며, 정책 대상은 장기 실업자, 기초생활(RSA) 수급자, 실업부조(ASS) 수급자 그리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6세 미만의 청년 또는 50세 이상 고령층, 편부모 등이다. 현재 프랑스에는 기업, 협회, 간접고용 기업(entreprises intérimaires) 등 4,578개의 사회편입 협력업체가 존재한다⁶⁰). 먼저 프랑스노동 상담원은 해당 구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IAE 정책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상담원은 IAE 정책 플랫폼인 Les Emplois de l'Inclusion(사회편입일자리)에 구직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후 지원자는 해당 기업과 직접 면담을 진행한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계약 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2년(간접고용기업은 최소 2년)이 된다. 정리하면, IAE 정책은 프랑스노동이 집중 관리하는 취업능력 취약 구직자를 협력 기업 및 협회에 계약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⑤ 고용촉진

취업능력이 취약한 특정 세대 또는 지역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국가 및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지원일자리 사업이다. 2025년 현재 실행 중인 순수한 고용촉진 정책, 즉 직업훈련교육이나 동행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은 고용촉진 사업은 없다. 하지만 2024년 12월 말일까지 고용지원금일자리(Emplois francs: 자유일자리 또는 순수일자리라는 뜻)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된 고용계약에 대해 지원금은 여전히 지급되고 있다. Emplois francs은 취업 여건이 좋지 않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자를 위한 지원일자리 사업으로 이들을 최소 6개월 이상 정규직(CDI) 또는 계약직(CDD)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1인 사업자와 공공부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민간기업이 해당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연 5천 유로씩 최대 3년간 지원금(1만 5천 유로; 약 2천4백만 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연 2,500 유로씩 2년 동안 총 5천 유로(약 8백만 원)를 지급한다. 단, 이 사업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만을 위한 일자리정책은 아니다.

59) 프랑스 공공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284>)

60) 프랑스노동 홈페이지(<https://www.francetravail.fr/candidat/votre-projet-professionnel/definir-votre-projet-professionn/insertion-par-lactivite-economiq.html>)

⑥ 고용촉진+직업훈련교육

퐁트라 에데(contrat aidé ; 지원계약)와 교대형계약(Alternance)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일정 시간 동안 기업에서 노동을 수행하고, 일정 시간 동안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교대형계약은 지원계약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퐁트라 에데(contrat aidé; 지원계약)로 대표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은 국가의 지원금을 통해 공공부문 또는 비영리 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민간영리기업에 대한 사회적 부담금 경감 조치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1970년대 후반 도입되어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이자 청년정책이다. 1977년 25세 미만의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전국 협약(pacte national pour emploi des jeunes)’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청년 일자리 Emplois-jeunes》(1997년), 《청년계약 contrat jeune en entreprise》(2002년) 등 명칭이 자주 변경되었지만, 정책의 대상은 주로 16세 25세 미만이며, 26세 혹은 29세 미만으로 확대한 적도 있다(김상배, 2023). 따라서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시키기 위해 고안한 노동계약의 형태인 지원계약은 사실상의 청년 실업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현재 실행 중인 광의의 지원계약(교대형일자리 포함) 종류는 다음과 같다(표 III-17).

표 III-18. 프랑스 현행 지원계약의 종류와 특징

계약 명칭	대상 연령	직업훈련교육 등 기타 노동조건	활동분야 (사업주)
견습계약 (Contrat d'apprentissage)	16세-30세 미만	직업훈련 의무 계약기간: 6개월-36개월	영리/비영리
전문화계약 (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	16세-26세 미만. 26세 이상 구직자*	직업훈련 의무 계약기간: 6-12개월(연장가능)	영리
일자리직업역량여정 (PEC)	- 장기실업자 - 고령자	직업훈련 의무. 계약기간: 6-24개월. 주 노동시간: 최소 20시간. 타 기업에서 현장실습 가능(1개월 이내)	비영리(협회, 지자체, 공공서비스)
취업통합계약- 취업주도계약 (CUI-CIE)	- 장애노동자 - 기초생계비(RSA), 실업부조(ASS), 장애연금수급자		영리
공무직실습과정 (PACTE)	- 28세 미만 무학위 청년 - 45세 이상 장기실업자 - 기초생계비(RSA), 실업부조(ASS), 장애연금 수급자	총 계약시간 20% 이상 직업훈련교육 계약기간: 12-24개월	국가공무직, 지방공무직, 국립병원~

* 출처: 공공서비스(<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542>)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 주: 구직자: 프랑스노동(고용센터)에 등록되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자를 지칭함.

이 가운데 견습계약과 전문화계약은 청년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보다 직업훈련에 치우친 노동계약이다. 반면, PEC와 CUI-CIE는 직업훈련보다는 취업지원을 강조하는 계약형태이다. 마지막으로 PACTE는 청년세대에게 공무직(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의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견습계약과 전문화계약은 청소년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일반교육 또는 직업훈련교육과 실습(기업에서의 임무수행)이 포함된 형태이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된 취업과 교육의 제도⁶¹⁾이자 대표적인 청년 고용정책이다.

일자리직업역량여정(PEC)과 취업통합계약-취업주도계약(CUI-CIE)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 형태이다. 앞서 언급했듯, 지원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어 오다가, 취업통합계약(Contrat unique d'insertion; 이하 CUI; 유일한취업계약이라는 뜻)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다. 채용하는 기업의 활동분야에 따라 CUI-CAE(contrat d'accompagnement

61) 전문화계약(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은 2004년 도입되었고, 견습생계약(Contrat d'apprentissage)은 기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오래된 형태의 노동 및 교육방식이다.

dans l'emploi; 이하 CAE; 취업동반여정)와 CUI-CIE(contrat initiative emploi; 이하 CIE)로 나뉜다. 전자의 명칭은 최근 PEC로 변경되었다. 두 계약은 취업 중 직업훈련교육을 보장하고, 이를 고용주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중 획득한 경험을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등 취업경험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즉, 직업훈련교육보다는 취업을 통한 실무능력향상 및 경험축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약의 특징은 취업, 직업훈련, 동행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된다는 점이다. 동행서비스의 주체는 미션로깅과 프랑스노동이 다. 단, 청년참여계약(CEJ)와 비슷한 수준의 동행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 III-17>에서는 직업훈련교육과 고용촉진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이 모든 지원계약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체결된다. 지원형태에는 고용주에게는 세제혜택(분담금 포함), 피고용주에게는 임금과 직업훈련교육 비중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 등이 있다.

(2) 청년의 사회참여 유도 정책

<표 III-13>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정책의 5개 축 가운데 청년의 사회참여를 유도 및 지원은 최근 몇 해 동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우선, 은둔청년, 니트층, 그리고 청년실업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곧장 취업을 지원하기 보다 이들의 사회성을 증대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을 청소년과 청년세대가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활동을 참여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기회로 보고, 프랑스를 비롯하여 많은 EU 국가에서 청년세대의 정치적 극우화 성향이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청년세대의 활발한 국제이동과 시민참여 활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자원봉사단(Réserve civique)이 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시민 인력 창고(pool) 또는 인력망을 일컫는다. 구체적인 형태는 자원봉사 공공플랫폼이다 (JeVeuxAider.gouv.fr). 16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협회, 지자체 그리고 공공행정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청년참여계약(CEJ) 참가자 역시 주로 이 플랫폼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얻는다. 2017년 제정된 평등과 시민성에 관한 법률⁶²⁾에 의해 도입되었다. 2019년 시행령에 의거하여 전국 수준에서 청년국

(DJEPVA)이 이 플랫폼을 관리하며, 지역에서는 도(département) 단위 행정기관이 이를 관리한다.

둘째, 시민봉사(Service civique)는 16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이 사회 및 환경 과제에 분야에 직접 참여하여 행동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과 역량을 키우는 활동이다. 2010년 시민봉사 관련 법률⁶³⁾을 토대로 도입된 것으로, 봉사 수행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이다. 단 한 차례만 참여 가능하며, 수행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봉사료를 수급한다. 약 620유로(약 1백만 원)인데, 국가가 505유로를, 봉사수행기관이 115유로를 부담한다. 연대/보건/문화레저/대중교육/체육/환경/기억과시민의식/국제개발과 인도주의 활동/긴급구호/유럽 시민의식 등 10개 분야로 구분된다.

셋째, 축제행사(rassemblements festifs)지원이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나 전문기관이 개최하는 축제행사 이외에 청년이 직접 주최하길 원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국(DJEPVA)이 담당하며, 청년 또는 청년단체와 소통을 통해 행사를 지원하고 안전 문제를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넷째, 시민참여계좌(Compte d'Engagement Citoyen; 이하 CEC)는 자원봉사 활동경력을 적립하는 계좌이다. 한 해 최소 200시간(한 단체에서 100시간 이상)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가에게는 연 24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직업훈련계좌(CPF)에 적립시켜 준다. 최대 720유로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청년세대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은 아니다.

5) 결론 및 정리

프랑스 청년세대가 분가하는 평균 연령은 23세 7개월이지만 최근 발표된 통계청(INSEE) 자료에 따르면(S. Audric & F. Vuillier-Devillers, 2025), 농어촌 지역 청년이 도시지역 청년보다 훨씬 이른 연령에 분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18세에 이미 50% 이상의 청년이 부모의 집을 떠나고, 24세에는 10%만이 부모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밀집된 도시지역에 사는 청년은 이보다 분가 연령이 높아 24세에 분가율이 7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기간과 경제적 자립 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연령에서의 분가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에 따른

62) Loi Égalité et Citoyenneté n°2017-86 du 27 janvier 2017.

63) Loi du 10 mars 2010 relative au Service Civique

편차는 반대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청년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종합적으로 프랑스 청년정책의 최근 10년간의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요 특징이 담겨 있다. 첫째, 청년정책의 안정성이 높아졌다. 범부처정책 문건 중 교육부가 작성한 청년지원정책의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청년정책의 지배구조가 견고해졌다. 청년정책자문위원회(COJ)의 설립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고용촉진 중심의 청년일자리정책이 동행서비스와 직업훈련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단기간 취업률을 높이기보다 청년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5. 핀란드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⁶⁴⁾

1) 청년정책 법률 현황

1950년대와 1960년대 핀란드는 전후 복구와 함께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따른 사회정책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종 청년단체 활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다. 당시에는 청년정책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은 없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행정지침을 통해 청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 청년사업(youth work)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72년 제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청년위원회 및 지역 청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Laki valtionavusta kunnallisen nuorisolautakunnan ja nuorisotyön menoihin, 117/1972)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청년사업에 국고 보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1973년에는 「전국 청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법」(Laki valtionavusta valtakunnalliseen nuorisotyöhön, 1035/1973)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은 전국 규모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근거와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두 법률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Helve, 2009; Höylä, 2012).

1985년에는 포괄적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청년사업법」(Nuorisotyölaki, 1068/1985)이 제정되면서 기존 청년정책 관련 법률을 사실상 흡수·대체하였다. 이 법은 청년사업의

64) 이 절은 신영규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하였음.

목적은 시민성 함양과 생활 여건 개선으로 설정하고, 전국 청년기관에 대한 운영 및 투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산정 기준을 '29세 미만 인구수'에 연동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청년정책 대상 연령 상한을 29세로 끌어올렸다. 1990년대에 들어 심각한 경기침체와 행정개혁이 추진되면서 청년사업 관련 예산이 축소되었고,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위원회 규모와 활동도 위축되었다. 한편, 1995년 전면 개정된 「청년사업법」(Nuorisotyölaki, 235/1995)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차원에서 기존의 '청년사업' 범위가 청년정책(youth policy)으로 확장되었다. 이 법은 국가의 역할을 청년정책의 목표·원칙과 거버넌스의 제시에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현장 집행의 주된 주체로 규정했으며, 청년단체·조직을 시민활동의 1차 책임 주체로 설정했다. 동시에 중앙정부-지역(광역) 행정-기초자치-민간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명문화하여 협치 기반을 제도화하였다(Höylä, 2012).

2006년에는 「청년법」(Nuorisolaki, 72/2006)이 새롭게 제정되어 청년정책과 청년사업의 목적과 핵심 가치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국고보조의 원칙 등을 재구성했다. 또한, 이 법률은 전국 단위의 청년단체와 지역 청년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의 목표와 지역의 사업 집행을 연결하는 구조를 수립하였다. 이 법은 2010년에 개정을 거치면서 다부처 협력 네트워크 설치 의무와 '아웃리치청년사업'(etsivä nuorisotyö)의 법적 근거가 명문화되었다. 이로써 교육, 고용서비스, 복지서비스, 보건서비스 등 분절된 서비스 사이의 연계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요구되기 시작했고, 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 방식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핀란드의 「청년법」 제정과 개정은 이후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이행과 효과적으로 연결되면서 NEET 예방과 서비스 연계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전환점으로 기능하였다(Helve, 2009; Höylä, 2012).

현재 핀란드 청년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률은 2016년에 제정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법」(Nuorisolaki, 1285/2016)이다. 이 법은 2006년 법과 관련 정부령을 대체했으며, 청년을 0~29세로 규정한다. 이 법의 목적은 ①청년의 사회적 포함과 참여·영향력 제고, ②사회생활 역량 및 기능 향상 지원, ③성장·자립·공동체성 및 여가·시민활동 지원, ④비차별과 평등 및 권리 실현 촉진, ⑤청년의 성장과 생활 여건 개선에 있다. 이행의 기본 가치는 연대, 문화적 다양성과 국제성,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한 생활양식,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 범부처(부문간) 협력이다. 청년정책 총괄 부처는 교육문화부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 OKM)이며, 중앙 차원에서는 국가청년위원회(Valtion nuorisoneuvosto), 평가·보조위원회(Arviointi- ja avustustoimikunta), 청년전문성센터(nuorisoalan osaamiskeskukset) 네트워크가 설립·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4년 주기의 “국가청년사업·정책프로그램”(Valtakunnallinen nuorisotyön ja -politiikan ohjelma; VANUPO)을 수립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청년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의 시민활동을 지원하며, 법 목적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 이와 함께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부처 협력 체계를 통해 청년 안내·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아웃리치청년사업과 청년워크숍 활동(työpajatoiminta)의 법적 근거와 지원 원칙을 규정한다(European Commission, 2025a;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25a).

현행 「청년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위 규정으로는 2017년 제정된 「청년사업·정책에 관한 정부령」(Valtioneuvoston asetus nuorisotyöstä ja -politiikasta, 211/2017)이 있다. 이 정부령은 국가청년위원회의 임무, 예를 들면, 정부 정책과 주요 개혁안에 대한 청년영향평가,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의견 제시 등을 구체화하고, 평가·보조위원회의 구성·입기·심사 절차, 국고보조의 심사 기준(전국성, 품질, 범위, 사회적 영향, 평등·포용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령은 4년 주기의 국가청년사업·정책프로그램(VANUPO)의 수립 절차·책임 부처·이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과 청년전문성센터의 역할 및 보고·모니터링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25a).

청년의 정치적 참여는 기초지방자치단체(Kunta)와 복지서비스자치주(Hyvinvointialue) 수준에서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는 2015년에 제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법」(Kuntalaki, 410/2015)과 2021년에 제정된 「복지서비스자치주법」(Laki hyvinvointialueesta, 611/2021)에 명시되어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법」 제26조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청년의회(nuorisovaltuusto) 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 활동 여건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복지서비스자치주법」 제32조는 복지서비스자치주에도 청년의회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교육·문화 영역(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과 보건·복지 영역(복지서비스자치주 차원) 모두에서 청년의 정책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5b).

2) 청년정책 행정부서

핀란드 청년정책의 총괄 책임은 교육문화부(OKM)에 있다. 현행 「청년법」(Nuorisolaki, 1285/2016)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다부처 협력, 국가보조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교육문화부가 국가청년사업·정책프로그램(VANUPO)을 마련하고 집행을 조정한다. 교육문화부는 청년정책과 청년사업 관련 법과 정책의 기획, 거버넌스 설계, 국고보조의 기준 설정, 그리고 4년 주기의 국가청년사업·정책프로그램(VANUPO) 운영을 담당한다. 현행 국가청년사업·정책프로그램(VANUPO)은 2024-2027년 동안 추진되며, 핵심 의제는 “다학제적 조치를 통한 청년의 웰빙 강화”이다. 이를 위해 핀란드 중앙정부는 청년의 웰빙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25b).

청년정책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교육문화부 소속의 국가청년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핀란드 정부가 임명하는 청년정책 전문 자문기구로서, 아동·청년의 생활여건과 관련된 폭넓은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조치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또한 최신 Youth Barometer와 같은 통계 자료를 생산하여 청년의 가치와 태도, 웰빙 지표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차기 국가청년사업·정책프로그램(VANUPO)에 포함될 사안에 대해 교육문화부에 의견을 제출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위해 연구, 전망, 평가 등의 분과를 설치할 수 있는데 각 분과의 구성원은 교육문화부가 임명하고, 분과장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이 맡는다(Valtion nuorisoneuvosto, 2025).

교육문화부는 평가·보조위원회도 운영하는데 위원들은 보통 4년 임기의 활동 기간을 부여받는다.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전국 청년단체 및 청년전문성센터에 대한 국고보조의 적격성 심사 결과와 매년 청년정책 예산 배분 계획을 교육문화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부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조를 받은 단체의 활동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단체의 성과와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19).

핀란드의 청년전문성센터는 교육문화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중간지원체계로서, 국가청년사업·정책프로그램(VANUPO)의 목표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청년 분야의 지식과 역량을 개발·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센터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년정책과 청년사업 전반에 관한 전문성 개발, 근거 기반 정보의 생산·유통, 실무자 교육, 부처·지방자치단체·현장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2024-2027년 기간에는 ①비차별(non-discrimination), ②학교·교육기관 내 청년사업(youth work in school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③지역 청년사업 정보(regional information on youth work)의 세 가지 주제별 센터가 운영 중이다. ‘비차별 센터’는 핀란드 스카우트 연맹(Suomen Partiolaiset), ‘학교·교육기관 내 청년사업 센터’는 남카렐리아응용과학대학(Xamk), ‘청년사업 지역정보 센터’는 핀란드청년연구협회(Nuorisotutkimusseura)가 대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각 주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25c).

중앙정부 기관인 국가행정청(AVI, Regional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도 청년정책에 관여한다. 전국 6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행정청은 중앙정부 소속이지만 분권형 국가행정조직의 역할을 하는데, 여러 부처(총 8개)의 지휘·위임을 받아 주로 보건, 복지, 환경, 교육, 문화, 안전, 노동과 같은 분야에서 해당 부처의 법정 사무를 권역별로 집행·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AVI, 2025a). 청년정책 영역에서 국가행정청은 교육문화부의 지역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청년사업과 서비스의 지도·감독·정보수집을 수행하고, 특히 아웃리치청년사업과 청년워크숍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공모·심사·교부한다(AVI, 2025b). 2025년 2~3월 기준, 국가행정청은 전국 239개 아웃리치청년사업과 208개 청년워크숍에 총 2,800만 유로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배정한 하였다(Helsinki Times, 2025).

핀란드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서비스자치주(hyvinvointialue)와 기초지방자치단체(kunta)로 구분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복지서비스자치주는 2023년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능과 권한을 이양받아 보건·복지서비스와 구급·소방·구조서비스의 조직과 제공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21개의 복지서비스자치주가 설치되어 있다. 많은 사회서비스의 관할권이 복지서비스자치주로 이관되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교육·청년·체육·문화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의 주된 집행 주체로 남아 있다. 특히 청년사업과 청년정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서, 다부처 협력 아래 지역 실정에 맞게 기획·운영된다. 대다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과 청년사업 업무는 교육·문화 부문에 배치되며, 청년 담당 하부 조직이 실무를 수행한다. 이 부서는 지역 청년시설 운영, 청년단체·동아리 지원, 정보·상담, 다문화·문화·스포츠 활동, 아웃리치 청년사업,

청년 워크숍 등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담당한다. 인력은 청년지도사, 아웃리치청년사업가, 워크숍 코치 등으로 구성되며, 지자체 자체 재원과 국고보조금을 결합해 사업을 운영한다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25d; AVI, 2025c).

3) 청년정책 전달체계

핀란드의 청년정책은 중앙정부의 목표와 원칙이 4년 단위로 국가청년사업·정책프로그램(VANUPO)에 의해 결정되면, 이를 중간 지원조직인 청년전문성센터가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국가적 방향성에 맞추어 지역과 현장에서 청년 대상 서비스를 집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교육문화부가 국가 단위의 프로그램을 만드므로 정책 우선순위를 확정하면, 청년전문성센터가 주제별 지식 생산과 역량 전파를 맡아 표준·가이드·교육 패키지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청년 관련 단체와 조직들은 그 산출물을 활용하여 상황에 맞추어 실제 사업을 설계·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원도 배분된다. 교육문화부의 국고보조는 전국 단위 단체와 청년전문성센터 등에 직접 배분되기도 하고, 동시에 국가행정청을 통해 아웃리치 청년사업과 청년워크숍 등과 같은 지방의 핵심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제공되기도 한다. 국가행정청은 권역별 집행·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의 심사·교부와 함께 지역 데이터와 성과를 수집하여 중앙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핀란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핵심 집행 기관이다. 2025년 현재 핀란드에는 30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Kunta Liitto, 2025). 각 지자체의 청년부서는 지역 청년시설·공간 운영, 동아리·단체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문화·스포츠·다문화 활동 지원, 아웃리치청년사업, 청년워크숍 등의 서비스를 직접 수행한다. 이때 지역 청년부서의 실무자는 청년전문성센터가 제공하는 교육 내용과 도구를 받아 현장에 맞게 활용하여 사업을 집행한다(Kannua, 2024).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단위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청년워크숍이다. 청년워크숍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협회·재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대표적 청년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청년워크숍의 핵심 방법은 ‘일(작업)을 통한 학습과 코칭’이다. 워크숍은 29세 미만 청년의 학업·직업·생활관리 과제를 다루는 작업지향 및 공동체형 학습 환경으로 설계되어, 실제 작업과 실습을 통해 기초적인 직무 역량과 근로 습관을 기르고, 개인 코칭과 집단 코칭을 통해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도록 돕는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25e). 현재 핀란드에서는 약 90%의 기초지방자치단체, 266개 지역에서 청년워크숍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종사자는 약 2,150명, 연간 이용자는 약 4만 3천 명으로 집계된다(Into ry, 2025). '핀란드아웃리치청년사업·워크숍활동연합회'(Association for Outreach Youth Work and Workshop Activities, Into)는 전국의 청년워크숍과 청년사업가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다. 이 연합회는 지자체와 청년워크숍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각종 교육자료와 지침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배포한다. 청년워크숍의 운영 방식은 핀란드 청년정책이 공공-민간-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핀란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또 다른 특징은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 통합적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스톱 플랫폼인 오희야모(Ohjaamo)는 30세 미만 청년의 학업, 고용, 주거, 건강 등 다양한 문제를 한곳에서 상담·연계하는 창구로서 2014년 헬싱키시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약 70개 지역으로 확산됐다(Ohjaamo, 2025a). 30세 미만 청년은 누구나 오희야모를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동일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청년정책 대표사업

(1) 일자리 분야

핀란드 청년정책 가운데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오희야모(Ohjaamo) 원스톱안내센터의 설립과 전국적 확산이다. 이 모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이 높아지고 사회진입이 지연·복잡해진 상황에서 나타난 복합적인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등장했다.

우선 2014년 핀란드 고용경제부(Työ- ja elinkeinoministeriö)는 청년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코흐타모(Kohtaamo)'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Kohtaamo'는 '만남 공간'을 뜻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취업과 학업 문제를 논의하고 공공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통합 공간을 전국적으로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당시 헬싱키는 자체적으로 오희야모 시범센터를 개소했다. 'Ohjaamo'는 '조종실'을 의미하

는데, 이는 청년의 미래를 이끌어주는 안내실·통합센터의 성격을 강조한 명칭이었다. 헬싱키 오희야모 원스톱안내센터는 개장 직후 큰 호응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18개월 이후에 상시사업으로 전환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8).

헬싱키의 성공을 토대로 고용경제부와 꼬흐파모 프로젝트팀은 오희야모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였다.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되면서 오희야모 원스톱안내센터는 전국적인 통합서비스 모델로 빠르게 정착하였으며, 현재는 73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KEHA-keskus, 2025).

오희야모 원스톱안내센터는 원칙적으로 만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 없이(free walk-in)” 이용 가능한 무료 대면 원스톱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센터마다 구성은 다르지만, 지방자치단체 청년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보험청과 같은 중앙정부 기관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지역의 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취업·창업·보건·복지·여가·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공간에서 협력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5년에 발표된 오희야모 원스톱안내센터 관련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 전국 약 20만 3천 명의 청년이 오희야모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별 상담 방문은 11만 2천 건, 그룹 미팅 참여는 9만 건으로 집계되었다. 청년들이 오희야모를 찾는 주요 사유는 직업생활 관련 문제(34%), 교육 및 학업(33%), 정신적 웰빙(25%), 실업(2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방문자의 절반가량이 18~24세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5~30세 청년이 23%를 차지했다. 또한, 방문자 중 48%는 실업인 것으로 나타났고, 20%는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었다(KEHA-keskus, 2025).

핀란드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오희야모 원스톱안내센터는 역시 헬싱키의 원스톱센터다. 헬싱키의 오희야모 원스톱센터는 시내 중심 지역인 캄피(Kamppi)에 처음 설립되었는데 현재는 한 곳이 더 추가되어 동부 지역인 이따케스꾸스(Itäkeskus)에서도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캄피 센터는 평일(월-금) 12시-16시에 문을 열고, 이따케스꾸스 센터는 목요일 12시-16시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City of Helsinki, 2025). 청년들의 방문이 가능한 시간은 12시-16시이지만, 오희야모 센터 직원들은 매일 아침에 출근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의와 준비를 한다. 이는 다양한 조직과 분야에서 모인 직원들의 소통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청년들에게 통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다. 헬싱키 오희야모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영역은 ① 일·창업(työ ja yrittäjäyys), ② 교육·학업(koulutus ja opiskelu), ③ 돈과 주거(raha ja asuminen),

④ 의무교육(oppivelvollisuustiimi), ⑤ 웰빙(hyvinvointi)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전문가, 일정 등은 주 단위로 헬싱키 오후야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Youth Helsinki, 2025).



* 출처: <https://nuorten.hel.fi/opiskelu-ja-tyo/ohjaamo/>에서 2025.9.30. 인출.

그림 III-18. 헬싱키 캄피의 오후야모 원스톱 안내센터

(2) 교육·훈련 분야

핀란드 중앙정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청년역량프로그램’(Nuorten aikuisten osaamishjelma, NAO)은 청년정책의 교육·훈련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였다.

청년역량프로그램은 고등학교 또는 직업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20-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제공한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맞춤형 상담과 학습지원 서비스를 결합하여, 청년들이 교육과정에 재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6). 본격적인 교육 재진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7년에는 이미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던 학습자들의 학업 마무

리를 지원하는 형태로만 운영되었다(Opetushallitus, 2015). 당시 프로그램의 공식 목표는 2013-2016년 사이 약 36,000명의 청년이 직업교육에 재진입하도록 돕는 것이었으며, 이 중 16,000명은 청년역량프로그램 전용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었다(Aaltonen et al., 2017).

이 프로그램의 전달체계는 교육문화부-국가교육위원회-직업교육기관의 삼층 구조로 이루어졌다. 중앙정부인 교육문화부는 정책 설계, 보조금 지칭, 성과관리 등을 총괄했고, 국가교육위원회(Opetushallitus, EDUFI)는 모니터링 체계 개발과 현장 지원을 담당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16). 현장 수준에서는 전국 약 60개 직업교육기관이 참여하여 교육 참여자 모집·상담, 학습 코칭, 개인별 경로 설계, 기업 현장 연계 등을 결합한 패키지형 직업훈련을 운영하였다(Aaltonen et al., 2017).

이 프로그램의 전국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년역량프로그램만을 위한 자체 보조금과 일반 직업교육 재정이 함께 투입되었다. 핀란드 정부는 2013년에 프로그램 출범과 함께 2,700만 유로를 배정했고, 본격 추진기에 해당하는 2014-2016년에는 매년 5,200만 유로를 책정해 교육 재진입과 과정 이수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2017년에는 1,000만 유로를 추가로 투입하여 기존 학습자들의 과정 마무리를 지원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12; 2017).

프로그램의 성과를 살펴보면, 전국 약 60개 직업교육기관이 2013-2016년 동안 청년역량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재원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웠을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별 접촉과 초기 적응 지원을 결합하여 대규모로 직업교육에 재진입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핀란드 정부의 공식 목표였던 1만 6천 명의 교육 재진입은 2017-2018년까지 거의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장 관계자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교육 재진입이 힘들었을 수많은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학업 이수 측면에서 보면, 2013-2014년에 참여한 청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17년까지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한 청년들의 경우 약 40%가 학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Aaltonen et al., 2017). 취업 효과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추적 통계가 제한적이었으나, 학생 설문조사 결과 이수자의 과반수가 취업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훈련 이전 실업자였던 청년의 경우 약 절반이 훈련 종료 후 고용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되었다(Opetushallitus, 2015).

(3) 주거 분야

주거 분야에서 대표적인 청년정책 사례는 핀란드 전국 단위의 ‘청년주거연합회(Nuorisoasuntoliitto ry, NAL)’가 추진하는 통합형 주거 모델인 ‘NAL주택(NAL asunnot)’이다. 청년주거연합회는 전국 19개 지역 청년주거단체를 대표하는 우산조직으로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생활 및 재무 상담, 동행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 서비스로 통합하여 청년의 자립과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년주거연합회는 자체 주택법인인 NAL Asunnot Oy와 지원 서비스 법인인 NAL Palvelut Oy를 통해 전국 약 20개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면서 청년 친화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맞춤형 주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Eurhonet, 2021; Nuorisoasuntoliitto, 2025).

NAL주택 모델은 주로 18~2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주거 정착 및 자립을 돕는 서비스가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접근은 핀란드 ‘주택금융개발센터(Asumisen rahoitus- ja kehittämiskeskus, ARA)’와 환경부(Ympäristöministeriö)의 제도적 지원에 기반한다. 주택금융개발센터는 사회주택의 건설, 매입, 보조를 담당하고,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청년을 포함한 저소득·취약계층에 접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환경부는 장기노숙 종식을 위한 주거우선(Housing First) 정책을 주도하며, “주거를 먼저 제공하고 이후에 통합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원칙을 청년정책에도 확장하였다(Ympäristöministeriö, 2024). NAL Asunnot Oy는 청년용 사회주택을 공급하여 물리적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NAL Palvelut Oy는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고용서비스를 연계하여 입주 청년에게 지원한다. 이러한 구조는 주택과 서비스를 분절 없이 묶어 퇴거로 인한 주거 불안정을 예방하고, 사회적 배제 위험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NAL주택의 규모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 청년주거연합회는 전국적으로 약 2,200호의 청년 임대주택을 보유·운영하며, 매년 약 1,000명 내외의 신규 세입자를 받아들인다. 또한 주거 정착을 위한 지원서비스, 주거 상담, 재무 교육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을 돕는다. 재정적으로, NAL주택의 2022년 매출은 1,470만 유로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임대수익에서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약 70만 유로를 법인세, 고용주세, 부동산세로 핀란드 정부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수익은 재투자되어 신규 건설과 유지보수에 활용되었다(NAL Asunnot Oy, 2022).

청년주거연합회는 매년 청년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며 공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있다. 따라서 NAL주택 모델은 앞으로도 핀란드 청년정책에서 주거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복지 분야

핀란드의 “타임아웃! 아이칼리사! 다시 궤도로(Time Out! Aikalisä! Elämäraiteilleen)” 프로그램(이하 타임아웃-아이칼리사 프로그램)은 병역 또는 대체복무에서 제외되거나 중도 이탈한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담 상담사가 짧고 집중적인 심리상담, 사회적 지원,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델이다. 이 모델은 2004-2007년 기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고, 이후 보건복지연구원(STAKES, 현 THL), 국방부(Puolustusministeriö), 고용경제부(Työ- ja elinkeinoministeriö),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센터(Työ- ja elinkeinoministeriö) 등의 협력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년들로 하여금 정신건강, 학업, 고용, 주거, 재정 등 누적된 위험을 조기에 완화하고, 문제의 악화를 방지하며, 적절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는 것이다.(Rikoksmentorjuntaneuvosto, n.d.). 프로그램명에 쓰인 ‘아이칼리사(Aikalisä)’는 핀란드어로 ‘일시 정지’를 뜻한다. 프로그램을 타임아웃-아이칼리사로 명명한 것은 스포츠 경기에서 흐름을 잠시 멈추는 것처럼 청년 개인의 ‘삶의 경로’를 잠시 멈춰 상황을 재정리하고 필요한 도움과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핀란드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임아웃-아이칼리사 프로그램은 징병검사(kutsunnat)라는 보편적 제도를 활용하여 청년 코호트 전체를 면담함으로써 위험 신호를 보이는 청년에게 단기간의 집중적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병역 또는 대체복무에서 면제되었거나 복무를 중단한 청년이고, 경우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여성 군입대 지원자와 대체복무 인원이 포함된다.

시범사업 이후 이 프로그램은 약 3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상시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다. 프로그램의 메뉴얼에 따르면, 청군 부대 사회복지 담당자 또는 대체복무 기관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사에게 의뢰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상담사가 개입을 시작한다(Stengård et al., 2008). 이 프로그램을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을 두지는 않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회복지 인력이 단기 훈련과 표준화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전담 상담사를 지정한다. 지정된 상담사는 사례가 발생하면 초기 평가-목표 합의-서비스 연계-모니터링의 절차에 따라 단기적이지만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한다(Rikoksentorjuntaneuvosto, n.d.). 핀란드 국군(Puolustusvoimat)의 최신 징집 안내서(Conscript Guide) 역시 복무 중단자가 발생할 경우 아웃리치 청년사업과 타임아웃-아이칼리사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는 지침을 싣고 있다(Puolustusvoimat, 2024).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이 국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임아웃-아이칼리사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2011년에 발간된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소의 평가보고서(Appelqvist-Schmidlechner et al., 2011)에 따르면, 청년들이 상담에서 주로 도움받은 내용은 학업, 생계, 취업 등 일반적인 생활 문제였고, 약 3분의 1은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한편 전체 사례 중 절반가량은 1회 만남으로 종료될 정도로 개입 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처럼 비교적 단기·경량의 개입에도 대다수 사례에서 청년들에게 유의미한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문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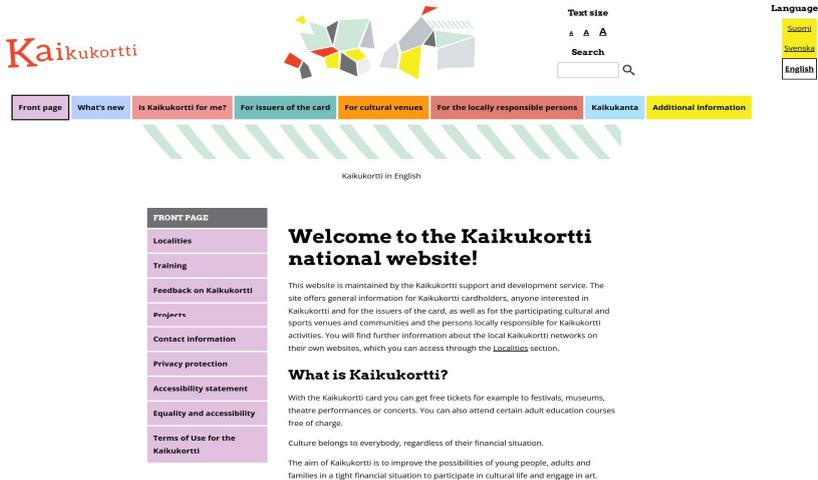
핀란드의 까이꾸코르띠(Kaikukortti)는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여가 이용이 어려운 만 16세 이상 시민이 박물관, 공연, 콘서트, 축제 등 문화행사와 성인교육센터(Adult Education Centre)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전국형 문화접근권 보장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2015년 ‘문화패스(Kulttuuripassi)’ 시범사업에서 출발하여 후속 프로젝트를 거쳐 전국 네트워크로 정착했다. 사업의 목적은 “재정 형편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문화를”이라는 원칙하에, 청년·성인·가족·노년층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문화 참여 기회와 예술 활동을 확대하는 데 있다(Kaikukortti, 2025a).

국가 차원에서 이 사업의 주관 부처는 교육문화부이지만, 총괄 운영은 ‘평등문화협회(Yhdenvertaisen kulttuurin puolesta ry)’ 산하 조직인 ‘까이꾸게스꾸스(Kaikukeskus)’가 맡고 있다. 까이꾸코르띠(Kaikukortti)는 등록상표이면서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칭한다. 까이꾸게스꾸스는 전국 운영 표준과 지역 네트워크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고, 카드 발급과 지역 네트워크 조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복지서비스자치주가 지역 단위에서 수행된다(Kaikukortti, 2025b). 예산은 교육문화부의 보조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원되지만, 사회보건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 참여 문화기관의 서비

스 및 재화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마련된다(Yhdenvertaisen kulttuurin puolesta ry, 2025).

카드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발급 대상은 만 16세 이상으로, Kaikukortti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의 부서와 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보장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문화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따라서 청년이 핵심 수혜층에 포함된다. 카드는 지류뿐만 아니라 모바일앱으로도 발급 가능하다(Kaikukortti, 2025c).

2024년 2월 19일 기준으로 까이꾸꼬르띠 네트워크는 참여 기초지방자치단체 100곳을 돌파했다. 이어 2024년 12월 19일 공식 브리핑에서는 유효 카드가 25,000장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기준 네트워크에는 약 500개의 문화·교육(및 스포츠)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공공조달 자료와 행사 안내에서 확인된다(Hilma, 2024; Kaikukortti, 2024a; 2024b).



* 출처: <https://kaikukortti.fi/en/> 에서 2025.9.30. 인출.

그림 III-19. 까이꾸꼬르띠 공식 홈페이지

5) 시사점

핀란드 청년정책은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면서 중앙

과 지방의 협치 체계와 다부처 연계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한국 청년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핀란드는 「청년법」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부처 협력, 청년단체의 자율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4년 주기의 국가청년사업·정책프로그램(VANUPO)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기획·운영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전문성센터와 국가행정청 같은 중간 지원조직이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 목표가 지역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 청년정책 역시 중앙정부의 목표와 지역 집행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법적 기반 위에 안정적인 중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핀란드는 오희야모와 같은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청년이 학업, 고용, 주거, 정신건강 등 다양한 문제를 한곳에서 상담받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낮은 진입장벽을 갖춘 포괄적 접근 모델로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청년이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만든다. 한국에서도 청년센터나 청년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처별, 제도별 단절성이 크다. 따라서 핀란드 사례처럼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모델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다부처 인력이 한 공간에서 함께 청년을 지원하는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단순히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청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개발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재원 투입이 요청된다.

핀란드의 청년워크숍과 아웃리치청년사업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핀란드의 청년워크숍은 작업을 통한 학습과 코칭을 결합하여 학업·고용으로 이어지는 전환을 지원하고, 아웃리치사업은 제도권 밖에 머무는 청년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초기 개입을 시도한다. 이는 청년을 단순히 ‘서비스 신청자’로만 보지 않고, 제도 접근에서 소외된 집단을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 정책 설계를 보여준다. 한국 청년정책도 단순 지원을 넘어 위험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연계로 이어주는 아웃리치형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주거 영역에서는 NAL형 청년지원주거가 눈에 띈다. 이는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생활·재무·정신건강 상담을 결합한 통합형 지원 모델이다. 주거라는 ‘하드웨어’와 사회

적 지원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퇴거와 주거 불안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한국 청년에게도 유의미한 교훈을 제공한다. 청년 주거 지원이 단순한 임대료 보조를 넘어, 자립과 사회통합을 돕는 다차원적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청년 지원에 초점을 둔 사회주택 공급을 꾸준히 확대해 온 핀란드의 경험은 한국 청년 주거정책 역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의 까이꾸코르띠 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문화 활동에서 배제되기 쉬운 청년에게 공연·전시·강좌 등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바우처제도로 저소득 청년의 문화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문화단체의 파트너십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활동 참여 장벽을 낮춤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에 따른 문화·여가 격차가 큰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저소득 청년을 위한 여가·문화활동 지원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핀란드 청년정책 사례가 한국에 던지는 주요 시사점은 ① 법적 기반과 안정적 거버넌스 구축, ② 다부처 협력과 중간 지원조직을 통한 정책 연계, ③ 윈스톱 서비스와 아웃리치 접근의 제도화, ④ 주거·고용·교육·문화 등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청년정책 설계, ⑤ 예방적·포용적 지원을 통한 청년의 사회적 참여 강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한국 청년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유익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다.

6. 청년정책 해외사례 시사점⁶⁵⁾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적 근거, 행정 조직, 전달체계 차원에서 한국 청년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법적 근거 차원에서는 청년 지원을 시혜적 관점이 아닌 실질적 권리로 전환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사례와 같이 청년 지원을 청구 가능한 법적 권리로 규정하거나, 핀란드처럼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부처 협력과 아웃리치 활동을 법률에 의무 조항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구속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립·은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단절 없는 지원을 보장하는 통합적 법률

65) 이 절은 신동훈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체계로의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현행 법률은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생애전반기 대상을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간 연계수준도 높지 않으므로 체계적인 법률로의 정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최근 관련 법률의 입법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구체적인 이행 경험을 추적하고 살펴보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둘째, 행정 조직 측면에서는 분절된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와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국내에서 청년정책을 다루는 행정조직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국무조정실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부처간 실질적인 협력이나 연계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어린이가 정청과 같은 전담 기구 신설이나, 미국의 청년프로그램 실무단과 같은 범정부적 상설 협의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프랑스처럼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당사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핀란드의 청년전문성센터와 같이 정책 현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육성하는 것도 고려해볼직하다.

셋째, 전달체계 차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확대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부처별 분절된 청년정책으로 인해 각 부처의 전달체계에 일부 기능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이에 핀란드의 오희야모나 프랑스의 미션로 깔을 벤치마킹하여 고용, 주거, 심리 상담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오프라인 원스톱 센터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여 확산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핀란드의 아웃리치 사업처럼 위기 청년을 찾아가 제도 권으로 유입시키는 체계를 강화하고,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전담 상담사가 밀착 지원하는 동행형 지원 모델을 도입할 경우, 청년기본법 수립 및 청년정책기본계획에 기반한 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 — 제4장 연구 제언

- 1. 연구 요약
- 2.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요약⁶⁶⁾

1)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요약

이 연구에서는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이 국제연합(UN)의 행사에 전 세계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했던 국제 민간기구(youthpolicy.org)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했던 방식을 활용하여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5년 기준으로 청년 하한 연령은 68.7%(195개 국가 중 134개 국가)가 15-19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면, 15-19세는 7%p 증가한 반면, 10-14세는 2017년 26.7%에서 2025년 21.5%로 감소하였다. 생애주기 접근으로 0세부터 정책 대상으로 정해 추진하는 곳은 14개 국가였음. OECD 국가에서는 10-14세로 청년을 규정하는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다.

상한 연령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35-39세로 청년을 규정하는 국가가 34.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25-29세(28.2%), 30-34세(27.7%) 순이었다. 2017년에는 25-29세로 청년을 규정하는 곳이 34.4%로 가장 많았으나 2025년 들어서 28.2%까지 낮아졌다. 반면, 35세에서 39세 비율은 같은 기간 23.9%에서 34.4%로 늘어났다. OECD 국가들에서는 50.0%가 25-29세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령 구간이 35-39세는 5.3%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행정부서 명칭에 청년이나 생애 전반기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곳은 114개로 전 세계 195개 국가 중 5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107개 국가였으며 이번 조사에서 7개 국가가 늘어났다. 이어서 부처형과 부서형, 기타를 포함한

66)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과 신동훈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위원회형을 살펴보면, 전 세계 국가 중 58.5%는 위원회가 아닌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직 명칭에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부서형이 26.2%였고 기타 및 위원회형인 경우는 15.4%에 그쳤다.

전 세계에서 청년 법률을 제정해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곳은 33.3%로 65개 국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 중에는 47.4%가 청년 법률을 제정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5개국 청년정책 요약

(1) 법적 근거

청년 지원의 법적 근거는 각국의 여건과 정책 기조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독일과 핀란드, 일본의 경우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포괄적인 기본법이나 법적 권리 조항을 두고 있다. 독일은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을 통해 청년 지원을 단순한 시혜가 아닌 국가가 보장해야 할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18세에서 27세 사이 청년의 성격 발달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핀란드는 청년법(Youth Act)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적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일본은 어린이·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을 통해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명시했으며, 최근 어린이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청년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단일한 청년 기본법보다는 분야별 개별 법률이나 예산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미국은 교육 분야의 ESSA, 고용 분야의 WIOA 등 개별 법률을 통해 학교 밖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청년만을 위한 특별법은 부재하나, 매년 제정되는 재정법 내의 청년 지원정책 문건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노동법전에 청년참여계약(CEJ)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규정을 둬으로써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2) 행정 조직

행정 조직 측면에서는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전담 부처를 두거나 범정부적

협의체를 운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본은 2023년 어린이가정청을 내각부 외국으로 출범시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통합하고 생애 전반기를 포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잣은 조직 개편 속에서도 체육·청년·단체활동부를 주관 부처로 두고, 국무총리 직속의 청년정책자문위원회(COJ)를 설치하여 범부처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평가 기능을 강화했다.

핀란드는 교육문화부가 청년정책을 총괄하며 4년 주기의 국가청년사업·정책프로그램(VANUPO)을 수립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가 청년정책을 총괄하되, 고용 관련 정책은 연방노동사회부(BMAS)와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를 취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단일 전담 부처는 없으나, 백악관 주도의 청년프로그램 실무단(IWGYP)을 통해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3) 전달체계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와 지역 사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핀란드의 오희야모(Ohjaamo)는 고용, 교육, 복지, 건강 등 청년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스톱 안내센터로, 낮은 진입장벽과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강점이다. 프랑스는 전국 426개소에 달하는 미션로칼(Mission Locale)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 주거, 건강 상담을 아우르는 동행(Accompaniment)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인 프랑스노동(France Travail)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청소년청(Jugendamt)이 청년 지원의 총책임을 맡아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이원화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구조적으로 지원한다. 일본은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션과 신졸응원헬로워크 등 대상별 특화된 고용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는 한편, 어린이·청년지원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노동부 산하의 One-Stop Career Centers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과 훈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비영리기관(NPO)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 청년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정책적 시사점⁶⁷⁾

1) 청년정책 대상자의 연령 규정과 대상자 선정의 유연성 확보

한국의 청년정책은 주로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된 특정 연령(19~34세)을 기준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사례는 청년을 고정된 연령 집단보다는 아동·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이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생애주기 연속성을 고려한 통합적 연령 규정으로의 전환, 대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유연한 대상 설정이 필요하다.

(1) 생애주기 연속성을 고려한 통합적 연령 규정으로의 전환

현재 한국은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대상을 나누고 별도의 부처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애주기 연속성 차원에서 하나의 부처에서 생애 전반기 정책을 다루거나 주관부처간에 최소한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이행 과정’에 대한 지원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청년 연령 설정이 점차 뒤로 밀려나고 있어 40대를 포괄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청년정책의 핵심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지원이라면 조금 더 초기 청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이행 과정에 있는 사람을 유연하게 지원하는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

(2) 대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유연한 대상 설정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접근과 더불어, 니트(NEET) 청년,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등 구체적인 정책 수요가 있는 집단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은 위기 청소년과 청년의 관할 부처와 전달체계가 분절되어 있어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어렵다. 한국의 청년정책 대상 설정 시에도 자립의 필요성과 사회적 위험도를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유연하게 확장하거나 집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단, 대상자 선정에 있어 주관성과 임의성이 과도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67) 이 절은 유민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불러올 수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2) 법적 권리 구체화: 시혜가 아닌 권리로의 전환

현재 한국의 「청년기본법」은 국가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의 규정은 미흡한 편이다. 또한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아직 손에 잡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가 책무성을 높이고 권리 차원에서의 청년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청년 지원의 법적 권리와 책무성 구체화

독일은 청년 지원을 국가가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닌, 청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의 근거를 넘어, 주거·고용·교육 등 핵심 영역에서 최저 기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권리 미보장 상태에서의 청구권 개념이 더 세부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2) 대상자 발굴에서의 협력 법제화

핀란드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위기 청년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아웃리치’ 활동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부처 협력을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명시했다. 한국 역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청년 발굴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를 법적 의무 사항으로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을 중심으로 위기 청년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수밖에 없는 현장 공무원들의 실천 기준으로서는 미흡하다. 적극 행정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거버넌스 강화 및 컨트롤 타워 설정

한국 청년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처 간 중복 및 분절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1)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진 범정부 협의체를 내실화해야 한다. 현재 국무조정실 중심의 조정 기능이 있지만, 예산 편성권이나 사업 조정권 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각 부처(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에 흩어진 정책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재구조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조직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핀란드의 국가청년사업·정책프로그램(VANUPO)이나 프랑스의 정책 평가 시스템처럼, 정책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전문 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지역 현장의 수요를 데이터화하여 중앙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거 기반 정책을 수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는 이러한 책임이 민간 위탁된 실무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나, 공공의 책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전달체계 강화

청년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한곳에 모으고,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1) 청년 지원 원스톱 복합 센터의 표준화 및 확산

핀란드의 오희야모(Ohjaamo)와 같이 고용, 주거, 복지, 건강, 심리 상담 등 청년이 겪는 복합적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달체계는 고용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원스톱 청년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공간만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미션로칼(Mission Locale)'처럼 한 명의 상담사가 초기 상담부터 문제 해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전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성공적인 모델의 안착을 위해서는 작은 센터 운영 예산을 통합하여 통합 모델의 전국 시범 사업 운영 등 강력한 투자를 시행하고, 우수모형을 정교화, 표준화하여 전국 모델로 확산이 필요하다.

(2) 밀착형 ‘동행’ 지원체계 도입

단순한 현금 지원이나 단발성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프랑스 노동법전의 ‘청년참여계약(CEJ)’과 같이 청년과 상담사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밀착 지원하는 동행형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자립 성공률을 제고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 단, 계약이 강제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의 활성화 전략이고, 계약에서의 청년 참여자의 주도성과 권한 부여이다. 또한, 외국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들여왔을 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상황에서 여러 시범적 조치들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어】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2021).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2025). 서울시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사례 분석. 서울: 서울연구원. (발행예정).
- 김기현, 김윤희. (2025).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이슈&정책, 156. 발행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문길. (2024).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일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2004-0034.
- 김상배. (2023). 프랑스 청년정책에 관한 제도적 고찰: 청년참여계약을 중심으로. 계간 고용이슈 (2023년 여름호). 한국고용정보원.
- 이용해, 김기현, 신동훈. (2023). 청년정책의 법적·행정적 기반이 청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50(3), 145-169.
- 이영란. (2024). 청소년 연령 법적기준 및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리포트. 서울: 여성가족부.
- 장민선, 최환용, 김기현, 하형석, 유민상, 조성호. (2017).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정은진, 김기현. (2018).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유형과 정책성과에 관한 OECD 국가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9(1), 117-143.
- 홍문기. (2016). 독일 발전과정에서 살펴본 아동보호체계 형성과정과 함의: 역사적·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7(1), 113-138.

- 홍문기. (2022a).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23, 141-145.
- 홍문기. (2022b). 독일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분석 및 한국에의 함의점. 사회복지법제연구, 13(3), 118-137.
- 홍문기. (2024). 독일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정책 현황 및 쟁점. 국제사회보장리뷰, 31, 15-31.

【영어】

- Aaltonen, S., Lappalainen, S., & Tervonen, J. (2017). Final evaluation of the Young Adults' Skills Programme (NAO).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 AVI. (2025a). Regional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 <https://avi.fi/en/regional-state-administrative-agencies> (Accessed 2025.09.30)
- AVI. (2025b). Youth work. <https://avi.fi/en/about-us/our-services/education-and-culture/youth-work> (Accessed 2025.09.30)
- AVI. (2025c). Youth work in municipalities. <https://avi.fi/en/about-us/our-services/education-and-culture/youth-work/youth-work-in-municipalities> (Accessed 2025.09.30)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 Youth aging out of foster care: Policy and funding overview. <https://crsreports.congress.gov/>
- Coordinating Council o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25). Report to Congress (FY 2023-2024). https://juvenilecouncil.ojp.gov/sites/g/files/xyckuh301/files/media/document/FINAL_CC%20FY23-24%20Report-to-Congress%201.15.2025.pdf
-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2023). AmeriCorps annual report. <https://www.nationalservice.gov/programs/americorps>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23). Youth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report.
- Eurhonet. (2021). NAL - Youth housing in Finland. <https://www.eurhonet.eu/nal-youth-housing-in-finland> (Accessed 2025.09.30)

- Eurhonet. (2021). NAL - Youth housing in Finland. <https://www.eurhonet.eu/nal-youth-housing-in-finland> (Accessed 2025.09.30)
- European Commission. (2018). One-Stop-Shop Guidance Centres for young people (Ohjaamo).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 (2025a). Youth Wiki: 1.2 National youth law—Finland.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finland/12-national-youth-law> (Accessed 2025.09.25)
- European Commission. (2025b). Youth Wiki: 5.3 Youth representation bodies—Finland.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finland/53-youth-representation-bodies> (Accessed 2025.09.25)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23). America’s digital transformation: Urgent national priority and opportunity: Digital upskilling. <https://www.fcc.gov/sites/default/files/cedc-innovation-access-wg-digital-upskilling-report-06152023.pdf>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23). Kids online safety initiatives. <https://www.fcc.gov/kids-online-safety>
- Federal Trade Commission. (2023).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COPPA). <https://www.ftc.gov/legal-library/browse/rules/childrens-online-privacy-protection-rule-coppa>
- Helve, H. (2009). The Finnish perspective Youth work, policy and research. In G. Verschelden, F. Coussée, T. Van de Walle, & H. Williamson (Eds.), *The history of youth work in Europe Relevance for youth policy today* (pp. 117-130).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Helsinki Times. (2025). Over €28 million granted to tackle youth exclusion in Finland. <https://www.helsinkitimes.fi/finland/finland-news/domestic/26756-over-28-million-granted-to-tackle-youth-exclusion-in-finland.html> (Accessed 2025.09.30)
- Into. (2025). Briefly in English. <https://www.intory.fi/briefly-in-english/> (Accessed 2025.09.30)

-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Pub. L. No. 93-415 (1974).
- Kaikukortti. (2024a). Kaikukortti reaches one hundred municipalities. <https://kaikukortti.fi/en/kaikukortti-reaches-one-hundred-municipalities/> (Accessed 2025.09.30)
- Kaikukortti. (2024b). The European Commission in Finland has published a video about Kaikukortti. <https://kaikukortti.fi/en/the-european-commission-in-finland-has-published-a-video-about-kaikukortti/> (Accessed 2025.09.30)
- Kaikukortti. (2025a). Welcome to the Kaikukortti national website! <https://kaikukortti.fi/en/> (Accessed 2025.09.30)
- Kaikukortti. (2025b). Kaikukeskus - Kaikukortti support and development service. <https://kaikukortti.fi/en/additional-information/kaikukortti-support-and-development-service/> (Accessed 2025.09.30)
- Kaikukortti. (2025c). Can I get the card? <https://kaikukortti.fi/en/is-kaikukortti-for-me/can-i-get-the-card/> (Accessed 2025.09.30)
- Kanuuna. (2024). KANUUNA 2020-2024 annual report. <https://www.nuorisokanuuna.fi/sites/default/files/materiaalipankki/2024-05/Kanuuna%60s%20Annual%20Report%202020-2024.pdf> (Accessed 2025.09.30)
- Kunta Liitto. (2025). Finnish municipalities and regions. <https://www.localfinland.fi/finnish-municipalities-and-regions> (Accessed 2025.09.30)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12). Social guarantee for young people will come into force from the start of 2013. <https://okm.fi/en/-/social-guarantee-for-young-people-will-come-into-force-from-the-start-of-2013> (Accessed 2025.09.30)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25a). Youth Act 2017—Legislation (Youth). <https://okm.fi/en/legislation-youth> (Accessed 2025.09.25)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25b). National Youth Work and Youth Policy Programme. <https://okm.fi/en/national-youth-work-and-policy-programme> (Accessed 2025.09.30)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25c). Nuorisoalan osaamiskesku

- keset. <https://okm.fi/nuorisotyön-keskukset> (Accessed 2025.09.30)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25d). Local youth work. <https://okm.fi/en/local-youth-work> (Accessed 2025.09.30)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25e). Youth workshops and outreach youth work. <https://okm.fi/en/workshop-activities-and-outreach-youth-work> (Accessed 2025.09.30)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20). State education reforms and ESSA implementation. <https://nces.ed.gov/>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21). Juvenile justice system improvement strategies. <https://ojjdp.ojp.gov/>
- Osler, A., & Kato, A. (2022). Power, politics and children's citizenship: The silencing of civil socie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30 (2), 440-472.
- Song, J. (2018). Young people, precarious work, and the development of youth employment policies in Japan.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3), 444-460.
- U.S. Congress. (1938). Fair Labor Standards Act, 29 U.S.C. §§ 201 et seq. <https://www.congress.gov/bill/75th-congress/senate-bill/1720>
- U.S. Congress. (1974).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34 U.S.C. §§ 11101 et seq. <https://www.congress.gov/bill/93rd-congress/house-bill/10244>
- U.S. Congress. (1974).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42 U.S.C. §§ 5711 et seq. <https://www.congress.gov/bill/93rd-congress/senate-bill/2491>
- U.S. Congress. (2000).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15 U.S.C. §§ 6501 et seq. <https://www.ftc.gov/legal-library/browse/rules/childrens-online-privacy-protection-rule-coppa>
- U.S. Congress. (2008). Fostering Connections to Success and Increasing Adoptions Act, Pub. L. No. 110-351. <https://www.congress.gov/110/plaws/publ351/PLAW-110publ351.pdf>

- U.S. Congress. (2014).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Pub. L. No. 113-128. <https://www.govinfo.gov/content/pkg/PLAW-113publ128/pdf/PLAW-113publ128.pdf>
- U.S. Congress. (2015). Every Student Succeeds Act, Pub. L. No. 114-95. <https://www.congress.gov/114/plaws/publ95/PLAW-114publ95.pdf>
- U.S. Congress. (2015). 20 U.S.C. § 6311(b)(2).
- U.S. Congress. (2018). Family First Prevention Services Act, Pub. L. No. 115-123. <https://www.congress.gov/115/plaws/publ123/PLAW-115publ123.pdf>
- U.S. Congress. (2021). Children's Online Safety Act (KOSA), H.R. 5536, 117th Congress.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5536>
- U.S. Congress. (2022).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rafficking Prevention Act, H.R. 3687, 117th Congress.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687>
- U.S. Congress. (2023). H.R. 4444: Office of Young Americans, 118th Congress.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4444/text>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Every Student Succeeds Act implementation report. <https://www.ed.gov/laws-and-policy/laws-preschool-grade-12-education/every-student-succeeds-act-essa>
- U.S. Department of Education, Federal Student Aid. (2022). Annual report. <https://studentaid.gov/data-center>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23). Youth homelessness report. <https://www.acf.hhs.gov/>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2). Foster care and youth services annual report. <https://acf.gov/cb/research-data-technology/statistics-research/afcars>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4).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CFCIP) and 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s (ETV). <https://acf.gov/cb/grant-funding/chafee-foster-care-independence-cfcip-and-education-and-training-vouchers-etv>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4).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1070>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4). Supporting transition-age youth through the federal Chafee program. <https://www.chapinhall.org/research/supporting-transition-age-youth/>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22). Foster care youth programs report. <https://www.acf.hhs.gov/cb/programs/foster-care>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2022). Annual report on mental health services. <https://www.samhsa.gov>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2). Youth Homelessness Demonstration Program evaluation. <https://www.hudexchange.info/programs/yhdp>
- U.S. Department of Justice. (2021). Juvenile justice program performance report. <https://ojjdp.ojp.gov/funding/grant-performance-measurement/performance-data-reports>
-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21). Juvenile justice program performance report. <https://ojjdp.ojp.gov>
- U.S. Department of Labor. (2020). Child labor report. <https://www.dol.gov/agencies/whd/child-labor>
- U.S. Department of Labor. (2022). Youth program performance report. <https://www.dol.gov/agencies/eta/performance>
- U.S. Department of Labor. (2023).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program outcomes. <https://www.dol.gov/agencies/eta/wioa>
-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2023).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program outcomes. <https://www.dol.gov/agencies/eta/wioa>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2023). Youth Conservation Corps annual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23).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report.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22). Federal youth policy delivery systems evaluation. <https://www.gao.gov/assets/gao-22-2sp.pdf>
YouthPolicy.org. (2023). Fact sheets. <https://www.youthpolicy.org/>

【독일어】

Becsky, S., Dreber, M., & Haenisch, D. (2008). Kinder- und Jugendpolitik, Kinder- und Jugendhil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rukturen - Institutionen - Organisationen. Bonn: Landesjugendamt Rheinland / Fulda: Fuldaer Verlagsanstalt.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9). In gemeinsamer Verantwortung: Politik für, mit und von Jugend. Die Jugend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undesregierung. (2013). Bericht über die Lebenssituation junger Menschen und die Leis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 14. Kinder- und Jugendbericht.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7/12200. Berlin.

Bundesregierung. (2024). Bericht über die Lage junger Menschen und die Bestrebungen und Leis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 17. Kinder- und Jugendbericht.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20/12900. Berlin.

Deutschland. (2023).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Informationssystem. Bonn: IJAB. Available at: <https://www.kinder-jugendhilfe.info>.

Deutscher Bundestag. (1989). Entwurf eines Gesetzes zur Neuordnung des Kinder- und Jugendhilferecht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 KJHG). BT-Drucksache 11/5948, 11. Wahlperiode, 1. Dezember 1989. Bonn: Deutscher Bundestag.

Deutscher Bundestag. (2021a). Entwurf eines Gesetzes zur Stärk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BT-Drucksache 19/26107. Berlin: Deutscher Bundestag.

- Deutscher Bundestag. (2021b). Entwurf eines Gesetzes zur Stärk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Kinder- und Jugendstärkungsgesetz - KJSG). Drucksache 19/26107. Berlin.
- Deutscher Bundestag, Wissenschaftliche Dienste. (2017). Leis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für junge Volljährige. Sachstand, WD 9 - 3000 - 030/2017. Berlin: Deutscher Bundestag.
- Hong, Moonki. (2016). Kinderschutz in institutionellen Arrangements: Deutschland und Südkorea in international vergleichender Perspektive. Kasseler Edition Soziale Arbeit, Band 2. Wiesbaden: Springer VS.
- Landesjugendamt. (2025). Fachliche Empfehlungen zur Hilfe für junge Volljährige und zur Nachbetreuung gemäß §§ 41 und 41a SGB VIII. Beschluss des Bayerischen Landesjugendhilfeausschusses vom 26. Februar 2025.
- Meysen, T., Schönecker, L., & Wrede, N. (2020). Gesetzliche Altersgrenzen im jungen Erwachsenenalter. Expertise. Heidelberg/Berlin: SOCLES - International Centre for Socio-Legal Studies. Im Auftrag des Deutsches Jugendinstitut e.V. (DJI) für das Bundesjugendkuratorium (BJK).
- Wiesner, Reinhard. (2014). Hilfen für junge Volljährige. Rechtliche Ausgangssituation. Expertise im Projekt „Nach der stationären Erziehungshilfe - Care Leaver in Deutschland“. Frankfurt am Main: Internationale Gesellschaft für erzieherische Hilfen e.V. (IGfH).

【일본어 문헌】

- 井上慧真 (2019). 『若者支援の日英比較——社会関係資本の観点から』. 晃洋書房.
- 上田倫徳 (2022). 「こども家庭庁の創設とこども基本法の成立」. 『立法と調査』, 450, 26-43.
- 江上直樹 (2008). 「キャリア教育政策に関わる政策形成過程」. 『教育行財政論叢』, 11, 61-80.
- 海老原嗣生 (2009). 『雇用の常識「本当に見えるウソ」』. プレジデント社.
- 岡部茜 (2019). 『若者支援とソーシャルワーク——若者の依存と権利』. 法律文化社.
- 小熊英二 (2019). 『日本社会のしくみ——雇用・教育・福祉の歴史社会学』. 講談社.
- 小倉將信 (2024). 『こども家庭庁と日本のこども政策——こどもまんなか社会の実現に向け

- て』, 中央公論新社.
- 金崎幸子 (2017). 「戦後における若年者雇用政策の展開」,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編『「個人化」される若者のキャリア』,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12-43.
- 神林龍 (2017). 『正規の世界・非正規の世界——現代日本労働経済学の基本問題』,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久保田崇 (2010). 「ニートやひきこもりの若者に対する支援のための地域ネットワークづくり——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時の法令』, 1850, 6-17.
- 児美川孝一郎 (2007). 『権利としてのキャリア教育』, 明石書店.
- 児美川孝一郎 (2010). 「『若者自立・挑戦プラン』以降の若者支援策の動向と課題」, 『日本労働研究雑誌』, 602, 17-26.
- 近藤絢子 (2024). 『就職氷河期世代——データで読み解く所得・家族形成・格差』, 中央公論新社.
- 今野晴貴 (2015). 「『新しい雇用類型』の性質と労使交渉の課題——『ブラック企業』現象に着目して」, 『労務理論学会誌』, 24, 59-69.
- 斎藤環 (1998). 『社会的ひきこもり——終わらない思春期』, PHP研究所.
- 末富芳 (2023). 「こども基本法の意義」, 末富芳・秋田喜代美・宮本みち子 他編『子ども若者の権利と政策1——子ども若者の権利とこども基本法』, 明石書店, 15-36.
- トイボネン, トゥーッカ (2013). 「ニート——カテゴリー戦略」, ロジャー・グッドマン/井本由紀/トゥーッカ・トイボネン 他編, 西川昭男訳『若者問題の社会学』, 明石書店, 251-284.
- 野村武司 (2023). 「第10章 子ども政策と若者政策の連続性と固有性」, 末富芳・秋田喜代美・宮本みち子 他編『若者の権利と若者政策』, 明石書店, 197-211.
- 濱田江里子 (2021). 「日本の若者政策における『若者問題』——就労支援と複合的な困難の位相」, 宮本みち子・佐藤洋作・宮本太郎 編『アンダークラス化する若者たち——生活保障をどう立て直すか』, 明石書店, 215-241.
- 朴在浩 (2022). 「日本と韓国における若者政策の変容——なぜ、両国の政策は分岐したのか」,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766, 52-69.
- 堀口佐知子 (2013). 「『ひきこもり』——個人的な孤独がいかにして世間の目にとまったか」, ロジャー・グッドマン/伊本由紀/トゥーッカ・トイボネン 編, 西川昭男訳『若者問題

- の社会学』. 明石書店, 223-250.
- 堀有喜衣 (2017). 「『個人化される若者のキャリア』」.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編『「個人化」される若者のキャリア』.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139-144.
- 松井祐次郎 (2009). 「ユースワークと若者自立支援——青少年総合対策推進法案と今後の課題」. 『調査と情報』, 642, 1-11.
- 南出吉祥 (2012). 「若者支援関連施策の動向と課題——『若者自立・挑戦プラン』以降の8年間」. 『岐阜大学地域科学部研究報告』, 30, 117-133.
- 宮本みち子 (2002). 「付録 ポスト産業社会の若者のゆくえ——現代日本の若者をどうとらえるか」. ジル・ジョーンズ/クレア・ウォーレス著『若者はなぜ大人になれないのか——家族・国家・シティズンシップ』. 新評論, 267-296.
- 宮本みち子 (2012). 「成人期への移行モデルの転換と若者政策」. 『人口問題研究』, 8(1), 32-53.
- 宮本みち子 (2023). 「おわりに」. 末富芳・秋田喜代美・宮本みち子 他編『若者の権利と若者政策』. 明石書店, 229-242.
- 森稔樹 (2019). 「地域における大学の振興及び若者の雇用機会の創出による若者の就学及び就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 『研究所資料』, 128(1), 239-274.
- 厚生労働省 (2003). 『10代・20代を中心とした「ひきこもり」をめぐる地域精神保健活動のガイドライン』.
- 厚生労働省 (2009). 『平成21年版 労働経済の分析』.
- 厚生労働省 (2010). 『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 厚生労働省 (2011). 『被保護者調査——平成23年被保護者全国一斉調査（基礎調査）』.
- 厚生労働省 (2013). 『新規学卒者の離職状況——平成25年3月卒業者の状況』.
- 厚生労働省 (2018). 『平成30年版 厚生労働白書』.
- 厚生労働省 (2022). 『令和4年 国民生活基礎調査の概況』.
- 厚生労働省 (2025a). 『公共職業安定所（ハローワーク）の主な取組と実績』.
- 厚生労働省 (2025b). 『ひきこもり支援ハンドブック——寄り添うための羅針盤』.
- 厚生労働省・文部科学省 (2021). 『ヤングケアラーの支援に向けた福祉・介護・医療・教育の連携プロジェクトチーム報告』.
- こども家庭庁 (2023). 『こども大綱』.
- こども家庭庁 (2024). 『令和7年度こども家庭庁当初予算案の全体像』.

こども家庭庁 (2025a). 『令和8年度こども家庭庁予算概算要求』.
 こども家庭庁 (2025b). 『こども家庭庁 組織体制の概要』.
 こども家庭庁 (2025c). 『ヤングケアラー支援の現況』.
 総務省 (2022). 『労働力調査 (詳細集計)』.
 内閣府 (2013). 『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
 内閣府 (2014). 『日本再興戦略改訂2014——未来への挑戦』.
 内閣府 (2015). 『平成27年版 子ども・若者白書』.
 内閣府 (2016). 『日本再興戦略 2016』.
 内閣府 (2022). 『令和4年版 子供・若者白書 (全体版)』.
 内閣府 (2024). 『地方大学・地域産業創生交付金』.
 内閣府 (2025). 『組織・業務の概要 2025』.
 文部科学省 (2023). 『特定地域内学部収容定員の抑制等に関する命令の一部を改正する命令の施行について』.

〈일본 인터넷 자료〉

내각관방 (2025). 내각관방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as.go.jp/\(2025.09.01](https://www.cas.go.jp/(2025.09.01). 인출
 내각부 (2025). 청소년 정책 기본틀(아카이브 페이지).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927443/www8.cao.go.jp/youth/wakugumi.htm\(2025.09.11](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927443/www8.cao.go.jp/youth/wakugumi.htm(2025.09.11). 인출
 문부과학성 (2025a). 문부과학성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2025.09.01](https://www.mext.go.jp/(2025.09.01). 인출
 문부과학성 (2025b). 학생지도·생활지도 관련 정책 자료. [https://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mext_01458.htm\(2025.09.20](https://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mext_01458.htm(2025.09.20). 인출
 어린이·청년 의견플러스 (2025). 어린이·청년 의견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https://ikenplus.cfa.go.jp/\(2025.09.11](https://ikenplus.cfa.go.jp/(2025.09.11). 인출
 어린이가정청 (2025a). 청소년 상담센터·협업체 관련 정책 자료. [https://www.cfa.go.jp/policies/youth/kyougikai-soudancenter\(2025.09.11](https://www.cfa.go.jp/policies/youth/kyougikai-soudancenter(2025.09.11). 인출
 어린이가정청 (2025b). 의견수렴 제도 ‘이켄 플러스’ 소개. [https://www.cfa.go.jp/policies/iken-plus/about\(2025.09.11](https://www.cfa.go.jp/policies/iken-plus/about(2025.09.11). 인출
 어린이가정청 (2025c). 어린이가정청 정책 자료(PDF). <https://www.cfa.go.jp/assets/>

- 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7e61aa5c-b18a-4711-85c4-c28d6822c7eb/4fecaf46/20250328_about_30.pdf(2025.09.20. 인출)
-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2025).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공식 홈페이지. <https://saposute-net.mhlw.go.jp/>(2025.09.21. 인출)
- 총무성 통계국 (2025). 노동력조사(e-Stat). <https://www.e-stat.go.jp/> (2025.09.12. 인출)
- 한국은행 (2025).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5.09.21. 인출)
- 후생노동성 (2025a).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hikikomori/index.html(2025.08.20. 인출)
- 후생노동성 (2025b).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hikikomori/index.html(2025.09.20. 인출)
- 후생노동성 (2025c). 청년 고용·인재개발 정책.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81329.html> (2025.09.10. 인출)
- 후생노동성 (2025d).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업.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jinzaikaihatsu/saposute.html(2025.09.11. 인출)
- 후생노동성 (2025e). 구직자 지원 정책.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yushokusha_shien/index.html(2025.09.19. 인출)
- 후생노동성 (2025f). 후생노동성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index.htm> (2025.09.12. 인출)

【프랑스어】

Audric, S., & Vuillier-Devillers, F. (2025). La moitié des jeunes des communes rurales ont quitté le foyer parental avant 19 ans. Insee Focus, 358, INSEE.

Cour des comptes. (2022). Rapport public annuel 2022. Paris: Cour des comptes.

Cour des comptes. (2025). Rapport public annuel 2025 : Les politiques publiques en faveur des jeunes. Paris: Cour des comptes.

DARES. (2025). Rapport final du comité scientifique de l'évaluation du Plan d'investissement dans les compétences. Paris: DARES.

(Rapporteurs : Alejandra Arbeláez Ayala, Anne Bucher, Makiko Morel, Pablo Sanchez, Léo Sibille, Isabelle Terraz.)

DJEPVA. (2025). Présentation des missions et chiffres clés de la DJEPVA. Paris: Direction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Disponible sur : <https://www.jeunes.gouv.fr/sites/default/files/2025-02/version-num-plaquette-djepva-2025-dv-pdf-4554.pdf>

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éducation populaire (INJEP). (2023). Organigramme de la Direction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Paris: INJEP.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25). Politique en faveur de la jeunesse. 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Paris.

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et de la Vie associative. (2025). Direction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Paris: 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et de la Vie associative.

Union nationale des Missions Locales (UNML). (2024). Rapport d'activité 2023. Paris: UNML.

【핀란드어】

Appelqvist-Schmidlechner, K., Savolainen, M., Nordling, E., & Stengård, E.

- (2011). Time out! Aikalisä! Elämä raiteilleen: oimintamallin ja tukipalvelun implementoinnin arviointi. City of Helsinki. (2025). Ohjaamo. Retrieved from <https://nuorten.hel.fi/opiskelu-ja-tyo/ohjaamo/> (Accessed 2025.09.30).
- Hilma. (2024). Kaikukanta 2.0 ohjelmistokehitys ja mobiilisovellus. Retrieved from <https://www.hankintailmoitukset.fi/sv/tendering/procurement/96309/call-for-tenders/3046/overview/> (Accessed 2025.09.30).
- Höylä, S. (2012). Youth work in Finland (Series E, HUMAK Publications No. 4). Helsinki Humanistinen ammattikorkeakoulu (HUMAK).
- KEHA-keskus. (2025). Ohjaamojen kävijätilastot 2024. Helsinki Elinkeino-, liikenne- ja ympäristökeskusten kehittämis- ja hallintokeskus (KEHA-keskus).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16). Nuorten aikuisten osaamisohjelma 2013–2016: Loppuraportti. Helsinki: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17). Nuorten aikuisten osaamisohjelma jatkuu—10 miljoonaa euroa lisärahaa. Retrieved from <https://okm.fi/-/nuorten-aikuisten-osaamisohjelma-jatkuu-10-miljoonaa-euroa-lisaraha> (Accessed 2025.09.30).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19). Arviointi- ja avustustoimikunta 2019–2023. Retrieved from <https://okm.fi/en/project?tunnus=OKM038%3A00%2F2019> (Accessed 2025.09.30).
- NAL Asunnot. (2022). Vastuullisuusraportti 2022. Helsinki: NAL Asunnot. Retrieved from https://www.nalasunnot.fi/wp-content/uploads/2023/12/NAL-Asunnot_Vastuullisuusraportti_2022.pdf (Accessed 2025.09.30).
- Nuorisoasuntoliitto. (2025). Mikä NAL? Retrieved from <https://nal.fi/mika-nal/> (Accessed 2025.09.30).
- Opetushallitus. (2015). Evaluation of the NAO Programme: Supporting young adults without qualifications. Helsinki: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EDUFI).
- Puolustusvoimat. (2024). Conscript 2025: A guide for getting ready for military

- service. Helsinki: Army Command Finland; PunaMusta.
- Rikoksentorjuntaneuvosto. (n.d.). Time out! Aikalisä! Retrieved from <https://rikoksentorjunta.fi/time-out-aikalisa-> (Accessed 2025.09.30).
- Stengård, E., Haarakangas, T., Upanne, M., Appelqvist-Schmidlechner, K., Savolainen, M., & Ahonen, J. (2008). Time out! Aikalisä!: Elämä raiteilleen -toimintamalli: Käsikirja.
- Valtion nuorisoneuvosto. (2025). State Youth Council. Retrieved from <https://tietoanuorista.fi/en/state-youth-council/> (Accessed 2025.09.30).
- Yhdenvertaisen kulttuurin puolesta ry. (2025). Yhdenvertaisen kulttuurin puolesta ry:n ja Kulttuuria kaikille -palvelun vuosikertomus 2024. Helsinki: Yhdenvertaisen kulttuurin puolesta ry.
- Ympäristöministeriö. (2024). National Programme on Homelessness 2023-2027. Helsinki: Ministry of the Environment, Finland. Retrieved from <https://ym.fi> (Accessed 2025.09.30.).

○ — 부 록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과 더불어 연구 결과를 매년 현행화하고 올릴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그림 부록-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

동시에 연 2회 청년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는 뉴스레터인 청년 포커스를 발간하고 이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뉴스레터 신청자에게 보내 청년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출처: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https://www.nypi.re.kr>). 2025년 12월 12일 접속함.

그림 부록-2.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뉴스레터

이 연구에서는 청년 이슈에 대한 국제청년포럼을 비롯하여 국내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먼저 국제청년포럼은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7월 28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진행되었다. 발표로는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진학과 취업선택: 아동·청소년패널 3개 코호트 비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오병돈 뉴욕주립공과대 교수는 “엇갈린 삶의 경로: 한국 청년의 교육, 고용, 분가에 대한 중단적 잠재계층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일본 측 발표자로 미와 사토시 일본 릿교대 교수는 “일본청년의 성인기 이행”이라는 주제로, 스키타 마이 동경도립대 준교수는 “불안정 사회에서 일본의 고졸 여성의 궤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 포럼의 지정 토론자로는 강영배 대구한의대 교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출처: 자체 작성

그림 부록-3. 청년국제포럼(2025.07.28.) 장면

이 연구에서는 중국청소년연구센터 방문을 계기로 진행된 한중 청소년 및 청년정책 국제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청소년 및 청년정책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덩 시quan(Xiquan Deng) 연구원이 “중국 청년정책의 발전과 특징”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에 대한 토론은 지정 토론 없이 중국측과 한국 측에서 자유롭게 질의하고 논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중국에서는 청년을 14세부터 3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로 하한 연령을 규정한 이유가 중국공산주의청년단(中国共产主义青年团, 共青团) 가입 연령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공청단은 중국 공산당의 청년 조직이며 14세에서 28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출처: 자체 작성

그림 부록-4. 한·중 청소년 및 청년정책 국제세미나(2025.11.18.) 장면

이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공동정책포럼으로 “불확실성의 시대, 청년의 길을 묻다”는 주제로 2025년 11월 25일 오후 2시에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대강당에서 개최된 공동정책포럼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교육기대와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문상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경제위기 시기 졸업 코호트의 노동시장 이행과 극복 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의 위기와 청년복지 제도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토론 시간에는 류장수 국립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권지영 교육부 서기관, 김윤지 고용노동부 사무관,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 연구본부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출처: 자체 작성

그림 부록-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2025.11.25.) 장면

국문초록

이 연구는 202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단계 도약이 요구되는 한국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제 민간기구(Youthpolicy.org)에서 수집된 44개 국가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추가로 분석하여 총 195개 국가의 청년정책 추진 여부, 법·제도적 기반, 행정조직 체계, 정책 대상 연령, 정책 영역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법률과 행정조직 중심의 비교분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각국 정부 공식 문헌과 관련 법률, 정책 자료를 활용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별 청년정책 추진체계와 제도적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청년의 삶의 조건과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통계자료와 2차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더 나아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연 2회 뉴스레터 「청년 포커스」를 발간하여 국내외 청년 연구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청년포럼과 한·중 국제세미나, 국내 공동정책포럼 등 다양한 학술·정책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였다.

연구 결과,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의 68.7%가 청년의 하한 연령을 15~19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한 연령은 35~39세로 설정한

국가가 가장 높은 비중(34.4%)을 차지하였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할 때 청년 연령 범위가 전반적으로 상향·확장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행정체계 측면에서는 전체 국가의 58.5%가 청년 또는 생애 전반기 관련 명칭을 포함한 전담 부처를 두고 있었으며, 청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는 전 세계의 33.3%, OECD 국가의 경우 47.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청년정책의 향후 과제로 첫째, 고정된 연령 기준 중심의 정책 대상 설정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생애주기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둘째,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청년의 권리 실현 관점에서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처 간 분절과 중복을 해소하고, 청년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책임 있는 전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국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정책 체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 청년, 청년정책, 청년 법률, 청년정책추진체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advancing youth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by conduct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global status of youth policy as of 2024.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youth policy frameworks across 195 countries, drawing primarily on data collected by the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Youthpolicy.org and supplemented by a systematic review of official government websites. The analysis focuses on key dimensions of youth policy, including the existence of youth-specific legislation, administrative and governance structures, defined age ranges of youth, and major policy domains. In order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macro-level legal and institutional comparisons, the study also conducts in-depth case analyses of five countries—namely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France, and Finland—to explore more detailed policy arrangements and implementation practices.

Methodologically, the study employs a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of national laws, policy strategies, and administrative systems related to youth policy, combined with secondary data analysis of existing statistical and survey data that capture the living conditions and transition experiences of young people. In addition,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research outcomes, a dedicated data platform was established through the

Youth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Center website, enabling annual updates of global youth policy information. The study further disseminated its findings through biannual newsletters and a serie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cy forums, including an international youth policy forum on youth transitions in Korea and Japan, a Korea-China youth policy seminar, and a joint national policy forum with a domestic research institute.

The findings indicate that, as of 2025, 68.7% of countries worldwide define the lower age boundary of youth between 15 and 19 years, while the most common upper age boundary is 35-39 years (34.4%). Compared to 2017, these results suggest a global trend toward the upward extension and diversification of youth age definitions. In terms of governance structures, 58.5% of countries operate dedicated government ministries or departments explicitly responsible for youth or early life-course policies. Moreover, one-third of countries worldwide (33.3%), and nearly half of OECD member countries (47.4%), have enacted youth-specific legislation as the legal foundation for youth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highlights several implications for youth policy in Korea. First, it underscores the need to move beyond rigid age-based definitions toward a life-course and transition-oriented approach that supports young people across the continuum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Second, it calls for strengthening the rights-based dimension of youth policy by clarifying and operationaliz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under the Framework Act on Youth. Third,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forming fragmented governance structures by integrating services and establishing a coherent delivery system that ensures continuity and accountability in youth policy implementation.

Overall,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vidence base for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governance capacity of youth policy in Korea within a comparative global context.

Keywords: Youth; Youth Policy; Youth Legislation; Youth Policy Governance System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 연구보고25-기본0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 연구보고25-기본0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 연구보고25-기본0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나영
-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 연구보고25-일반01-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김윤희·이용해
-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주
- 연구보고25-일반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연경·정송
- 연구보고25-일반07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 연구보고25-일반07-01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 연구보고25-일반07-02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Ⅱ /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김남희·조제성·김다은·
홍서아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해정·김경준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현·유민상·신동훈·한지형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수탁과제

< 일 반 >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4-0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01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6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7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8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세삭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9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혁진·문지혜
연구보고25-수탁10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1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김경준·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연구보고25-수탁1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연구보고25-수탁13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연구보고25-수탁14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연구보고25-수탁1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현·유민상·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향원·김문정·진인범
연구보고25-수탁16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7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1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2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3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4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8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황여정·김성은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5-학폭01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2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연구보고25-학폭03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4-01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 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2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 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3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4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5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연구보고25-학폭06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연구보고25-학폭07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연구보고25-학폭08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연구보고25-학폭09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연구보고25-학폭10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연구보고25-대안0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연구보고25-대안0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효·박현정·김희정
연구보고25-대안03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연구보고25-위센터01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2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현·김영인·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3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 연구보고25-위센터04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현
- 연구보고25-위센터05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
김소연·정춘현·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

-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 워 크 쉘 >

-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 포 럼 >

-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AI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6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7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8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자료25-09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자료25-10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자료25-11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5-12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5-13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자료25-1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자료25-1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16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원 제36권 1호(통권 116호)

한국청소년연구원 제36권 2호(통권 117호)

한국청소년연구원 제36권 3호(통권 118호)

한국청소년연구원 제36권 4호(통권 119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NYPI Bluenote 통계 >

-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연구보고 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인 쇄 2025년 12월 24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단법인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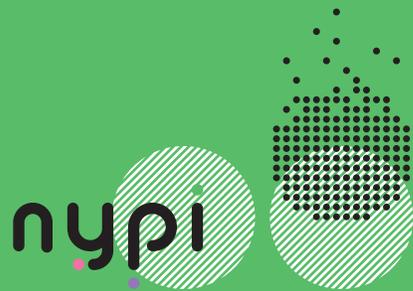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지식정보관)

ISBN 979-11-5654-472-2 93330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72-2